

March 2023

Vol. 01 (통권 41호)

# FTA TRADE REPORT

FTA 무역리포트

## FTA FOCUS

2023년도 관세청 FTA 및 국제협력분야 운영방향

## FTA EXPERTS

한-미 FTA 직접운송 조항에 관한 한-미 세관당국간 해석·운영 비교 및 시사점

한-인도네시아 CEPA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 해외통관애로

인도네시아 통상 및 통관환경  
인도네시아 수입의증 제도를 중심으로



March 2023 | Vol. 01 (통권 41호)

# FTA TRADE REPORT

FTA  
무역리포트



# Contents

## FTA FOCUS

006

### 2023년도 관세청 FTA 및 국제협력분야 운영방향

이진희 |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 FTA 동향

018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1년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수출입 현황 외

## FTA TOON

037

###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발효

## FTA EXPERTS

040

### 한-미 FTA 직접운송 조항에 관한 한-미 세관당국 간 해석·운영 비교 및 시사점

김석오 | 관세인재개발원 전문교수

050

### 한-인도네시아 CEPA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금혜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경제학박사

## FTA ANALYSIS

062

### 일본의 원산지증명제도와 활용 현황

김세라 | 국제원산지정보원 정책연구팀 전문연구원

## FTA 품목분류

080

### 특정물품 품목분류 결정의 정합성

원용택 | 공항 신성 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



## 해외통관애로

102

### 인도네시아 통상 및 통관환경

– 인도네시아 수입인증 제도를 중심으로 –

이민희 | PT. KGL INDONESIA 대리

### FTA 100% 활용하기

110

### 국제통상환경의 급변과 중소기업의 기회요인

박정준 | 강남대학교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 쉬어가기

121

### 정보를 한눈에 ‘2023년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124

### 영상보안(CCTV)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및 FTA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정영욱 | 한국관세사회 소속 관세사

## 활용하기 쉬운 FTA-PASS

138

### FTA-PASS 신규 기능 소개

– 원산지확인서 발급 편 –

구본현 | 국제원산지정보원 과장/원산지관리사

김소연 |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사

### 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150

###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에 따른 유의사항

고우리 | 서원코리아 관세법인 관세사

### FTA 지도

164

### 한눈에 보는 2021년-2022년 주요 산업별 (MTI 3단위 기준) FTA 활용 수출입 비교



FTATRAD



# FTA FOCUS

2023년도 관세청 FTA 및 국제협력분야 운영방향

이진희 |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E REPORT

# 2023년도 관세청 FTA 및 국제협력분야 운영방향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올해도 여전히 국제정세와 세계경기 모두 불확실성과 어두운 전망들로 시작하고 있지만 관세외교 분야에서는 〈Korea Customs Week 2023〉의 성공적인 개최, 베트남·인도와의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 마약 유통 차단 및 글로벌 단속망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해결해야 할 도전적인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치열한 무역현장 최일선에서 함께 동고동락(同苦同樂) 해오고 있는 수출입기업과 산업계, 주변 종사자 모두의 지혜와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성공적인 한 해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관세청도 그동안 축적해 온 국제협력 채널과 관세외교 역량을 쏟아 부어 든든한 지원군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 1 들어가며

지난해 국제사회를 큰 충격과 혼란에 빠트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발 1년을 맞았지만 종전(終戰)과 화해에 대한 기대보다는 전쟁 장기화로 인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와 냉전(冷戰) 시대로의 회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힘을 얻고 있는 현실에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이 무겁다.

코로나의 종식과 함께 금방이라도 회복될 것 같던 세계경제도 러-우 전쟁,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과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미-중간 무역분쟁 격화 등 강대국들의 치열한 패권 다툼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그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GVC) 붕괴를 겪으며 장기 침체의 굴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전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인상 등의 여파로 수입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세계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여건을 반영해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나 한국은행(1.7%) 보다도 낮은 1.6%로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최근 한국경제가 경기둔화 단계에 있음을 공식 진단한 바 있고, 전문가들은 경제성장률 1.6%는 1980년 제2차 오일쇼크(-1.6%),

1998년 IMF 외환위기(-5.1%),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0.8%), 2020년 코로나 경제위기(-0.7%) 등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가 겪었던 네 번의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하면서 정부와 산업계, 국민들의 철저한 준비와 현명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관세행정 분야, 특히 FTA 및 국제협력 업무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지난 2년간 긴 침잠(沈潛)의 시기를 보내기도 했지만 다행히 작년 하반기부터는 FTA협상, 양자 및 다자협력 등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만큼 '수출지원을 통한 국가경제 회복'이라는

국정과제 최우선 목표 달성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더욱이 올해는 우리의 선진화된 관세행정 제도와 전자통관기술력을 전세계에 선보이게 될 <Korea Customs Week 2023> 행사를 야심차게 준비 중에 있고, 우리 수출기업들의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베트남·인도와의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개통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해인 만큼 이번 지면을 빌어 지난 한 해를 되짚어 보고 2023년 FTA 및 국제협력 분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과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 2 2022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

2022.2.1.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최대 메가 FTA인 RCEP이 발효됨에 따라 관세청은 서울·인천·평택 등 전국 6개 주요 거점세관에 <RCEP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수요자 맞춤 컨설팅을 통해 764개 기업의 FTA 신규 활용을 지원하고, 간이인증제도 운영 등 한발 앞선 개선과제 발굴과 제도개선을 통해

1,613개 기업의 인증수출자 자격취득을 지원하는 한편,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품목을 255개로 확대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장기간 끌어 온 베트남, 인도와의 EODES 구축 협상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베트남과는 2022.10월 EODES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올 상반기 내에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기로 양국간 합의하였고, 인도 와도 총 7차례 공식협상과 수십 차례의 비공식 접촉을 거쳐 2022.8월 기술 및 절차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모두 합의하고 9월 개최된 한-인도 관세청장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시스템을 전면 개통하기로 양국이 최종 합의함으로써 올 하반기부터는 그간 우리 수출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어 왔던 개도국과의 원산지증명서 관련 통관애로 문제가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산지검증 분야에서는 국민건강·생활안전 및 新산업분야 테마 검증을 통해 EU산 전기 자동차 등 FTA 특혜를 부당하게 적용받은 163개 기업에 대해 특혜적용을 배제하고 약 184억원의 세액을 추징하는 등 공정한 FTA 무역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특정 품목의 수입량이 전년대비 급증할 경우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위험경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법·우회수입을 조기에 적발 차단함으로써 우리산업과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제협력 업무와 관련해서는 미국·인도 등 7개국과의 관세청장회의, 역대 최다(最多)인 75개국과의 고위급 양자면담, 관세당국간 핫라인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국내 수출입기업 및 현지진출기업이 겪고 있던 통관 애로 132건을 적기에 해소함으로써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관세 및 물류비용 567억원 상당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던 반면, 관세청 최초로

세계관세기구(WCO) 고위직 배출을 목표로 도전한 사무차장 선거에서 전청적인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쳤으나 단 2표 차이로 석패한 것은 지금까지도 진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만 선거 과정에서 중동지역을 포함한 80여 개 국가의 강력한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향후 우리에게 큰 외교적 자산이 될 것으로 믿고 위안을 삼고자 한다.

### 3 2023년도 FTA 및 국제협력분야 추진방향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에 불리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관세청은 더 많은 수출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관세행정 상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세계 경기 침체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류에 대응

하여 해외통관분쟁 해소를 위한 제반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통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한 2023년도 FTA 및 국제협력분야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추진과제 1

수출기업의  
FTA 활용 지원

#### 추진과제 2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통관분쟁 해결  
기능 강화

#### 추진과제 3

국민안전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 추진과제 4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전략적  
원산지검증 수행

## 1. 수출기업의 FTA 활용 지원

먼저, 각 본부 및 직속세관에 가칭 <수출확대·경제활력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업종별 전담 세관을 기준 본부세관에서 권역내 세관까지 확대하여 섬유, 기계류 등 원산지요건 충족이 어려워 FTA 활용이 쉽지 않은 취약산업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고, 수출초보기업 등에 대해서는 지역금융과 연계하여 대출한도 확대,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실질적인 금융지원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수출입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수출기업의 검증대응 및 인증수출자 취득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산업부 및 중기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출 바우처>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간 협력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농림부·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농수산 가공품 및 지역 특산물에 대한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세관에 사전등록된 생산자의 한국산 원산지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유통업체에도 C/O 발급을 허용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FTA 활용수출 촉진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GCC, MERCOSUR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협상에서 인증수출자 C/O 자율발급, e-C/O 도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제도들이 협정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전략을 한단계 더 고도화하고, 협정별 FTA활용률 및 품목별 특혜정보 등 관세청이 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산업협회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 2.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통관분쟁 해결 기능 강화

올해 관세청은 최신 글로벌 관세 이슈와 국제표준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관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전세계 70개국 이상의 관세행정

최고책임자들이 한곳에 모이는 최대규모 국제 행사인 <Korea Customs Week 2023> 개최를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특히 행사기간 중에는 관세청장회의나 정책 세미나 외에도 G2B 미팅, 관세기술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과 해외 관세당국 간 만남과 교류의 장(場)을 마련하여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통상 환경을 조성하고 통관애로 예방과 해소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향후 수년 내에는 관세협력 분야의 <다보스포럼>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통관애로 대응이 관세관 파견국 위주로 이루어지는 데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KCS Attach Club>을 만들어 한국주재 해외 관세관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설명회·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관심이 높은 국가의 관세제도 및 주요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넓히고자 한다.

또한, ADB 등 지역개발은행과 연계하여 통관애로 빈번국에 대한 시의성 있는 공적개발 원조(ODA) 제공으로 상대국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친한파를 육성하는 등 통관분쟁 예방부터 해소까지 선순환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전략도 구상 중에 있다.

국제협력분야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내실화하는 한편, 어학에 재능있는 20~30대 MZ 세대를 향후 3년간 20~30명 까지 국제협력 전문가로 양성하는 가칭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들 인재들이 국제 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통관분쟁 해결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3. 국민안전을 위한 국제협력 추진

마약·외환 등 불법행위 단속 관련 국제공조가 필요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청장회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마약 정보관 파견 및 정례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단속기법과 활동성과를 공유하는 등 국가간 위험관리를 위한 관세 당국간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우편물을 통한 총기·마약류의 유통 등 위험 관리를 위해 세관신고서에 <전자상거래물품

부호>를 신설하고, 캄보디아·태국 등 마약류 반입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와는 세관 상호지원협정(CMAA)을 체결하여 밀수동향 및 단속정보 교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수출입 데이터의 국가간 교환 활성화를 위한 자료교환 표준안 마련을 WCO와 협력 사업으로 공동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4.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전략적 원산지검증 수행

원산지검증 분야는 <농수축산물 조기경보 시스템> 활용 및 우범 해외공급자 DB 구축 등을 통해 세율차가 크고 수입량 증가 폭이 큰 농수축산물에 대한 정보분석을 확대하고, 우회 수출물품에 대한 기획검증을 통해 K-브랜드 및 新성장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농림부의 관세철폐국가 및 인접국의 생산량·가격 현지조사 정보, 국립농업과학원의 식생 정보 등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과학적 데이터를 정보분석 단계에서부터 적극 활용함으로써 검증 기법을 한차원 더 고도화하고 불복에

대비한 입증자료의 객관성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체약상대국의 주요 수출검증 요청사유·품목·검증결과 등 관련 정보를 DB화하고 <FTA 포털>에 공유하여 우리 수출기업들이 정보 부족으로 인해 원산지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고, 수입검증 결과 합리적 의심이나 불충분한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특혜를 배제하는 경우에는 처분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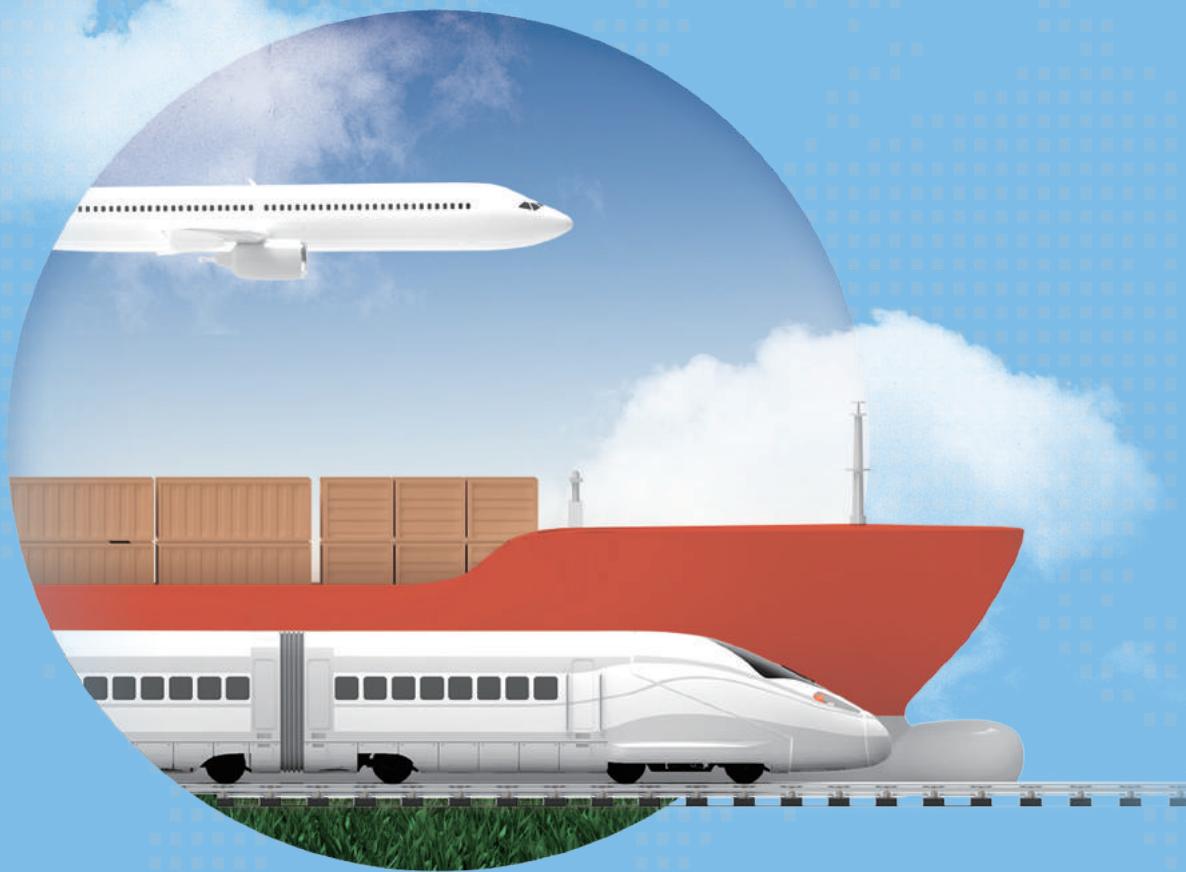
## 4

## 맺음말

올해도 여전히 국제정세와 세계경기 모두 불확실성과 어두운 전망들로 시작하고 있지만 관세외교 분야에서는 <Korea Customs Week 2023>의 성공적인 개최, 베트남·인도와의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개통, 마약 유통 차단 및 글로벌 단속망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해결해야 할 도전적인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치열한 무역현장 최일선에서 함께 동고동락 (同苦同樂) 해오고 있는 수출입기업과 산업계, 주변 종사자 모두의 지혜와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성공적인 한 해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관세청도 그동안 축적해 온 국제협력 채널과 관세외교 역량을 쏟아 부어 든든한 지원군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FTATRAD



# FTA 동향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1년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수출입 현황
- 관세청, 이차전지 분야 글로벌 품목분류 기준 제시
- 탄자니아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수출
- 관세청,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 준비에 총력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활용한 수출경쟁력 강화 위해 원산지검증 대비는 필수
- 관세청, 지난해(2022년) 커피(생두+원두) 수입액 역대 최대
-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발효
-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및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관련 공청회 개최 안내
- 국가별 동향 : 2023 캄보디아 경제 성장률 6% 내외 전망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1년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수출입 현황

관세청(정장 윤태식)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발효 1년을 맞아 수출입물품의 협정 활용 실적을 발표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1년차(2022.2 ~12./11개월) 활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활용한 수출<sup>1</sup>은 33억 달러, 수입은 56억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 수출입기업은 대(對)일본 수출입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가장 많이 활용했고, 최대 수혜품목은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을 활용한 수출입 실적 중 대(對)일본 수출입 실적이 가장 많고, 수출의 경우 대(對) 일본(67.3%), 대(對)중국(27.7%), 대(對) 태국(2.4%) 등 상위 3개 국가에 대한 활용 실적이 97.4%를 차지하고, 수입의 경우 대(對)

일본(48.3%), 대(對)중국(38.7%), 대(對) 태국(11.5%) 등 상위 3개 국가에 대한 활용 실적이 98.5%를 차지하고 있다.

대(對)일본 주요 수출 품목은 황산니켈(1.4억 달러)·프로필렌 중합체(1.4억달러) 등 배터리·플라스틱의 원료이고, 주요 수입 품목은 고무 원료(자일렌, 2.5억달러) 및 기타 석유조제품(1.9억달러)이다.

대(對)중국 주요 수출 품목은 배터리 소재인 리튬화합물(6.9억달러)이고, 주요 수입 품목은 산화리튬·수산화리튬(15.9억달러)이다. 대(對) 태국 주요 수출 품목은 김·미역 등 해조류(0.1억달러), 폴리에틸렌(0.1억달러)이고, 주요 수입 품목은 기타 석유조제품(5.6억달러)이다.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이자 일본과의 첫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특성으로 인해 첫째,

1 자율발급 방식은 관세당국에 집계되지 않으므로 이번 수출 활용 현황은 기관발급 실적이 대상임. 이에 따라, 실제 협정국에 수출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실적은 자율발급 실적을 포함하므로 33억 달러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

대(對)일본 무역을 중심으로 특혜관세 적용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 수출입 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둘째, 다른 국가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실적이 높지 않은 것은 한-아세안 자유 무역협정 등 기존에 체결된 양자 자유무역 협정<sup>2</sup>을 활용하는 기업이 많고, 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이 발효된 지 얼마되지 않거나 (인도네시아 : 2023.1월 발효) 아직 미발효 (필리핀·미얀마)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셋째, 황산니켈, 산화리튬·수산화리튬 등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활용 실적이 높은 것은 이들 품목의 관세율이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에서 0%로 낮아진 것에 기인 한다.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이전부터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 등 5개 본부세관 및 평택 직할세관에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활용지원단」을 운영(2021. 12~)하여 수출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활용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역협회·코트라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이점을 적극 홍보하고, 1:1 수출자문(250→270회)과 실무자 온라인 컨텐츠(3→6과정)를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의 원활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2 한-아세안, 한-중, 한-베트남,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캄보디아, 한-인도네시아 자유무역협정

## 관세청, 이차전지 분야 글로벌 품목분류 기준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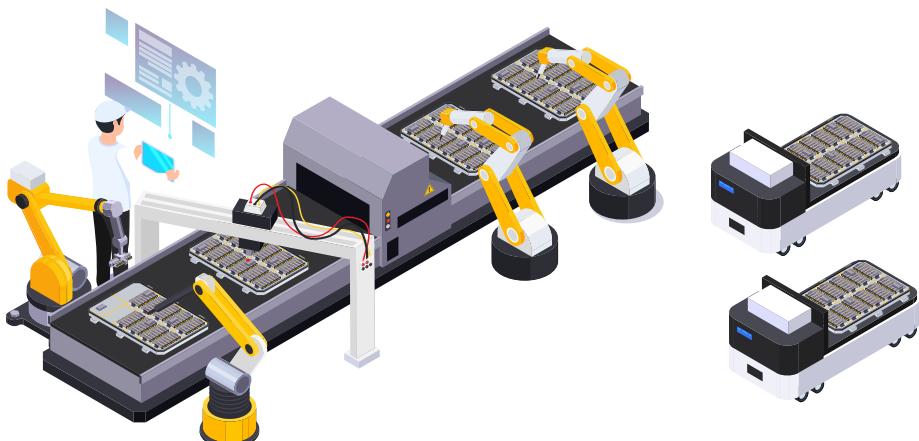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월 26일(목) 이차전지 산업 제품군(소재·부품·장비) 274종의 품목 분류 기준을 담은 「이차전지<sup>3</sup>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지침서에는 △이차전지 분야 원료·소재·장비 등에 대한 체계적인 품목분류 기준(사례)과 △제조공정 등 산업계의 최신 정보가 담겨있다.



대외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올바른 품목분류는 필수적이다. 품목분류(HS) 번호에 따라 관세율과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세계적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품목분류가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해외통관 과정에서 우리 수출 기업이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상대국으로부터 관세를 추징당하는 경우이다.



<sup>3</sup>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저장이 가능하여 반복 사용이 가능한 전지로, 휴대폰·전기차 등 다양한 기기의 에너지원으로 사용

## 탄자니아에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파스) 수출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월 1일(수) 서울 롯데호텔(소공동)에서 탄자니아 조세청과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sup>4</sup> 고도화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sup>5</sup>하였다.

이 양해각서는 탄자니아 조세청이 2014년에 도입한 전자통관시스템을 한국형 시스템 기반으로 고도화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술자문 및 탄자니아 세관공무원 능력배양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탄자니아<sup>6</sup> 조세청은 2012년 한국 관세청이

제공한 관세행정 현대화 컨설팅(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을 거쳐 2014년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파스)을 도입한 결과, 통관소요시간이 평균 31일에서 16일로 단축되고 관세 수입도 65%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탄자니아 조세청은 이런 성과를 지속 증대시키고, 무역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전자통관시스템을 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시스템<sup>7</sup>을 도입하게 되었다.

### 탄자니아 조세청과 양해각서 체결식 개요

- (시간/장소) 2023.2.1 11:00 / 서울 종구 롯데호텔(소공동)
- (참석자) - 탄자니아 조세청 : 키다타 조세청장, 키온도 관세(부)청장 등 9명
  - 우리 관세청 : 윤태식 관세청장, 유영한 데이터정책관 등 6명
  - 국가관세망연합회 : 김윤식 회장, 노명환 글로벌 본부장 등 3명

4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TANCIS, TANzania Customs Integrated System): '14년 탄자니아 조세청이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축한 전자통관시스템

5 서명자: (우리 측) 윤태식 관세청장, (탄자니아 측) 알파요 자파니 키다타 조세청장

6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 최초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도입

7 수출입업체가 수출입 관련 기관에 각각 제출하던 수출입 요건확인 서류(원산지증명서, 검역증 등)를 전자적으로 한 번만 제출하면 일괄 처리되는 시스템

###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TANCIS) 고도화 사업 개요

- (발주자/사업자) 탄자니아 조세청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 (사업비/기간) 4,300만 달러 / 2023년 2월 ~ 2026년 2월(3년)
- (범위) ①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BPR), ②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TANCIS) 고도화(통관·화물·징수 등 16개 모듈), ③싱글윈도우 구축

이번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4,300만 달러 규모로서 2005년 이후 성사된 16개국 25건의 유니패스 해외 수출 사업 중 2번째로 큰 규모이다.

키다타(Alphayo Japani KIDATA) 탄자니아 조세청장은 최첨단 기능을 탑재한 유니패스 기반의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이 통관소요 시간 단축과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한 만큼, 이번 고도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탄자니아 통관환경이 더욱 투명해지고 기업 친화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되길 희망하였다.

윤태식 청장은 아프리카 최초로 탄자니아가 도입한 유니패스가 탄자니아 무역원활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면서, 탄자니아 전자통관시스템이 유니패스를 모델로 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은 유니패스 확산을 위한 모범사례라며, 이번 고도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였다.

윤 청장은 앞으로도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도 유니패스 수출을 확대하여 아프리카 전체의 교역 증대<sup>8</sup>에 기여<sup>9</sup>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유니패스 해외수출 국가 현황

아시아(6)	아프리카(6)	중남미(4)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네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카메룬, 에티오피아, 가나, 알제리, 마다가스카르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에콰도르, 파라과이

8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rican Continent Free Trade Area) 협정은 아프리카 54개국이 가입한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역협정 (2021년 1월 시행)으로 아프리카 역내 무역 활성화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

9 아프리카에 유니패스 보급을 확대하여 무역원활화를 촉진하는 관세당국의 전자통관시스템간 연계와 이를 통한 무역서류의 전자적 교환 지원

## 관세청,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 준비에 총력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월 6일(월, 10:00) 정부대전청사에서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3)(이하 (케이씨 더블유)KCW 2023)」 준비기획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2023년 4.26~28. 서울에서 개최되는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CW) 2023은 60여개국 관세청장, 국내외 기업인 및 세계관세기구(WCO),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국가 간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 관세행정에의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등 세계 주요 관세이슈를 선도하기 위해, 관세청이 사상 최초로 개최하는 국제 관세협력회의다.

관세청은 이번 행사의 주제로 “글로벌 관세 협력과 디지털 세관(Global customs cooperation and digital customs)”을 선정하고, 전



직원 공모를 거쳐 “국경을 넘어 세계를 잇다! (Beyond the Borders, Connect the World!)<sup>10</sup>”라는 공식 슬로건과 로고를 확정했다.

이번에 발족한 ‘준비기획단’<sup>11</sup>은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CW) 2023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세부 프로그램 기획, 국내·외 홍보활동 등을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CW) 2023의 홍보와 운영을 위한 공식 누리집 (<https://koreacustomsweek.org>)를 개설했다.

이번에 개설된 누리집은 행사 개요와 세부 프로그램, 교통 등 행사 참석에 필요한 정보와

10 전세계가 관세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가능성을 찾자는 의미를 강조

11 준비기획단장 :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 행사기획팀, 운영총괄팀 총 2개팀 26명 구성

일정 등을 제공하는 한편, 참석자 등록, 숙소 예약, 행사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미팅 신청 등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진희 준비기획단장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해외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 마약 등

불법물품 이동 차단 등을 위해서는 무역의 최일선에 있는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행사가 60여개 관세당국 및 유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우호적 통상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활용한 수출경쟁력 강화 위해 원산지검증 대비는 필수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 3월부터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원산지검증 :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

본 사업은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FTA)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이 인증한 관세사가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 【사업 개요】

사업명	2023년도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3년 2월 ~ 11월			
지원대상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약 380개 기업)			
지원내용	관세청 주관「자문전문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관세사가 기업을 방문하여 원산지검증 대비 맞춤형 자문을 제공, 컨설팅 비용은 최대 200만원까지 기업에 지원			
지원절차	사업 공고 2월 17일	▶ 신청 및 접수 (상반기) 3.2 ~ 3.17 (하반기) 7.3 ~ 7.14	▶ 업체선정 & 자문 전문가 배정 (상반기) 4월 1주차 (하반기) 8월 1주차	▶ 자문 수행 및 완료 (상반기) 4~6월 (하반기) 8~10월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순위)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li> <li>(2순위) 원산지검증 취약 제품군(예: 섬유제품, 화학공업제품, 조제식품류)을 수출하는 기업</li> <li>(3순위) 사업수행 세관별 자체 선정기준</li> </ul>			

들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증명서류 작성·보관 교육,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지원, △모의 원산지검증 실시,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 안내 등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산지검증에 대비한 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도울 예정이다.

\* 원산지관리시스템 : 원산지판정, 증명서발급, 증빙서류 보관 등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관리를 쉽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

\*\* 원산지인증수출자 : 관세청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영국 자유무역협정 등) 또는 기관발급 시제 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관세청은 지난해 실시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총 378개 기업을 지원한 결과, 255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고 203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을 도입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과 관련해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거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사업은 전국 6개 세관(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에서 진행되며, △자문 평가 등급 및 △중소·중견기업 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의 자문 비용이 차등 지원된다.

### 【원산지검증 자문 성공사례】

#### ◆ [사례1]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애로사항) '자동차 시트' 생산용 자동화 설비를 에이(A)국에 수출하는 비(B)기업은 에이(A)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요청으로 자체 원산지관리 체계 구축을 시도하였으나, 최소 100개가 넘는 원자료와 복잡한 원산지결정기준(부가가치기준)으로 자체 원산지관리 실패  
(지원내용)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원자료명세서의 품목정보(품명, 품목번호, 단가, 소요량 등), 납품업체 정보와 원산지 판정을 지원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연동하여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 [사례2] 신규 수출시장에서 계약을 따내다!

(애로사항)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용 원자료를 생산하여 주로 아시아 국가에 수출하는 씨(C)기업은 원산지검증 대응 자문 기간 중 디(D)국 신규 바이어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득을 계약조건으로 거래제안을 받음  
(지원내용) 씨(C)기업은 디(D)국에 수출계획이 없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처음에는 인증을 망설였으나, 인증수출자 제도, 혜택 등에 대한 자문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고 첫 수출계약에 성공(60,000 미국달러, 연간 약 500,000 미국달러 수출 증가 기대)

## 【기업 부담률】

전년도 매출액	2022년도	2023년도	기업의 실제 부담금액
50억원 이하	0%	0%	없음
500억원 이하	10%	0%	없음
1,000억원 이하	20%	10%	최대 20만원(200만원 × 0.1)
1,500억원 이하	30%	20%	최대 40만원(200만원 × 0.2)

특히, 올해는 기업의 비용부담률을 전년대비 완화하여,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자문 비용 전액(최대 200만원\*)을 관세청이 부담할 계획이다.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최고 평가등급을 받은 자문에 대해 지불하는 자문 비용 상한액

\*\* 관세청 누리집 : [customs.go.kr](http://customs.go.kr)

\*\*\* 사업설명회 참여 신청 방법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 (공지사항) 참조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은 3월 2일(목)부터 17일(금)까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포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자유무역협정 포털 누리집의 공고 또는 공지 사항이나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각 세관에서 개최될

정구천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최근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요청이 비관세장벽, 해외통관애로 등으로 작용되고 있어, 이번 사업에 참여한 우리 수출기업이 원산지관리 노하우를 활용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를 통해서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업수행 세관 및 문의처】

사업수행 세관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사업 설명회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42	ftaic@korea.kr	2월 24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5	seoulfta@korea.kr	2월 23일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7	busanfta@korea.kr	2월 22일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3-230-5182	daeguyesfta@korea.kr	2월 22일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62-975-8195	ftafta071@korea.kr	2월 21일
평택세관	통관총괄과	031-8054-7026	ptfta@korea.kr	—

## 관세청, 지난해(2022년) 커피(생두+원두) 수입액 역대 최대

2022년 커피(생두+원두) 수입액 13억 달러(전년대비 42.4%↑)를 기록하였다.

전년도(2021년) 연간 수입액(9억 달러)을 넘어(2022.9월) 역대 최초로 10억 달러를 돌파(10월), 연말까지 최고 수입액(13억 달러)을

기록하였다. 수입량은 처음으로 20만 톤(전년 대비 9.5%↑) 도달하며 최대치이며, 코로나19(2020년~) 시기, 음료 수입이 주춤함에도 지속적 증가세를 보인 커피는 거리두기 해제(2022.4월)된 지난해 수입이 급증하였다.

### 연도별 커피(생두+원두) 수입 현황



### 커피 및 음료 수입액 추이(2019=100)



커피 수입액이 상승한 이유는 코로나19에도 식지 않은 커피 소비, 거리두기 해제에 가속화되었고, 2020년~2021년 테이크아웃 및 배달, 홈카페 인기\* 등에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낸 커피 수요 때문이다.

2022년은 거리두기 해제(4.18일)로 인한 매장의 영업정상화 등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며 수입이 급증\*\*하였다.

\* 커피머신 보유율[2020년 35%→2021년 45%], 재택근무 등에 힘카페 인기(한국갤럽, 2021.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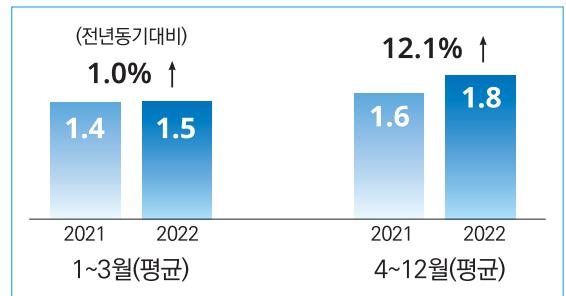
규모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수입액은 2배(2019년 6.6억 달러 → 2022년 13.0억 달러), 물량은 1.2배 증가(17만 톤 → 20만 톤)하였다.



\* 가정용 커피머신 연도별 수입현황(백만달러)



\*\* 거리두기 해제 전후 커피 수입량(만톤)



2022년 13억 달러로 지난해(2022년) 금 (12.6억 달러, 세공품 제외) 수입보다 크고 우유 및 유제품(15.3), 주류(16.2)에 근접하는 규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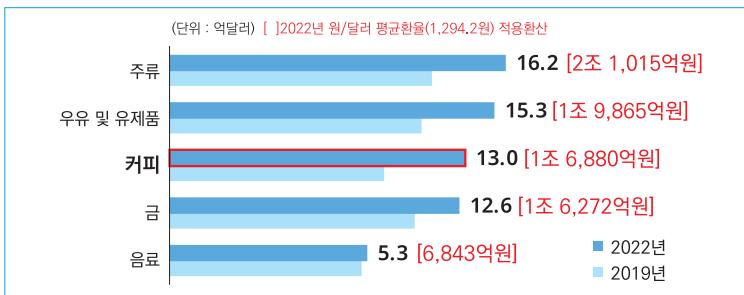
물류대란, 커피 생산량 감소 등에 따른 국제 가격 상승\*에 더해 수입물량이 늘어나며 수입 액이 급증하였다.

\* 커피(아라비카) 국제가격: 2019년 2,242.1(달러/톤) → 2022년 4,727.8 [출처: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

20만 톤은 성인 한 명이 하루 약 1.3잔\*을 소비 할 수 있는 양이다.

\* 10g = 1잔, 20세 이상 주민등록인구(2022년 4.3천만 명) 기준

## 커피 및 유사(규모) 품목 수입액 현황



## 커피 수입량 추이



품목의 경우 2022년 생두(로스팅하지 않은 상태) 수입량 18만 톤(전년대비 10.0%↑), 원두 수입량 2만 톤(4.9%↑)으로 증가하였다.

생두(수입량 비중 90%), 원두(10%) 순으로 수입되었으며, 코로나19 이후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생두나 원두 모두 디카페인이 물량은 적지만 높은 수입 증가세이다.

## 【품목별 수입량 현황】

(단위 : 만톤, 전년대비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증량	증감률	증량	증감률	증량	증감률	증량	증감률
커피	16.8	5.8	17.7	5.4	18.5	4.7	20.2	9.5
생두	15.2	4.8	16.0	5.1	16.5	3.3	18.2	10.0
디카페인	0.2	44.2	0.3	53.6	0.4	30.6	0.6	53.2
원두	1.6	16.7	1.7	7.9	2.0	17.3	2.1	4.9
디카페인	0.1	44.2	0.1	37.3	0.1	20.4	0.1	21.0

생두는 주요 커피 산지\*인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수입된다.

주로 해외 커피 브랜드를 통해 공급되는 원두는 미국, 스위스, 이탈리아 등에서 대부분 수입된다.

\* 세계 커피 생산량 상위 5개국(세계식량농업기구, 2021년 기준): 브라질(299만 톤), 베트남(185), 인도네시아(77), 콜롬비아(56), 에티오피아(46)

## 【커피(생두+원두) 국가별 수입량 현황】

(단위 : 만톤, 전년대비 %)

순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국가	중량	증감률	국가	중량	증감률	국가	중량	증감률	국가	중량	증감률
1위	브라질	3.3	6.6	브라질	3.5	6.9	브라질	4.0	14.7	브라질	4.7	18.7
2위	베트남	3.1	2.1	베트남	3.1	0.8	베트남	3.2	2.3	베트남	3.2	2.1
3위	콜롬비아	2.9	7.3	콜롬비아	3.0	3.8	콜롬비아	3.0	0.6	콜롬비아	3.0	0.8
4위	에티오피아	1.3	17.7	에티오피아	1.4	6.3	에티오피아	1.7	22.7	에티오피아	1.9	13.7
5위	미국	0.9	17.6	미국	0.9	4.8	미국	1.1	13.9	미국	1.2	12.6
기타	85개국	5.4	2.5	90개국	5.8	7.7	103개국	5.6	△3.8	91개국	6.1	9.9
	전체	16.8	5.8	전체	17.7	5.4	전체	18.5	4.7	전체	20.2	9.5



##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발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orea- 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한-싱 DPA’)이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여 1.14일 발효되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한-싱 DPA 서명식(11.21) 이후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였으며, 협정문 내 발효 규정에 따라 교환일로부터 30일 이후인 1.14일부터 발효된 것이다.

※ **한-싱 DPA 제5조(발효)** : 양 당사국이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의 교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

한-싱 DPA 발효로 기존의 한-싱가포르 FTA 제14장(전자상거래)은 한-싱 DPA 부속서 1(디지털경제)로 대체되며, 당초 4개 조항에 불과<sup>12</sup>하였던 양국 간 디지털 통상규범이 총 34개로 대폭 확대되어, 양국 간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비즈니스 여건 개선과 더불어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협력의 근거가 마련된다.

### ● <참고> 한-싱가포르 DPA 분야별 주요 조항

분야	주요 조항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적전송 무관세, 전자인증·전자서명, 전자송장, 전자지급, 종이서류 없는 무역, 특송화물 등
디지털 비즈니스활성화	디지털제품 비차별대우, 국경간 정보이전 원활화, 컴퓨터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공개 요구금지, 인공지능(AI)·핀테크·디지털경제 표준 협력 등
온라인 소비자보호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소비자 보호, 스팸 메시지 규제, 사이버보안 등

12 ▲정의, ▲범위, ▲서비스의 전자적공급, ▲디지털제품 등 4개 조항으로 실체적 의무 관련 조항은 1개 뿐(디지털제품)

한-싱 DPA 협정문 국·영문본과 상세설명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FTA 강국 코리아([www.fta.go.kr](http://www.ft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서명식 계기로 체결한 한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대화(Digital

Economy Dialogue) MOU의 이행을 위해, 싱가포르 측과 협의하여 빠르면 1분기 종 제1차 디지털경제대화를 개최하여, 비즈니스 관점에서 양국이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및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관련 공청회 개최 안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및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관련 이해관계자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3.9.(목) 오후 2시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 C1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경제동반자협정) : 시장개방 중심의 FTA에 공급망, 디지털, 기술 협력 등 신(新)통상 분야 협력을 가미
-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 제7조에 근거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몽골 EPA 및 한-조지아 EPA 개요 및 추진경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함께, 유관기관, 업계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공청회 현장 참석 희망 시 공청회 참가 신청서(붙임)를 작성, 3.2.(목) 18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기획과에 사전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 : (전화) 044-203-5747, (이메일) forest5399@motie.go.kr

공청회 현장 참석은 어려우나 한-몽골 EPA 및 한-조지아 EPA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의견을 작성하여 붙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장 참석과 동일하게 의견수렴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의 세부계획 및 참가신청 방법 등은 2.22(수)부터 전자관보([www.gwanbo.go.kr](http://www.gwanbo.go.kr)),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http://www.motie.go.kr)) 및 'FTA 강국, KOREA'([www.fta.go.kr](http://www.fta.go.kr))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몽골과 조지아는 대외 경제협력을 위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들로, 몽골은 아시아지역 주요 협력 파트너이자 자원 부국이며, 조지아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요충지에 위치한 코카서스 지역 유망국이다.

이에 따라 한-몽골 EPA 및 한-조지아 EPA 체결 시 우리의 주요 품목 수출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여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통상조약법에 따라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한-몽골 EPA 및 한-조지아 EP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 국가별 동향

## 2023 캄보디아 경제 성장률 6% 내외 전망

2019년까지 약 20여 년간 7% 내외의 탄탄한 경제성장을 지속해 오던 캄보디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3.1%의 감소를 기록했다. 하지만 효과적인 코로나19 관리 및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활동 재개 등을 바탕으로 2021년 3%, 2022년 5% 내외의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 2023년 캄보디아는 전 세계 경제 위기 및 불확실성 등 다양한 대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무역, 관광, 외국인직접투자 등의 회복세를 바탕으로 약 6% 내외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캄보디아 정부,  
2023년 경제성장률  
6% 내외 전망**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최근 발표한 '2022 거시경제 및 은행 부문 성과 및 2023년 전망'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효과적인 보건 정책 및 코로나19 관리로 2022년 국내 경제활동이 재개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위드코로나' 관련 다양한 경제 및 금융 조치 도입과 은행 부문 규제 완화 등이 캄보디아 경제 성장 회복을 지원하고 가속화했다고 평가했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국내 여건 및 외부 수요 증가 등을 바탕으로 2022년 캄보디아 경제가 5.1%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예측했다.

2023년 캄보디아는 글로벌 경제 위기 및 불확실성 등 대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경제 재개로 무역, 관광, 투자를 포함한

주요 경제 부문이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2023년 캄보디아 경제가 약 6% 내외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 ▶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전망은?

세계은행은 지난해 말 발표한 “캄보디아 경제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캄보디아가 효과적인 방역 정책 시행으로 코로나19 관련 침체에서 회복하고 있으며, 상품 수출, 관광 부문의 점진적 개선 등을 바탕으로 2022년 캄보디아 GDP가 4.8%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류·신발·여행용품 수출이 견조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투자 심리 회복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를 비롯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여행 및 관광업을 비롯한 서비스 부문 또한 ‘위드코로나’ 정책 시행과 함께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2&pagePerCnt=10&SITE\\_NO=3&MENU\\_ID=410&CONTENTS\\_NO=1&bbsGbn=242&bbsSn=242&pNttSn=200166&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Cd=&pIndustCd=&sSearchVal=](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2&pagePerCnt=10&SITE_NO=3&MENU_ID=410&CONTENTS_NO=1&bbsGbn=242&bbsSn=242&pNttSn=200166&recordCountPerPage=10&viewType=&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Cd=&pIndustCd=&sSearchVal=)



##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발효





FTATRAD



# FTA EXPERTS

한-미 FTA 직접운송 조항에 관한 한-미 세관당국간  
해석·운영 비교 및 시사점

김석오 | 관세인재개발원 전문교수

한-인도네시아 CEPA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금혜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경제학박사

E REPORT

# 한-미 FTA 직접운송 조항에 관한 한-미 세관당국간 해석·운영 비교 및 시사점



김석오

관세인재개발원 전문교수<sup>1</sup>

1. 필자는 한-미 FTA, 한-EU FTA, 한-아세안 FTA 원산지규정 협상 대표를 역임한 바 있으며,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자유무역협정협력담당관, 주LA관세관을 거쳐 현재 관세인재개발원 FTA 전문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 1 들어가면서

2012년 3월 15일 우리나라 FTA 통상의 큰 획을 그었던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1년이 되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지난 10여년간 양국간 무역 규모는 2011년 1,007억달러에서 2022년 1,916억달러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11년간 미국과의 교역에서 2,203억달러의 흑자를 달성하였다.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85.1%가 한-미 FTA 혜택을 누리고 있고, 미국 상품의 73.6%가 한-미 FTA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한-미 FTA가 양국간 무역확대에 일조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미 양국간의 교역물품 중에서 파나마 운하를 경유하면서 다른 배로 환적된 후 최종 목적지인 부산항 또는 미국 동부지역의 항만으로 운송되는 벌크화물이 늘고 있다. FTA 비당사국인 파나마에서 화물의 환적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환적 과정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이 섞이거나 대체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 협정문에서는 FTA 체약상대국에서 직접운송된 경우에만 원산지를 인정하고 특혜관세를 허용한다. 다만, 순수한 환적 작업 또는 보관을 위한 작업 등을 제외한 추가 가공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운송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FTA에서 직접운송원칙을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FTA 협정에서 직접운송의 원칙은 국제운송 과정에서 추가로 가공하거나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물품과 뒤바뀌게 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19.1.17, 2016두45813).

한-미 FTA 제6.13조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통과 및 환적(Transit and Transshipment)이라는 타이틀로 직접운송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FTA 비당사국에서 운송물품이 환적된 경우 직접운송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어떠한 증빙서류를 세관당국에 제출할 것인지가 세관당국과 무역업체 간에 논란이 되어왔다.

특히, 항외 지역에서 선박간 해상환적된 물품의 경우 더욱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한-미 FTA 직접운송 조항에 관한 한-미 세관당국의 해석·운영 관행을 비교·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한-미 FTA 통과 및 환적 조항

한-미 FTA 제6.13조(통과 및 환적)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 가.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또는
- 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한-미 FTA에서는 제3국에서 환적된 경우 하역, 재선적 또는 양호한 상태로 상품을 보전하거나 운송에 필요한 공정만 인정하고, 그 이외의 공정(operation)을 거친 경우에는 직접운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비당사국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직접운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달리 해석하면 국제운송 과정 중 비당사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추가 가공을 거쳤거나 세관당국의 통제(보세구역)를 벗어나면 직접운송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한-미 FTA 직접운송 조항의 특징은 환적과정에서 추가가공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나 증명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직접운송 입증서류는 수입국 세관당국의 재량에 달려 있다.

한-미 FTA의 직접운송 조항을 한-EU FTA 및 한-중미 FTA의 직접운송 조항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수에즈 운하 및 파나마 운하를 통해 환적운송되는 화물의 경우 한-EU FTA 및 한-중미 FTA의 직접운송 조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EU 및 한-중미 FTA는 직접운송의 인정요건과 증명방법까지 상세히 규정하는 반면 한-미 FTA는 직접운송의 인정요건만

규정하고 증명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직접운송의 예외를 입증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한-EU FTA 및 한-중미 FTA는 경유국 세관당국이 발급한 증빙서류(비가공증명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비교된다.

그렇다면 한-미 세관당국은 지난 11년간 한-미 FTA 직접운송 조항을 어떻게 해석·운영해 왔을까?



〈표 1〉 FTA 별 직접운송 조항 비교

구분	한-미 FTA	한-EU FTA	한-중미 FTA
직접운송 요건범위	환적(일시 보관 포함), 하역, 재선적, 양호상태 유지 공정 <b>또는 세관통제</b>	환적(일시보관 포함), 하역, 재선적, 양호상태 유지 공정 <b>+ 보세상태(세관통제)</b>	환적(일시보관 포함), 하역, 재선적, <b>재포장</b> , 양호상태 유지 공정 <b>+ 세관통제</b>
직접운송 증명방법	없음 (수입국 세관 재량)	수출국-경유국 운송서류, 경유국-수입국 운송서류 <b>또는</b> 비가공증명서	수출국-경유국 운송서류, 경유국-수입국 운송서류 <b>및</b> 비가공증명서

### 3 미국 세관당국(CBP)의 해석·운영 사례 검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미 FTA 협정에서는 직접운송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의 종류 또는 입증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미국 국내 규정으로는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다. 미 정부가 한-미 FTA 이행을 위해 제정한 「미-한 자유무역협정 연방규정(19 CFR Subpart R)」 제10.1025(b)에 따르면, 직접운송의 입증 책임을 수입자에게 부여하고, 입증서류로는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 상업송장, 물품수령 및 재고기록(receiving and inventory records), 세관 반입반출서류(custom entry and exit documents) 등을 예시하고 있다.(<표 2>)

#### 〈표 2〉 미국 연방규정(19 CFR 10.1025(b))

§ 10.1025 Transit and transshipment.  
 (b) Documentary evidence. An importer making a claim that a good is originating may be required to demonstrate, to CBP's satisfaction, that the conditions and requirements set forth in paragraph (a) of this section were met. An importer may demonstrate compliance with this section by submitting documentary evidence. Such evidence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bills of lading, airway bills, packing lists, commercial invoices, receiving and inventory records, and customs entry and exit documents.

미국 CBP는 멕시코의 보세창고에서 일시보관되었다가 다른 선박편에 환적되어 미국으로 운송된 칠레산 물품의 직접운송 조항의 적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U.S. CBP Advance ruling, HQ, H248919, 2014.1.29.)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비당사국에서 하역 선적 작업 등을 제외한 생산 또는 여타 작업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수입자가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그 증빙서류로는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상업송장 및 세관 반출입서류(customs entry and exit documents)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한편, 한국에서 출항하여 파나마에서 해상 환적된 후 미국에 도착된 제품의 한-미 FTA 직접운송 입증서류를 묻는 질문에 대해, 미 CBP의 심사담당관은 “미국 연방규정 19 CFR 10.1025에 따라 수입자가 세관에 제출해야 할 입증서류로서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 상업 송장, 물품 수령 및 재고기록, 세관 반입·반출 서류 등이 포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sup>2</sup>

세관 반출입서류(customs entry and exit documents)의 의미에 대해, 미국 현지

2. 미국 현지 관세사의 E-메일 방식의 질문에 대해, 미 CBP 원유 심사담당관은 2022.10.25. 위와 같은 취지로 E-메일로 회신하였음.

관세전문가는 경유국의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일시보관된 경우 화물의 반출입신고서류, 해상환적인 경우 선박의 입출항신고 및 환적신고서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 FTA 직접운송 조항의 해석·운영과 관련하여 미국은 관련규정, 유권해석 및 담당자의 의견이 서로 일관적이고, 입증서류의 종류에 대해서도 연방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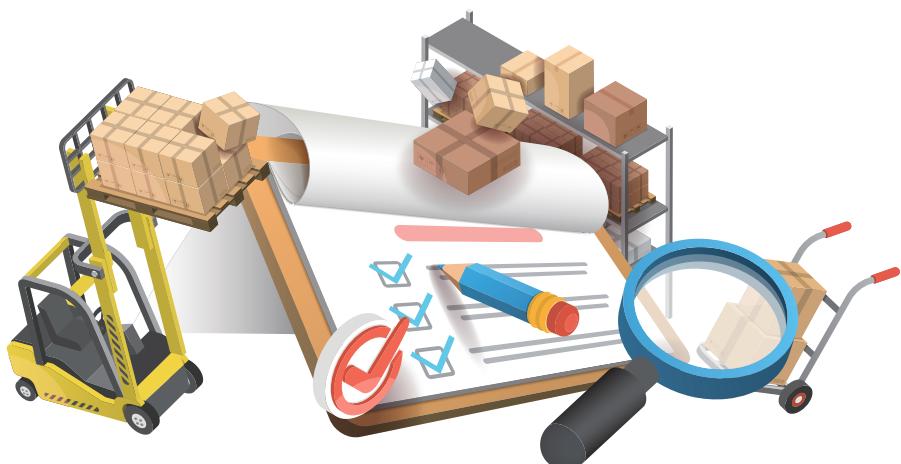
## 4

## 한국 세관당국의 해석·운영 사례 검토

FTA관세특례법 제7조에서 직접운송의 원칙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을 하면서, 직접운송 규정의 적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FTA관세 특례법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동 규칙 제5조제2항에서는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의 경우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생산과정 또는 작업과정이 추가되었거나, (수입항까지 국제운송에 필요한 하역 ·

선적 · 포장에 필요한 작업이나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 데 필요한 작업과정이 추가된 경우는 제외)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관세 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법령에서 직접운송 조항 적용을 위한 입증서류를 정하지 않았다.



직접운송 입증서류에 대해서는 관세청 고시인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2021-85)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서는 입증서류로서 ▲체약 상대국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전체 운송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선하증권(B/L) 등 운송서류 일체... ▲...조약·협정 등에서 정한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다.

“운송서류 일체 또는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한-EU FTA 및 한-중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가공증명서에 관한 규정도 없다. 무역업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선사

에서 발행하는 “운송서류 일체”만 제출하면 되는 것일까? 아니면 수입할 때마다 세관당국에 질의해서 지침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세관 입장에서도 어떠한 입증서류를 수입자에게 제출요구할지 막연할 수 밖에 없다.

파나마에서 해상환적된 미국산 원유 등 벌크화물의 한-미 FTA 직접운송 조항 적용을 위한 입증서류와 관련으로 관세청에서는 2020년 이후 2022년 12월까지 3건의 민원질의 회신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관세청에서 2020년 1월 7일 민원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직접운송 입증서류로서 “우리나라로 운항하는 선편에 선적될 때까지 타 원유와 혼합되지 않고 하역·저장·송유관 이동·



최종 선편에 선적 작업이외의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음을 파나마 관세당국에서 확인하여 발급한 서류"를 언급하고 있다. 파나마 관세당국이 확인하여 발급한 서류란 "비가공증명서"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or Certificate of non-processing)를 의미할 것이다.

관세청에서 2021년 6월 17일 민원회신한 내용에서도, "파나마 세관이 경유 과정에서 어떠한 생산·가공·혼합·취급 또는 기타 작업도 거치지 않았음과 타 원유와 혼합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발급한 세관통제서류(비가공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회신한다. 세관통제서류를 비가공증명서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관세청에서 2022년 6월 3일 민원회신한 내용에 따르면, "화물을 하역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경유국 관세당국으로부터 구비 가능한 직접운송 입증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 경유지 항만당국의 승인을 받은 입출항 서류
- ▲ 경유지 항구에서 하역내역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해당 선박회사가 발행한 컨테이너 트레킹 자료 등 화물을 하역하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고 해석하여 종전의 입장과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관세청의 1, 2차 민원회신은 파나마 관세

당국이 확인하여 발급한 서류(비가공증명서)를 필수서류로 한정하였으나, 3차 회신은 해상 환적과 같이 화물을 보세구역에 하역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적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경유지 항만당국의 입출항 승인서류 및 선사가 발행한 컨테이너 트레킹 자료도 직접운송 요건 확인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유국 관세당국이 비가공증명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이 발행한 서류도 대체증빙 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직접운송 입증서류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도 중요한 판결(2019.1.17. 선고 2016두45813)을 내린 바 있다. 한-아세안 FTA에서 규정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을 세관에 제출하지 않아서 직접운송을 불인정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며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판결의 의미는 운송형태, 환적방법, 환적 장소 및 환적대상 물품 등에 따라 직접운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대체증빙 서류를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5 한-미 세관당국간 직접운송 조항 비교·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미 FTA 제6.13조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의 관련규정 및 해석운영 관행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접운송 요건 입증서류의 종류에 대해 미국에서는 연방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청 고시에 "선하증권 등 운송 서류 일체"로 규정되어 있다. 세관당국의 해석·운영과 관련해서 미국은 연방규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해석·운영하는 반면 한국은 다소 차이가 있다.

관세청 고시상으로는 출항지에서 도착항까지 운송서류 일체를 제출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유국 세관당국이 발급한 비가공증명서 제출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 서류는 관세청 고시에서 규정한 운송서류는 아니다. 대법원에서는 직접운송의 인정서류를 넓게 해석하고 있고, 미국 CBP도 경유국 환적화물에 대해 비가공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세관당국이 중요시하는 비가공증명서와 관련, 우리나라에서도 보세구역에 반입되지 않고 항외에서 진행되는 해상환적화물(원유 또는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그동안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12조에 따르면,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세구역 일시장치 확인서가 필요한데,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항외에서 선박간 환적되는 화물은 보세구역 일시장치 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서도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동 고시 제12조제2항 단서조항을 신설,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선박 간에 화물을 환적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치 확인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여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경유국에서도 해상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비가공증명서 발급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출입기업들은 직접운송의 인정여부에 따라 운송경로의 선택, 운송비 및 관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세관당국의 해석·집행에 따른 파급효과가 매우 클 수 있다. 따라서 세관당국에서 먼저 파나마 운하 및

수에즈 운하와 같이 환적빈도가 많은 지역 세관당국의 환적절차, 비가공증명서 발행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체화하고 이를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FTA관세특례법령의 체계상 직접운송 입증서류에 대해서는 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아울러 해외 경유국 관세당국이 비가공증명서를 발행하지 않는데도 이를 필수적으로 제출토록하는 것은 FTA 혜택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통상분쟁과 과세마찰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직접운송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 중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직접운송 입증서류는 보세구역 반입후 환적, 항외 해상환적 또는 자유무역지역이나 물류센터에 보관후 환적되는 경우 등 다양한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세청에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각 유형별로 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미 세관당국 간 한-미 FTA 직접운송 해석·운영에 관한 통일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FTA 통상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FTA 협력외교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한-인도네시아 CEPA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김혜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팀 전문연구원  
경제학박사

2022년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상위 수출 품목을 보면 석유화학제품, 반도체, 철강과 같은 중간재 위주인 반면 대인도네시아 수입품목은 유연탄과 천연가스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동광, 주석 등 원자재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상호보완적인 무역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확보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역내교역 비중이 20%대로 높지 않은데, 이는 한국을 비롯한 역외국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나 분야가 상대적으로 넓다는 것이다.

## 1 한-인도네시아 CEPA의 개요<sup>1</sup>

2023년 1월 1일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되며 우리나라는 아세안 회원국과 네 번째 양자 FTA 체결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sup>2</sup>

한-인도네시아 CEPA 협상은 2012년에 시작되었으나 2014년 2월 7차 협상 이후 양측 주요 관심품목에 대한 양허수준, 서비스 및 투자에서 현지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보호 문제, 인도네시아의 투자 확대 요구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5년간 중단되었던 협상은 2019년에 재개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은 양국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추진된 RCEP에서 규범 분야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면서 양국은 상품과 서비스시장 개방 협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sup>3</sup>

1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는 당사국 간 상품 및 서비스교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의 협정을 뜻하는데 실상 FTA와 동일한 의미임.

2 동 협정에 앞서 2006년 3월 싱가포르, 2015년 12월 베트남, 2022년 12월 캄보디아와의 FTA를 발효함.

3 RCEP 발효 시기는 한국 2022년 2월 1일, 인도네시아는 2023년 1월 2일임

## 2 한-인도네시아 CEPA의 주요내용

한-인도네시아 CEPA 협정문은 상품, 원산지 규정, 서비스, 투자 등을 포함하여 13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동 협정에서 양국은 상품 및 서비스 중심의 협상을 진행한 바, 우리나라가 최근 체결한 여타 FTA에 비해 협정문은 단순한 편이다.

우선 상품양허를 살펴보면, 한-인도네시아 CEPA를 계기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최장 20년까지 수입 품목수 기준 각각 95.5%와 93%, 수입액 기준으로는 97.3%와 97%까지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로 하였다. 2007년부터

발효 중인 한-아세안 FTA와 비교하면 특히 인도네시아의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12.9%p 증가하였다. 이렇듯 인도네시아의 자유화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한-아세안 FTA에 존재하던 상호주의 제도를 이번 협정에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sup>4</sup>

그간 한국은 98개 품목, 인도네시아는 793개 품목에 대해 상호주의를 적용해 왔으나 CEPA 발효 시부터는 이러한 품목들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양국은 관세 감축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표 1〉 한-아세안 FTA 및 한-인도네시아 CEPA 양허수준(%) 비교

구분	한국		인도네시아	
	품목수	수입액	품목수	수입액
한-아세안 FTA	90.2	93.6	80.1	88.5
한-인도네시아 CEPA	95.5	97.3	93.0	97.0
추가 자유화율	5.3	3.7	12.9	8.5

주: 품목수는 2018년 HS코드, 수입액은 2017~18년 평균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9.10.17.)

4 상호주의 제도에 따르면 수출국의 민감품목에 대해 수입국이 해당 품목을 일반품목으로 양허했더라도 한-아세안 FTA에 따른 양허 관세 혜택 배제(MFN 관세 적용)가 가능함. 그러므로 상호주의 제도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경우 대상 품목은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의 완전 철폐도 가능하게 됨.

제조업 부문의 양허수준을 보면, 한국은 한-아세안 FTA에서 관세 철폐가 완료되지 않은 품목들 중 절반가량의 품목에 대하여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한다. 대표적인 품목으로 경유와 병커C유, 망간 건전지 및 알칼리망간 건전지, 섬유·직물 및 의복 관련 일부 품목을 들 수 있다.

더불어 한국은 한-아세안 FTA에서 상호대응 세율 부과 품목으로 두었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도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철강제품,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등을 개방하였다.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열연, 냉연, 도금 등)은 기존의 5~15% 관세 대신 무관세를 적용받게 되었고, 트랜스미션과 선루프 등 자동차 부품의 관세도 협정 발효 즉시 철폐될 예정이다.

섬유 및 의류를 중심으로 복잡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단순화하고, 기계·전기전자 품목에 대해서는 역외산 부품 조달이 용이한 기준을 반영하는 등 원산지기준을 한-아세안 FTA 대비 기업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인증수출자(2년내 도입), 수출자·생산자 자율증명(10년내 도입)을 약속하였으며, 특혜관세 사후신청을 허용했다는 점 역시

CEPA의 활용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인도네시아 CEPA의 서비스무역 및 투자 자유화는 한-아세안 FTA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되,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체결되었다. 이번 협정을 통해 온라인 게임, 문화콘텐츠 등의 서비스분야가 신규 개방되었으며, 유통(50%→67%), 건설 및 엔지니어링(55%→67%)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지분제한이 완화되었다.

또한 양국은 경제협력 챕터에 합의함으로서 양측이 상호호혜적 관계 속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다. 협정문은 자동차, 철강, 화학 등의 산업을 비롯하여 주요 통상규범, 자연인의 이동, 중소기업 지원 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협력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 3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교역 및 투자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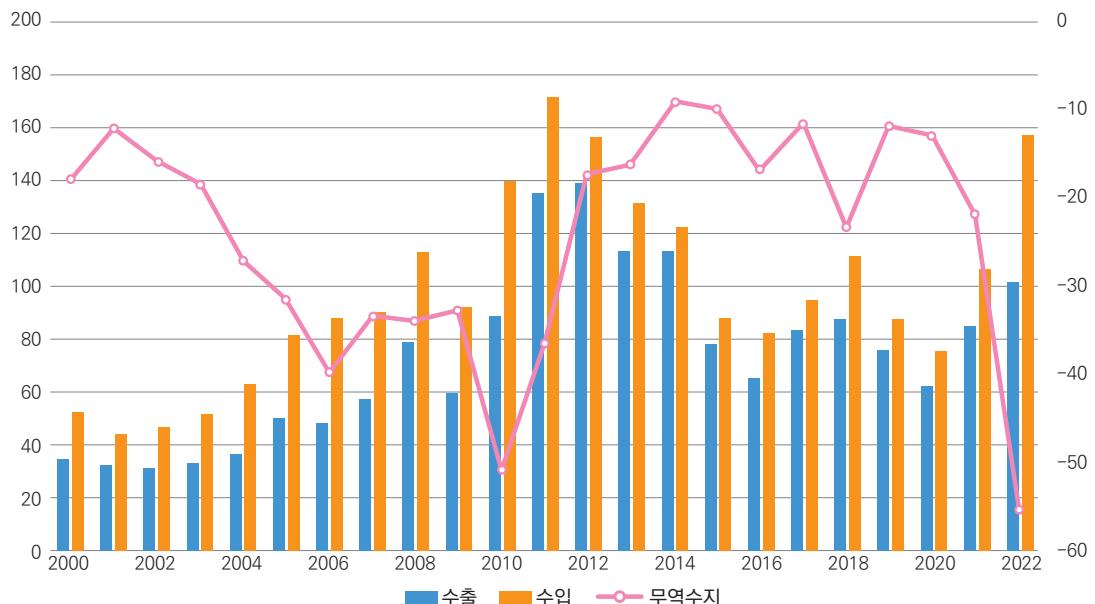
한국에게 인도네시아는 주요 원자재 공급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교역 상대국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출은 102억 달러, 수입은 157억 달러로 한국은 55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는데 2000년대 이래 가장 큰 적자규모였다.

한국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출은 2002년부터 한-아세안 FTA 발효 6년차인 2012년까지

대체로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겪으며 감소하였다가 2021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수입은 수출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좀 더 컸다. 2022년에는 유연탄 수입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동광 품목에서 한국의 최대수입국이 되면서 원자재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림 1〉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교역 추이

(단위: 억 달러)



주: 수출입은 좌축, 무역수지는 우축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한국무역.

다만 2000년 이후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무역규모는 한-아세안 FTA 발효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증가세를 유지하지 못했다.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전체 수출입에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대 접어들어 뚜렷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무역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데 2021년에는 수출과 수입 비중이 3.9%와 4.8%로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인도네시아 CEPA는 양국 간 교역 확대를 위한 새로운 동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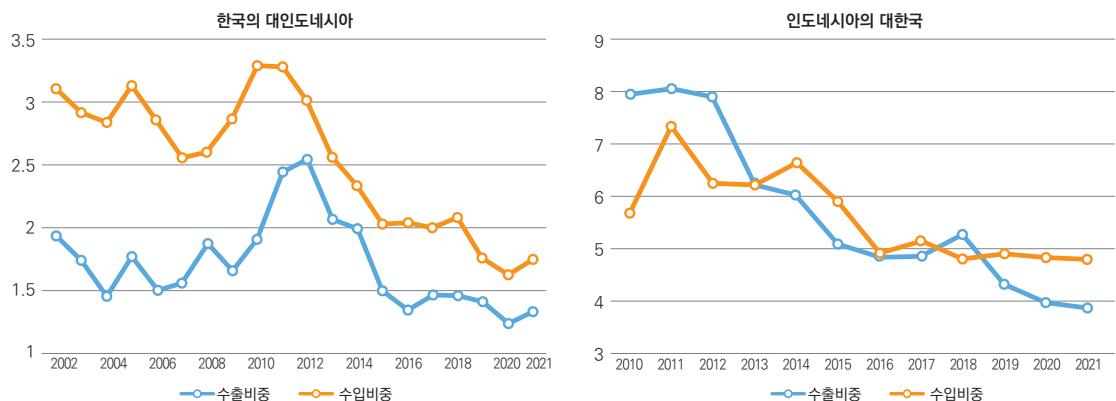
2022년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휘발유이며, 상위 수출품목을 보면 석유화학제품, 반도체, 철강과 같은 중간재가 주를 이룬다.

반면 대인도네시아 수입품목은 유연탄과 천연가스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동광, 주석 등까지 고려하면 원자재 수입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즉 양국은 완벽하게 상호보완적인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는 바, 최근과 같이 공급망이 중요한 시대에 교역파트너로서의 의미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림 2〉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상대국 전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주: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전체 수출입에서 상대국이 차지하는 비중, 데이터 부재로 분석기간이 상이함.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를 토대로 저자 작성.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투자관계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투자(IFDI)보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OFDI) 규모가 훨씬 크다.

실상 인도네시아는 2017년과 2019년 금융·보험업에 간헐적으로 투자했을 뿐 그 밖의 연도에는 투자활동이 거의 부재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의 경우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나 그 규모는 대체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편이며 서비스업 중에서는 금융업의 비중이 높다.

〈표 2〉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교역품목(2022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품목			수입품목		
	품명	금액	비중	품명	금액	비중
1	휘발유	828	8.1	유연탄	3,240	20.6
2	합성수지	784	7.7	천연가스	2,921	18.6
3	경유	689	6.7	동광	1,477	9.4
4	집적회로 반도체	529	5.2	암모니아수	538	3.4
5	편직물	335	3.3	신발	514	3.3
6	합성고무	294	2.9	식물성 유지	498	3.2
7	냉연강판	278	2.7	기타 정밀화학제품	415	2.6
8	기타 정밀화학원료	260	2.5	칼라TV	409	2.6
9	열연강판	230	2.3	직물제 의류	329	2.1
10	기타 석유화학제품	202	2.0	주석괴 및 스크랩	317	2.0
소계		4,428	43.3		10,659	67.7
전체		10,219	100		15,737	100

주: MTI 4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한국무역.

〈표 3〉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추이

(신고금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외국인투자 (IFDI)	9.2	55.6	0.9	3.7	1,051	10.4	451.1	196.9	8.6	1
	(0.1)	(0.3)	(0.0)	(0.0)	(4.6)	(0.0)	(1.9)	(0.9)	(0.0)	(0.0)
해외직접투자 (OFDI)	618	821	846	727	754	845	1,544	1,166	2,411	1,437
	(1.7)	(2.3)	(2.1)	(1.4)	(1.5)	(1.4)	(1.8)	(1.6)	(2.2)	(1.8)

주: ( )안은 각 연도 한국의 전체 IFDI와 OFDI에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4 한-인도네시아 CEPA의 기대효과

2018년부터 고조된 미-중 무역갈등과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봉쇄 조치의 여파 등으로 최근 제조업 생산기지로서 아세안 지역에 대한 매력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게도 아세안은 중요한 교역파트너로, 한-아세안 FTA 발효 전인 2006년 618억 달러이던 양측 간 교역액은 2022년 2,074억 달러까지 증가하였다. 한편 이러한 분위기와는 반대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무역은 그간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일례로 2007년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회원국 중 한국의 2위 수출시장이었으나 2022년에는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에 이은 5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앞서 확인했듯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상호보완적인 무역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는 2.7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소비시장으로서의 매력도 크기 때문에, 한-인도네시아 CEPA를 계기로 양국 간 교역이 확대될 경우 한국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큰 편이다.

〈표 4〉 인도네시아의 연도별 대주요국 수입비중

상대국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호주	3.0	2.9	2.8	2.7	3.2	3.4	3.9	3.8	3.1	3.2	3.3	4.8
중국	15.1	14.8	15.3	16.0	17.2	20.6	22.7	22.8	24.1	26.2	28.0	28.7
일본	12.5	11.0	11.9	10.3	9.6	9.3	9.6	9.7	9.5	9.1	7.5	7.5
한국	5.7	7.3	6.2	6.2	6.7	5.9	4.9	5.2	4.8	4.9	4.8	4.8
말레이시아	6.4	5.9	6.4	7.1	6.1	6.0	5.3	5.6	4.6	4.5	4.9	4.8
싱가포르	14.9	14.6	13.6	13.7	14.1	12.6	10.7	10.8	11.4	10.3	8.7	7.9
미국	6.9	6.1	6.1	4.9	4.6	5.3	5.4	5.2	5.4	5.4	6.1	5.8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를 토대로 저자 작성.

우선 한국은 유연탄, 천연가스, 니켈 등 핵심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니켈은 2차전지의 핵심 소재로 한국의 자동차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인데, 인도네시아는 세계 니켈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최대 생산국이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요 광물에 대해 수출 규제조치를 시행하면서 원자재의 무분별한 유출에 우려를 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sup>5</sup> 한-인도네시아 CEPA는 원자재 관련 양국 간 정보 및 의견 교환의 효과적인 채널로서 더욱 의미가 있다.

또한 한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확보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목 중 철강 제품(HS 7208, HS 7210)의 경우 중국, 일본과 치열한 경쟁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한-인도네시아 CEPA에 따른 관세 철폐의 효과는 클 것이다.<sup>6</sup> 인도네시아 전체 수입시장으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현재 주요 수입상대국의 시장 점유율은 중국을 제외하면 큰 격차가 없는 상황인바, 이번 협정에 따라 관세 및 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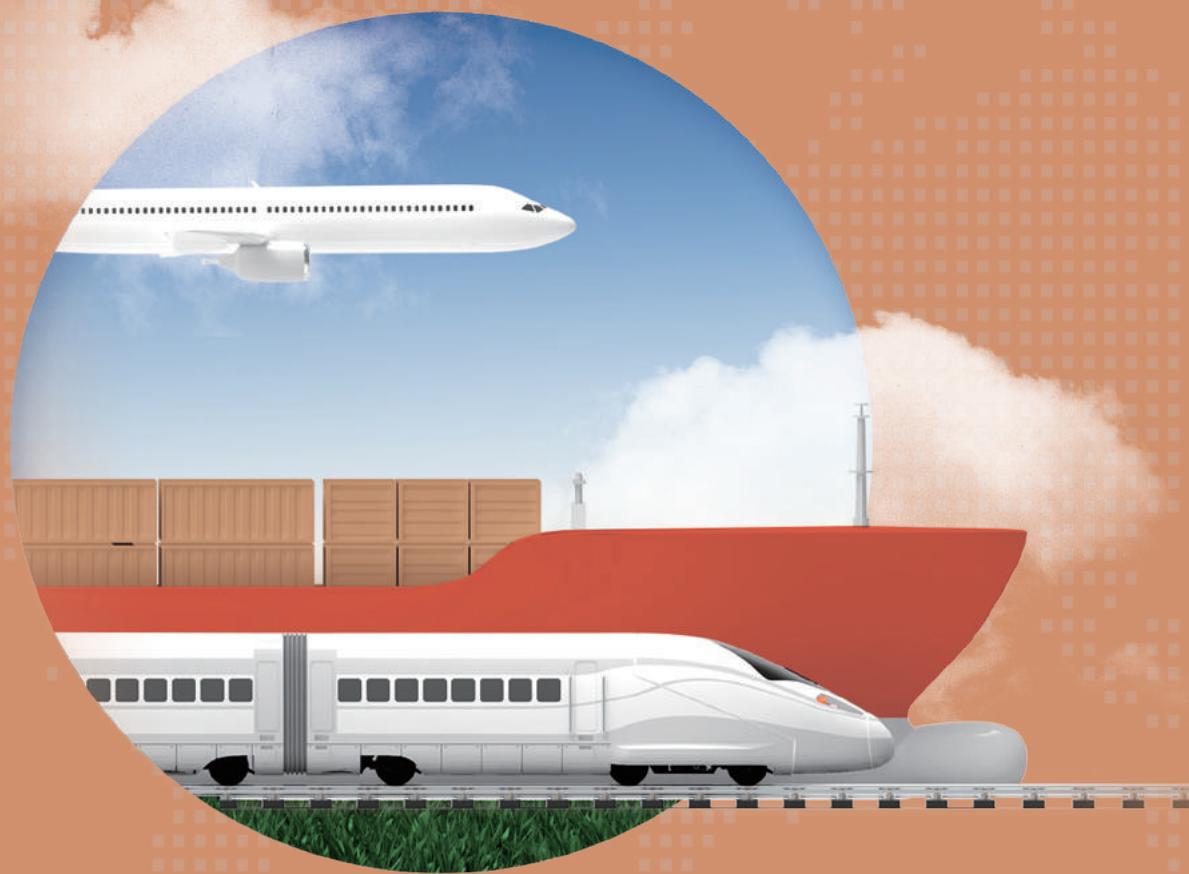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면 한국은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환경에서 시장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역내교역 비중이 20%대로 높지 않은데, 이는 한국을 비롯한 역외국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나 분야가 상대적으로 넓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 후로 한국 기업들은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에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sup>5</sup> 자세한 내용은 이재호·김소은(2022), 「최근 인도네시아의 주요 광물 수출 중단조치의 배경과 시사점」(KIEP 세계경제 포커스, Vol.5 No.4) 참고.

<sup>6</sup> 인도네시아는 2008년 7월 일본과의 양자 EPA를 발효한 바 있고, 중국과는 아세안 차원에서 FTA를 체결하고 2010년 1월 발효함.



FTA TRAD



# FTA ANALYSIS

## 일본의 원산지증명제도와 활용 현황

김세라 | 국제원산지정보원 정책연구팀 전문연구원

E REPORT

# 일본의 원산지증명제도와 활용 현황<sup>1</sup>



김세라  
국제원산지정보원  
정책연구팀 전문연구원



RCEP



1. 본 내용은 RCEP 발효 대응 기업지원 정보 제공(국제원산지정보원, 2022)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을 뜻함.

## 1 들어가며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총 15개국이 참여해 세계 최대 MEGA FTA 불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 얼마 전 발효 1주년을 맞았다.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만큼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기본이 되는 원산지증명서 역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및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방식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및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방식만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일본의 경우 앞서 언급한 모든 원산지증명 방식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외에 일본으로 수입 시에만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방식 역시 유효한 원산지증명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RCEP 발효 1주년을 맞아 일본 원산지증명제도 운영 현황 및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우리나라와 일본 교역 동향

### 1. 우리나라와 일본 교역 동향

코로나19(COVID-19) 및 러·우 전쟁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 2022년 우리나라 대일 수출금액은 2021년 대비 1.8% 증가한 306억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은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우리나라 4번째 수출 대상국으로 전체 수출의 4.5%, 수입의 7.5%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 교역국이다.

[표 1] 우리나라와 일본 교역동향(2012~2022년)

[단위 : 백만불, %]

연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22	30,606	1.8	54,712	0.1	-24,106
2021	30,062	19.8	54,642	18.7	-24,581
2020	25,098	-11.7	46,023	-3.3	-20,925
2019	28,420	-6.9	47,581	-12.9	-19,161
2018	30,529	13.8	54,604	-0.9	-24,075
2017	26,816	10.1	55,125	16.1	-28,309
2016	24,355	-4.8	47,467	3.5	-23,112
2015	25,577	-20.5	45,854	-14.7	-20,278
2014	32,184	-7.2	53,768	-10.4	-21,584
2013	34,662	-10.7	60,029	-6.7	-25,368
2012	38,796	-2.2	64,363	-5.8	-25,567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검색일: 2023.03.17)

그러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간 교역구조 상 가장 큰 특징은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무역역조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주요 원인으로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산업에서 주요 부품·소재 등의 수입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 2. 우리나라의 대일 주요 수출품목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상위 품목(MTI 3단위 기준)을 살펴보면 석유제품, 철강판, 반도체, 농약 및 의약품, 정밀화학원료 등으로 확인되었다. 그중 반도체의 경우 2021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0년 대비 37.8% 증가한 약 13억 5천만 달러였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인 농약 및 의약품의 경우 2020년 대비 약 두 배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보였다.

또한 우리나라 10대 주요 수출 상위 품목인 정밀화학원료 및 합성수지 역시 2020년 대비 각각 35.3%, 7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우리나라의 일본 주요 수출품목(MTI 3단위)

[단위 : 백만불, %]

순번	품목명	2020		2021		2022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25,098	-11.7	30,062	19.8	30,606	1.8
1	석유제품	2,900	-31.7	4,678	61.3	5,134	9.7
2	철강판	1,661	-23.4	2,399	44.4	2,414	0.6
3	반도체	980	-8.1	1,366	39.4	1,350	-1.2
4	농약 및 의약품	530	21.0	656	23.7	1,216	85.4
5	정밀화학원료	885	-16.5	1,022	15.5	1,197	17.0

순번	품목명	2020		2021		2022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6	합성수지	586	-20.3	844	44.1	1,012	20.0
7	금은 및 백금	1,045	40.0	1,667	59.5	963	-42.2
8	비누치약 및 화장품	664	62.1	801	20.7	750	-6.4
9	플라스틱 제품	764	-5.5	772	1.1	678	-12.2
10	컴퓨터	413	52.0	445	7.6	568	27.8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검색일: 2023.03.17)

주 : MTI 3단위 기준

### 3. 우리나라의 대일 주요 수입품목

한편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대일 수입금액은 547억 달러로 주요 수입품목(MTI 3단위 기준)인 반도체의 경우 2021년 대비 약 3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경우 12.5% 감소했다.

또한 우리나라 대일 주요 수출품목이면서 수입품목인 철강판의 경우 3위를 차지했으며, 이 외에도 주요 수입품목으로는 플라스틱 제품, 합금철 선철 및 고철 등이 존재했다.

[표 3] 우리나라의 일본 주요 수입품목(MTI 3단위)

[단위 : 백만불, %]

순번	품목명	2020		2021		2022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46,023	-3.3	54,642	18.7	54,712	0.1
1	반도체	4,955	10.6	5,889	18.9	7,768	31.9
2	반도체제조용장비	4,382	32.9	6,326	44.4	5,533	-12.5
3	철강판	1,775	-26.2	2,630	48.2	2,968	12.8

순번	품목명	2020		2021		2022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4	플라스틱 제품	2,404	6.3	2,535	5.4	2,082	-17.9
5	합금철 선철 및 고철	970	-35.9	1,707	76.1	1,720	0.8
6	기초유분	1,049	-33.8	1,384	31.9	1,337	-3.4
7	계측제어분석기	1,375	0.0	1,229	-10.7	1,196	-2.6
8	금은 및 백금	547	50.5	547	0.1	1,151	110.3
9	농약 및 의약품	631	-3.2	650	3.1	1,140	75.2
10	정밀화학원료	1,333	-15.3	1,509	13.2	1,103	-26.9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검색일: 2023.03.17)

주 : MTI 3단위 기준



### 3 일본의 원산지증명제도

#### 1. 일본 EPA·FTA 체결 현황

일본은 2002년 일-싱가포르 경제연계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EPA]을 시작으로 2023년 1월 기준 총 20건의 특혜무역협정을 발효했다.

일본은 자국의 독자성 강조 차원에서 다른 나라와 FTA 대신 EPA를 체결하고 있다. EPA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의 FTA라 할 수 있다.<sup>2</sup>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이 체결한 EPA 대부분은 기관발급에 해당하는 제3자

증명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2015년 일-호주 EPA를 시작으로 미국, EU 등 주요 거대 선진 경제권과 체결한 협정에서 자기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자기신고제도란 수출자·생산자 및 수입자가 자신의 정보에 근거해 스스로 원산지 신고를 작성함으로써 특혜세율 적용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자기신고제도와 수입자에 의한 자기신고제도를 구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RCEP 발효 즉시 수입자 자기신고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일본 EPA/FTA/무역협정 체결 현황과 원산지증명제도

EPA/FTA/ 무역협정	발효	제3자증명제도 (기관발급)	인증수출자	자기신고제도
일-싱가포르	2002년 11월	○	-	-
일-멕시코	2005년 4월	○	○	-
일-말레이시아	2006년 7월	○	-	-
일-칠레	2007년 9월	○	-	-

2 국제원산지정보원(2021), RCEP 발효 대비 현행 FTA 이행절차 및 원산지결정기준 연구

EPA/FTA/ 무역협정	발효	제3자증명제도 (기관발급)	인증수출자	자기신고제도
일-태국	2007년 11월	○	-	-
일-인도네시아	2008년 7월	○	-	-
일-브루나이	2008년 7월	○	-	-
일-아세안	2008년 12월	○	-	-
일-필리핀	2008년 12월	○	-	-
일-스위스	2009년 9월	○	○	-
일-베트남	2009년 10월	○	-	-
일-인도	2011년 8월	○	-	-
일-페루	2012년 3월	○	○	-
일-호주	2015년 1월	○	-	○
일-몽골	2016년 6월	○	-	-
CPTPP	2018년 12월	-	-	○
일-EU	2019년 2월	-	-	○
일-미	2020년 1월	-	-	○ (수입자만 해당)
일-영	2020년 1월	-	-	○
RCEP	2022년 1월 (2020년 11월 서명)	○	○	발효 후 10년 또는 20년 이내 도입 <sup>3</sup>

자료 : JETRO(2022), RCEP 협정의 특혜관세 활용에 대하여 – RCEP 협정 해설서

[https://www.jetro.go.jp/ext\\_images/theme/wto-ftha/rcep/rcep.pdf](https://www.jetro.go.jp/ext_images/theme/wto-ftha/rcep/rcep.pdf)

<sup>3</sup> 한국, 호주, 브루나이 다루살람,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및 베트남은 협정 발효일 후 10년 내(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는 협정 발효일 후 20년 내) 이행 예정임

## 2. 원산지증명제도

### (1) 기관발급

#### ① 제3자 증명제도

일본은 원산지증명제도에 따라 관련 법령이 상이하며, 기관발급에 해당하는 일본의 제3자 증명제도의 경우 『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하는

특정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법률』, 『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하는 특정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하는 특정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다.

[표 5] RCEP 원산지증명 제도 관련 법령

원산지증명 제도	관련 법령
제3자증명제도(第三者証明制度) 또는 제1종 특정 원산지증명서 제도 (第一種特定原產地證明書制度)	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하는 특정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법률 <sup>4</sup> (経済連携協定に基づく特定原產地證明書の発給等に関する法律)
인증수출자제도(認定輸出者制度) 또는 제2종 특정 원산지증명서 제도 (第二種特定原產地證明書制度)	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하는 특정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sup>5</sup> (経済連携協定に基づく特定原產地證明書の発給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하는 특정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sup>6</sup> (経済連携協定に基づく特定原產地證明書の発給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 4 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하는 특정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법률은 6개 장의 4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종 특정 원산지증명과 제2종 특정 원산지증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공포일: 2004.11.25./2014년 법률 제69호에 의한 개정시행일: 2016.04.01.)
- 5 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하는 특정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종 특정 원산지증명서와 제2종 특정 원산지증명서가 활용될 수 있는 경제연계협정을 명시하고 있음(공포일: 2005.02.09./2021년 정령 제186호에 의한 개정시행일: 2022.01.01.)
- 6 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하는 특정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종 특정 원산지증명서와 제2종 특정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공포일: 2005.02.25./2021년 경제산업성령 제83호에 의한 개정시행일: 2022.01.01.)

원산지증명 제도	관련 법령
자기신고제도 (自己申告制度)	<p>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하는 신고 원산지 상품의 정보제공 등에 관한 법률<sup>7</sup> (経済連携協定に基づく申告原産品に係る情報の提供等に関する法律)</p>
	<p>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하는 신고 원산지 상품의 정보제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p>8</sup> (経済連携協定に基づく申告原産品に係る情報の提供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p>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sup>9</sup> (검색일: 2022.04.20.)

일본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해당하며, 수출자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산자로부터 서류 발급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전달받아야 한다.<sup>10</sup>

또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공회의소에 “기업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업등록은 크게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되며 상세 절차는, 일본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기업등록이 완료되면, 『전자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한 식별번호·비밀번호 통지서』가 신청 담당자 앞으로 우편으로 발송되며, 동 통지서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기업등록번호, 식별번호(ID·PW) 및 발급시스템 URL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향후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현재 일본에서 제3자 증명방식을 규정한 협정은 대표적으로 일-싱가포르 EPA, 일-멕시코 EPA, 일-인도네시아 EPA, 일-아세안 EPA, 일-필리핀 EPA, 일-스위스 EPA, 일-베트남

7 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하는 신고 원산지 상품의 정보제공 등에 관한 법률은 4개 장의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산지 신고와 관련된 규정의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공포일: 2014.11.19./2016년 법률 제108호에 의한 개정시행일: 2018.12.30.)

8 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하는 신고 원산지 상품의 정보제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산지 신고가 활용될 수 있는 경제연계협정을 명시하고 있음(공포일: 2014.12.12./2021년 정령 제163호에 의한 개정시행일: 2022.01.01.)

9 일본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홈페이지  
[https://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gensanchi/hourei.html](https://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trade_control/boekikanri/gensanchi/hourei.html)

10 국제원산지정보원(2021), RCEP 발효 대비 현행 FTA 이행절차 및 원산지결정기준 연구

EPA, 일-인도 EPA, 일-페루 EPA, 일-호주 EPA, RCEP 등이 있다.

한편 일-싱가포르 EP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상공회의소가 다른 협정들과 상이함에 따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 (2) 자율발급

### ①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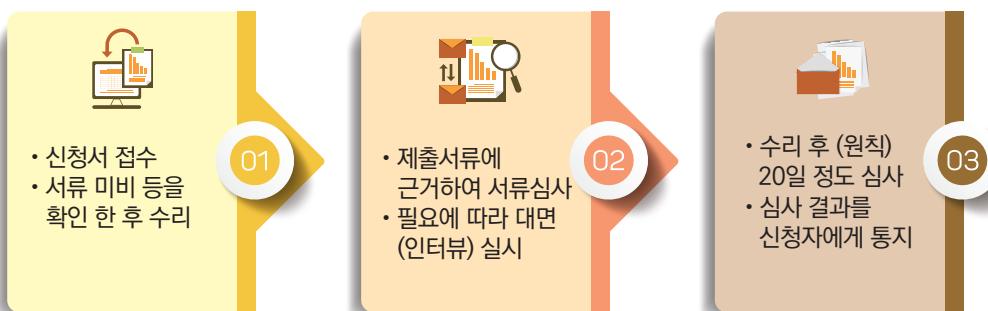
일본 인증수출자 제도의 주요 근거 법령은 [표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3자 증명제도와 동일한 『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하는 특정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법률』, 『경제연계 협정에 근거하는 특정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하는 특정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다.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경제 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으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이후 심사를 거쳐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정기적으로 받은 실적이 있어야 하며 사내책임자를 배치 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정보 제공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체제 등을 구축해야 한다. 이외에도 인증수출자가 원산지 신고서 작성 시 RCEP 협정문 부속서 3-나에 따라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원산지신고서 작성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인증수출자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에 따라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한다. 한편 일본의 경우 인증수출자 자격 획득시 등록면허세 제2조2에 의거 과세 의무를 진다.(9만엔)

[표 6] 일본 인증수출자 신청 절차



자료 : 경제산업성(2020), 경제연계협정(EPA) 인증수출자자기증명제도 신청·이용 안내서

## ② 자기신고제도 자율발급[수출자/생산자/수입자]

제3자증명제도와 인증수출자 제도의 경우 관련 주요 근거 법령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 났으나, 자기신고제도의 경우 앞서 언급한 법령 이외에 『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하는 신고 원산지 상품의 정보제공 등에 관한 법률』, 『경제연계협정에 근거하는 신고 원산지 상품의 정보제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존재한다.

일본의 특혜무역협정(EPA·FTA) 체결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일-호주 EPA를 시작으로 CPTPP, RCEP 등 여러 특혜무역협정에서 자기신고제도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자기신고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제3자 증명 제도와 다르게 수입자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

하여 특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기신고제도를 활용하여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 일본의 수출자·생산자·수입자 모두 인증 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방식과 동일하게 RCEP 협정문 부속서 3-나에 따라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정보들을 기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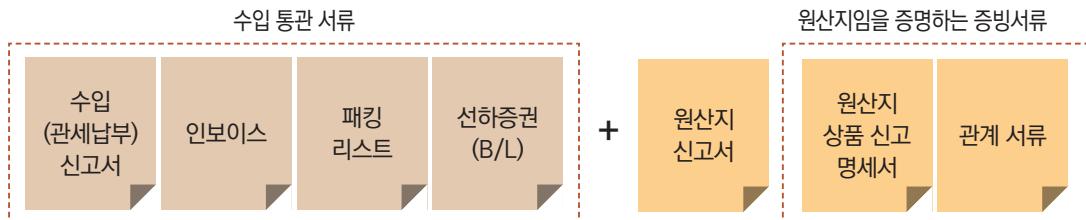
현재 일본에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자기신고제도와 수입자에 의한 자기신고제도를 구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수출자·생산자 자기신고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는 수출 당사국 및 수입당사국 양 당사국에서 해당 제도를 도입한 국가로 한정하고 있으며 RCEP 발효 시 동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국가는 일본, 호주 및 뉴질랜드이다.

한편 수입자 자기신고제도를 활용할 경우

### 부속서 3-나(원산지 신고서 최소 정보 요건)

- 가.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 나.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 라. 상품명 그리고 상품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6 단위)
- 마. 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번호 또는 수출자나 생산자의 식별번호
- 바. 고유 참조번호
- 사. 원산지 결정 기준
  - 아. 원산지 신고서에 명시된 상품이 제 3 장(원산지 규정)의 모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는 인증된 서명권자의 증명
  - 자. 제 2.6 조(관세 차별)에 언급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원산지 국가
  - 차. 본선인도가격(역내가치포함비율 원산지 결정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 카. 상품의 수량
- 타. 연결 원산지 신고서의 경우, 원산지 증명 원본의 참조번호, 발급일, 최초 수출당사자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원산지 국가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최초 수출 당사자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 [표 7] 자기신고제도(수입자) 활용 시 수입신고 서류



자료 : 재무성관세국·세관(2021), 자기신고제도 이용 안내서 RCEP

수입자는 물품의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할 충분한 정보 및 관련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일본에서 자기신고제도를 활용하여 특혜세율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수입신고 시 요구되는 통상적인 수입통관 서류 및 원산지 신고서 외에 원산지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일명 “원산지 상품 신고 명세서” 및 “관계 서류<sup>11</sup>”)의 제출도 요구된다.

원산지 상품 신고 명세서란 원산지신고서에 작성된 제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고, 관계 서류란 원산지신고명세서에 기재한 내용의 근거

서류를 의미한다. 관계 서류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 BOM), 제조공정도 등이 있다.



11 일부의 경우 자료 제출의 생략이 가능함(ex 체약국에서 완전히 얻을 수 있는 상품인 경우로 통관관계서류에 의해 완전생산품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표 8] 원산지 상품 신고 명세서 작성 예시

原産品申告明細書 (RCEP協定)		원산지 상품 신고 명세서
<p>1. 仕入書の番号及び日付 ABC01234 2022年3月20日</p> <p>2. 原産品申告書における產品の番号 1</p> <p>3. 產品の関税分類番号 2823.00</p> <p>4. 適用する原産性の基準 <input type="checkbox"/> WO <input checked="" type="checkbox"/> PE <input type="checkbox"/> CTC・ <input type="checkbox"/> RVC・ <input type="checkbox"/> CR <input type="checkbox"/> ACU <input type="checkbox"/> DMI</p> <p>5. RCEP原産国 シンガポール</p> <p>6. 上記4.で適用した原産性の基準を満たすこと及び上記5.のRCEP原産国との決定に関する説明 シンガポールのNEW CHEMICAL CO., LTD.が同国で製造した二酸化チタン（第2823.00号）を輸入します。同社は、シンガポール、オーストラリア、中国、ベトナムから材料を調達し、二酸化チタンを製造しています。 本品に使用する材料の一覧は別添のとおりです。このうち、②塩素（第28.01項）については、非原産の塩化ナトリウム水溶液（第25.01項）からイオン交換膜法により製造しており、品目別規則（CTH）を満たしていることからベトナムの原産品です。③酸素は、シンガポールにおいて空気を圧縮冷却し製造していることから、シンガポールの原産品です。 シンガポール、オーストラリア、中国、ベトナムからの材料は、一又は二以上の締約国からの原産材料であることから、本品は原産材料のみからなる產品としてシンガポールの原産品と認められます。また、シンガポールにおいてRCEP協定第2・6条5に規定する軽微な工程以外の生産工程が行われていることから、「RCEP原産国」はシンガポールです。 上記事実は別添の総部品表（材料一覧表）によって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す。</p>		
제4번란의 체크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 작성		
<p>7. 上記6.の説明に係る証拠書類の保有者 <input type="checkbox"/> 生産者, <input type="checkbox"/> 輸出者, <input checked="" type="checkbox"/> 輸入者</p> <p>8. その他の特記事項</p>		
제6번란의 작성한 설명과 관련된 증빙서류 보유자(保有者)		
<p>9. 作成者 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又は居所 税関商事株式会社 東京都港区海岸2-7-68 (代理人の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又は居所)</p>		
<p>作成日 2022年3月31日</p>		
<small>※WO: 完全生産品、PE: 原産材料のみから生産される產品、CTC: 関税分類変更基準、RVC: 付加価値基準（域内原産割合）、CR: 加工工程基準（化学反応）、ACU: 累積、DMI: 優少の非原産材料</small>		

자료 : 재무성관세국·세관(2021), 자기신고제도 이용 안내서 RCEP

[표 9] 관계 서류 예시

**品名** 二酸化チタン (税番 : 2823.00)

**品番** C T 2 0 1 2 - 1

**製造者** 材料① XXX Australia CO.,LTD. XXX ABC Road, XXX, Australia  
 材料② XXX Vietnam XXX CO.,LTD. XXX ABC Road, XXX, Vietnam  
 材料③ NEW CHEMICAL CO.,LTD. XXX ABC Road, XXX, Singapore  
 材料④ XXX China XXX ABC Road, XXX, China

**HS CODE** : 2823.00

**HS**

**재료명**

**제조(조달)국**

**비고**

	材料名	HS	製造(調達)国	備考
①	チタン鉱	26.14	オーストラリア	オーストラリアで採掘
②	塩素	28.01	ベトナム	ベトナムで製造
③	酸素	28.04	シンガポール	シンガポールで製造
④	コークス	27.04	中国	中国で採掘

**写真**

**사진(재료)**

材料①



材料②



材料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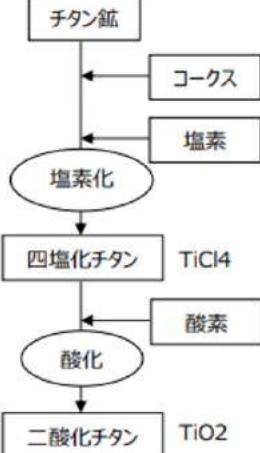


材料④



**製造工程**

**製造工程**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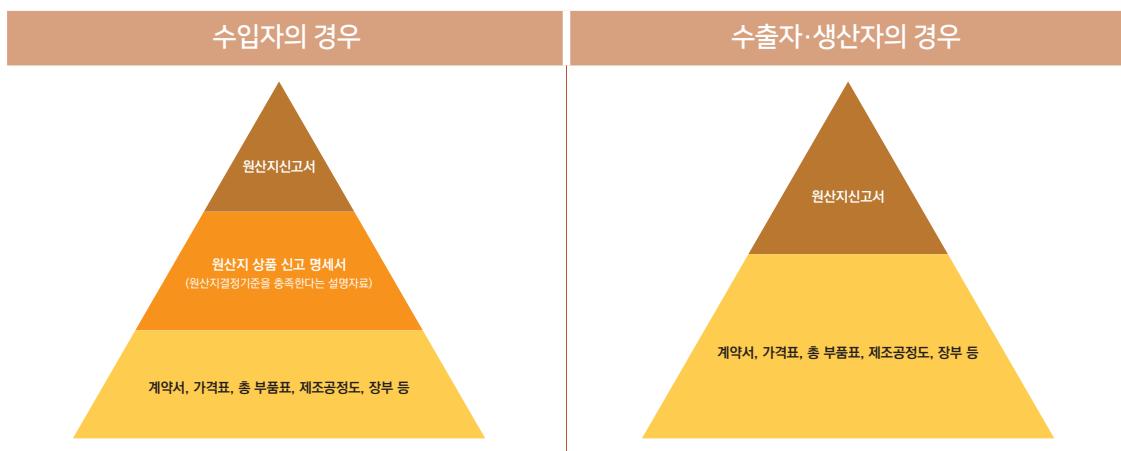
graph TD
    A[チタン鉱] --> B[塩素化]
    C[コークス] --> B
    D[塩素] --> B
    B --> E[四塩化チタン]
    E -- "TiCl4" --> F[酸化]
    G[酸素] --> F
    F --> H[二酸化チタン]
    H -- "TiO2" --> I
  
```

자료 : 재무성관세국·세관(2021), 자기신고제도 이용 안내서 RCEP

마지막으로 RCEP 협정문 제3.27조 및 일본 자국 내 법령에 의거 일본 수입자는 물품이 원산지 물품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5년간<sup>12</sup> 보관해야 하며,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 및 생산자는 해당 물품이 원산지 물품임을 증명해야 하는 모든 서류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

[표 10] 기록보관용 서류



자료 : 재무성관세국·세관(2021), 자기신고제도 이용 안내서 RCEP

## 4 맷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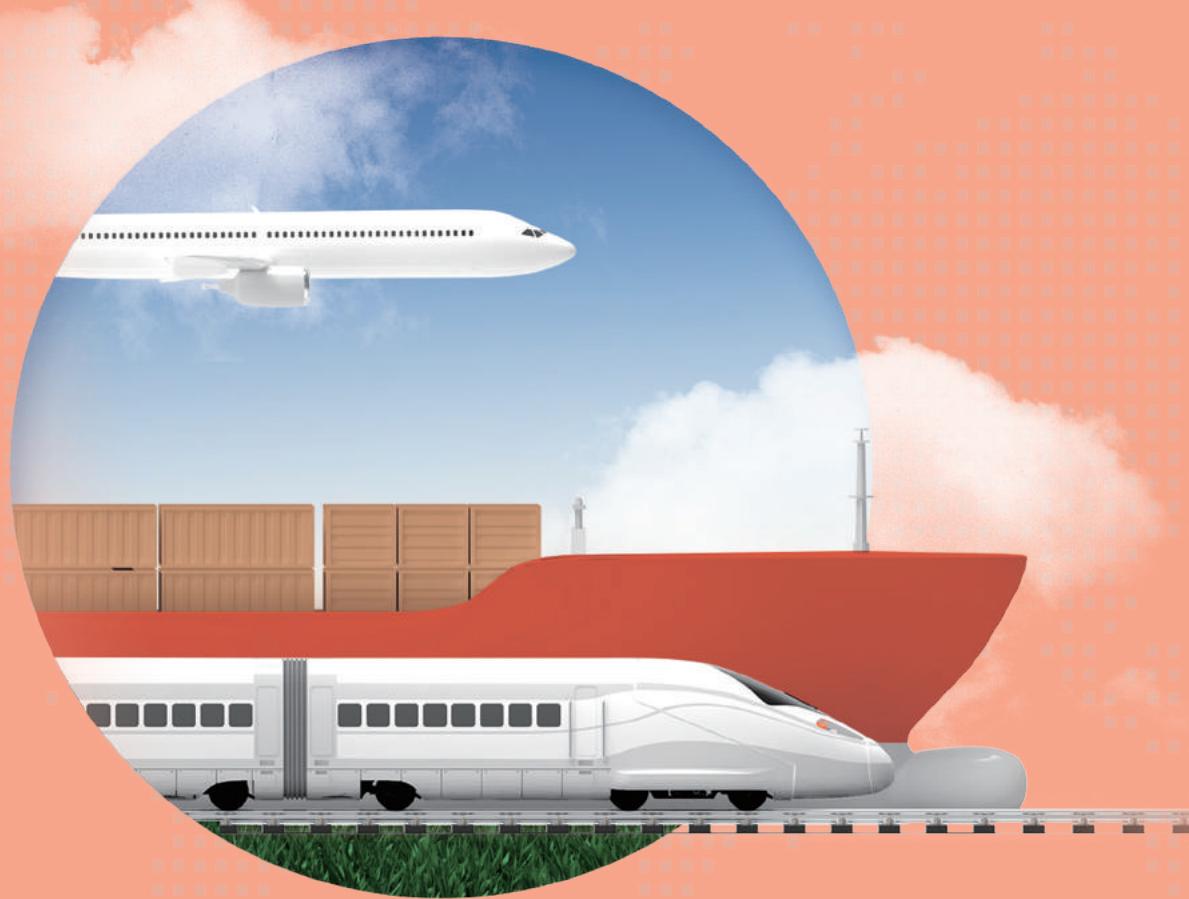
일본은 RCEP 당사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양자·다자간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이번 RCEP 체결을 통해 FTA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그 의미가 더욱더 크다.

이에 RCEP 발효 1주년을 맞아 일본을 중심으로 RCEP 이행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원산지증명제도 관련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RCEP 체결로 양국간 신교역·투자 활성화 기틀을 마련한 만큼 본 고의 내용들이 우리 수출기업들의 대일 교역시 이해를 돋고 RCEP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

12 수입자 보관서류와 관련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자기신고의 경우와 수입자에 의한 자기신고의 경우로 구분되는데, 모두 동일하게 5년간 서류 보관의 의무를 가진다. (단 일부 서류의 경우 보관의무 대상에서 제외됨)



FITA TRAD



# FTA 품목분류

## 특정물품 품목분류 결정의 정합성

원용택 | 공항 신성 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

REPORT

# 특정물품 품목분류 결정의 정합성



원용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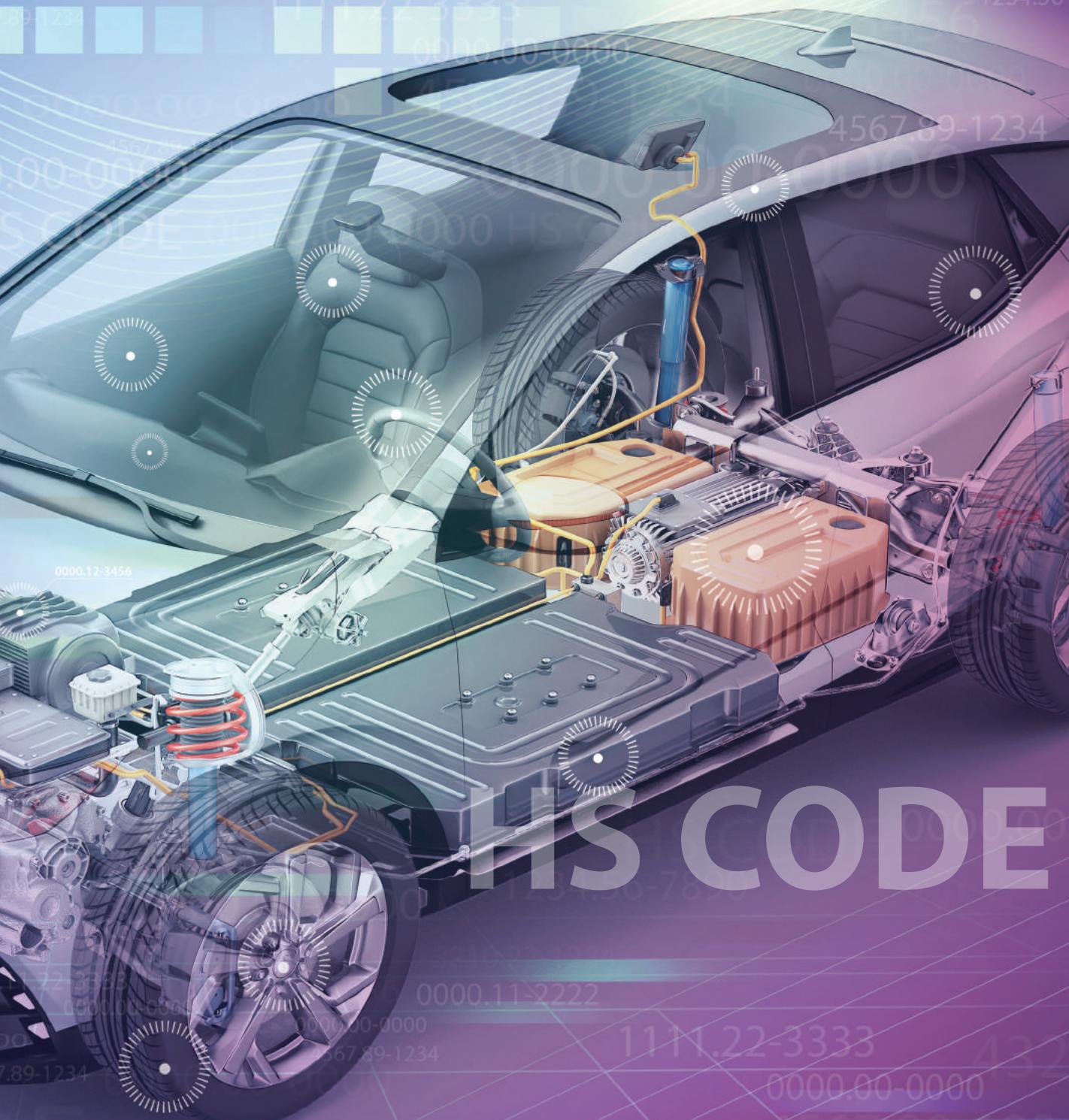
공항 신성 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

FTA 시대에는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신청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품목분류 신청된 물품의 자료가 미흡하거나 왜곡되어 특정물품 품목분류 결정의 정합성이 결여될 경우 수입자는 추징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게 되고, 수출물품의 경우에도 상대국에서 세율 결정의 단초가 되거나 통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신청자는 물품의 정보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고, 세관 검사직원들은 물품의 정보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정제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결정기관은 그 결과를 HS코드 체계에 접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과제일 것이다.

따라서 제시된 물품을 확정하고 제출된 물품설명서에 기재된 데이터의 완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특정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된다면 그 결정은 신뢰와 투명성이 담보된 정합성을 갖추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 1 서론

정합성의 사전적 의미는 공리적인 논리체계에서 논리적 모순이 없는 것, 즉 모순된 명제를 이끌어 낼 수 없는 성질이나 상태를 말한다.

정합성은 데이터의 완전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우연 또는 고의에 의한 데이터의 파괴, 변경, 또는 상실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스템에서 물리적 부품간의 상호 용량이 잘 맞아 전체 시스템을 극대화할 수 있을 때, 즉 자물쇠를 열려면 많은 열쇠 중에서 구멍에 딱 맞는 열쇠를 꽂아서 돌리면 문이 열리는 듯이 그 자물쇠의 구멍과 열쇠가 딱 들어맞는 것을 정합성이라고 할 수 있다.

품목분류란 국가간 거래되는 상품에 대하여 국제 공통의 코드체계(HS협약,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품명(Description)과 코드번호(Code number)를 결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특정물품의 코드번호가 결정되면 그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 무역통계, 원산지확인, 수출입 제한사항 등이 결정되고, 특히 FTA가 활성화된 현재 결정된 HS 코드번호는 핵심 키 고리로 출발점이 된다.

물품의 HS 코드번호는 관세율 협상, 원산지결정기준의 기본이 될 뿐만 아니라, 원재료나 부품의 HS 코드번호까지 확인해야 하는 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현재 발효된 21개 FTA는 각각의 협정별로 HS협약 개정내용 중 2007, 2012, 2017, 2022버전 중에서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물품의 코드번호 결정(이하 “품목분류”라 한다)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 2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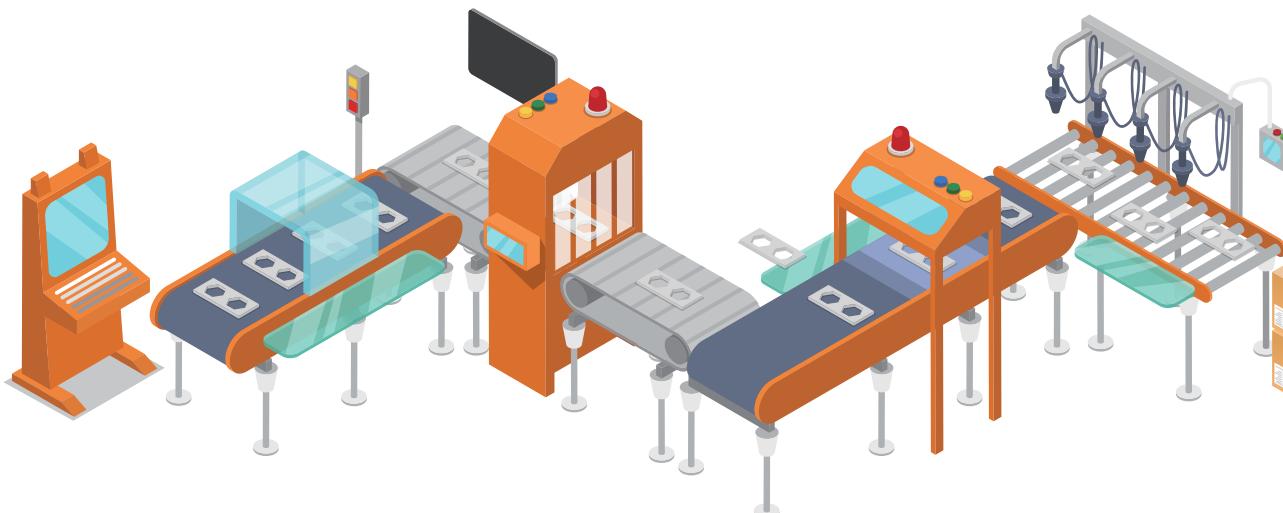
## 1. 품목분류의 처리 절차

## 1) 개요

품목분류를 위한 기초자료로 국제규범인 HS 협약이 있고, 국내법으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와 기획재정부 고시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가 있으며, 관세청 고시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HS 품목분류 의견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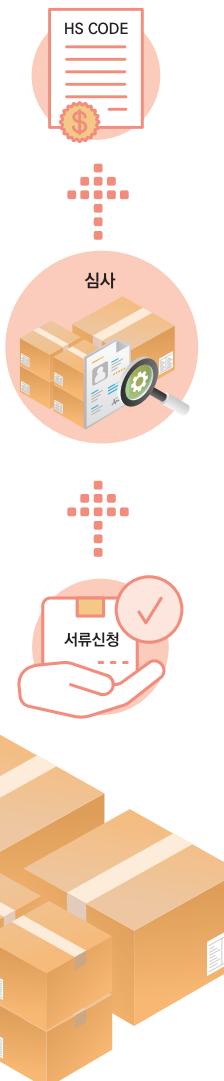
대부분 물품이 HS 품목분류표상 2개 이상의 호 또는 소호에 분류될 소지가 많고 품목분류표상 게기된 물품의 명칭이나 각주 내용은 명백하게 보이나, 각 나라의 문화나 관습 등에 따라 상품의 정의 설정이 다르고 국가별 관세율 적용 문제 등으로 서로 다른호에 분류할 수 있어 품목분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의 상품은 반드시 하나의 호 · 소호에 분류한다'는 일의성 분류원칙이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품목분류 해석에 관한 통칙'이 있으며 이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분류해야 한다는 원칙이 HS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우선 그 물품이 단일물품인가, 복합물품인가 또는 여러 가지 재료로 구성된 혼합물품인가를 확인하여 물품의 품명과 성상확인 과정을 거친 다음 호, 소호에 게기된 품명의 범주에 해당되면 그 코드번호에 분류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기능, 주용도, 주요특성에 따라 코드번호를 검토해야 한다.



## 2) 품목분류의 신청

첫째는 사전심사 신청에 의한 경우이다. 특정물품을 수출입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당해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받는 제도로서 예상하지 못한 과다한 세액부담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위험과 요건 미비 등의 법률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관세법 제86조에 사전심사 신청, 신청인의 통지의무, 고시 또는 공표의무, 통지내용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의무, 수수료 납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산물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지 않아 성분 조성에 일관성이 없거나, 냉장 냉동 등 저장방법 및 운송수단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물품,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이 곤란한 물품, 세관조사나 불복청구 절차가 진행중인 물품 등은 반려된다.

둘째로 화주가 민원서류로 질의한 건과 불복청구 심사나 소송과정에서 이를 심사하는 기관이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에 질의하는 경우로써 주로 기존 품목분류 결정에 의문이 있거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물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누락된 경우 등이 많다.

셋째로 세관으로부터 질의를 받아서 회신하는 유권해석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통관과정에서 세율차가 큰 사전세액심사나 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와 과세적부심사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품목분류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이다.

### 3)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

우선 품목분류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물품 파악의 과정을 거친다. 제시된 물품의 설명서 상 품명, 모델, 규격, 재료나 구성요소, 용도, 기능, 작동원리와 제조공정 등을 검토하여 HS 품목분류표상의 적용할 품명의 범위(품목코드)를 확정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따라서 미흡한 사항이나 추가할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보정을 요구하거나 관련 문헌 조사, 현장확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물품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이것이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다음은 자물쇠에 대한 사항으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제시된 물품의 코드를 찾기 위해서는 “통칙”과 “주”를 참고하여 열쇠가 들어갈 만한 2~3개의 품명(품목코드)을 우선 설정하고, 관세율표 해설서와 분류의견서 그리고 기존의 국내외 분류사례 등을 검토하여 물품에 대한 쟁점 의견서를 작성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품목분류를 결정한다.

첫째로 관세율표 및 해설서에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동일·유사 품목 결정 사례가 있는 경우와 세율(환급액)차이가 없는 경우 등은 관세평가분류원 자체에서 직권으로 결정하고, 타 기관(국세 심판원이나 법원 등)이나 세관에서 질의한 경우 등 특별한 쟁점이 있는 경우는 관세평가분류원 협의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둘째로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에서 품목분류를 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물품과 세계관세기구(WCO)로부터 품목 분류체계의 변경, 개별 물품의 품목 분류 변경 또는 해설서 수정 등으로 인한 품목분류가 달라지는 물품,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고시를 요하는 물품과 기타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은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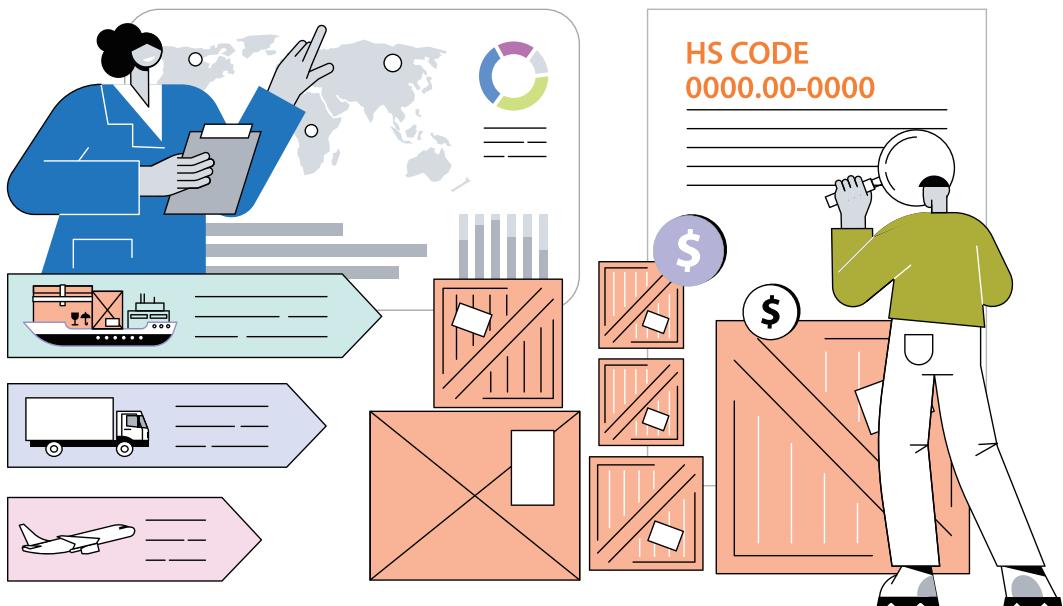
#### 4) 품목분류의 적용

이런 과정으로 결정된 품목분류는 신고인의 수출입신고시 물품의 신고항목 코드로 기재되어 관세율, 수출입제한여부, 원산지확인, 무역통계 등의 결정요소가 되는 것으로 신고인과 관세관청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사전심사 내용이 고시된 경우는 앞으로 신고할 물품에 대하여 관세관청이나 모든 신고인은 의무적으로 이를 적용해야 한다. 신청인이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고시하지 아니하고 공문으로 통보된 경우에는 과세관청과 사전 심사를 신청한 신청인에게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당해 사전심사의 유효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므로 3년 이내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사전심사의 내용이





3년이 경과한 경우와 제3자가 고시나 공문형태 등을 참조하여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다.

유권해석, 질의회신한 경우 공문으로 통보되고 관세관청은 경정이라는 과정을 거쳐 추징 또는 환급이라는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신청인은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처분에 추가로 불복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2. 품목분류 결정의 정합성을 해치는 원인

### 1) 물품의 파악의 어려움과 관세율의 차이

첫째는 과학의 발전과 IT 관련 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관련 제품이 많이 생산되고 기존 상품의 경우에도 현실에 맞춰 기능이 변화되는 등 물품이 복합화, 다 기능화됨에 따라 물품 파악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상품의 주기가 짧은 경우 신상품이 출현하면 외형이 유사하여도 품목분류는 달라질 수 있다.



둘째는 농산물은 혼합비율이나 가공단계별, 축·수산물은 가공이나 보관상태별로 그리고 IT 제품 등 첨단 신상품은 기본세율과 양허세율 간의 차이가 있으며, FTA가 활성화됨에 따라 동일한 물품이라도 국가별 또는 원산지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진다.

## 2) 신청자들의 의식

첫째는 대부분의 화주들이 수입신고시 품목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신고를 하거나 일부는 사전 심사 신청시 경합 품목분류 중 저세율 쪽으로 품목분류를 결정 받기 위해 물품 설명서의 중요 부분을 누락하거나 유사물품의 정보 등을 기재하여 비용을 절약(절세)하려는 경향이 있고, 둘째는 반복 수입하는 경우 중간에 품목분류가 잘못 신고되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수정하지 않고 있다가 과세당국이 이를 심사하여 일괄 추징을 하게 되고 고액을 추징을 당한 업체는 자금압박에 시달릴 수 밖에 없으므로 불복청구 등 민원마찰의 원인이 된다.

### 3) 결정과정상 발생사항

첫째는 품목분류를 검토하는 직원들이 물품 파악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 등이 필요하나, 서면이나 사진만으로 사전 심사를 신청하면 주어진 자료와 인터넷이나 통화로만 확인을 하고, 인력부족이나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현장이나 생산과 관련된 기술자들과의 면담 등 대면 확인은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는 품목분류 결정에 있어서도 방법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인 인사이동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 장기적 근속자 배치를 고려해볼 일이다.





### 3. 품목분류 결정의 정합성

#### 1) 업체측

#####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인터넷의 발달로 물품 정보를 수시로 검색할 수 있는 시대에는 내가 수출입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함과 신고시 낮은 세율에 해당하는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절세를 하겠다는 인식을 버리고 수출입신고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나 질의회신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업체는 사전심사 신청이나 질의회신시 물품설명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제시된 물품의 품명(거래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어야 하며, 모델, 규격, 재료나 구성요소, 용도, 기능, 작동원리와 제조공정 등의 데이터와 제출서류와의 연결도 명확(사례: 붙임)하게 표시해 주어야 한다.

신상품의 경우 물품 설명서의 제조공정 등 일부 데이터는 수출입물품의 제조자 또는 수출자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제조자의 생산기술 노하우 유출을 우려하여 제조공정 등의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신청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품목분류에 전문성이 있는 관세사의 상담을 받거나 관세청 홈페이지상의 HS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동종업체가 취급하는 물품의 품목분류 정보를 확인하면,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2) 품목분류 결정기관 및 과세당국(세관)

물품을 심사하는 직원과 품목분류 결정직원의 업무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농수축산물과 같이 유사물품간 세율차가 큰 물품이나 품목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물품은 5년마다 개정되는 HS 협약 결과를 반영하여 분류기준을 명료화하는 등 분류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물품을 심사는 세관의 수출입물품 검사직원과 협업검사 센터 직원들에게 제시된 물품의 설명서상 데이터인 거래품명, 재료나 구성요소, 용도, 기능, 작동원리와 제조공정 등 작성된 데이터의 정확성과 제출된 서류와의 연계성을 확인시키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문헌조사, 시장조사를 실시한 후 품명의 범위를 확정하여 결정기관에 제시토록 한다.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기관은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장기 근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심사 결과 제시한 품명 범위 중 HS 품목 분류표에 게기된 후, 소호 중 2~3개의 쟁점으로 좁혀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세율표 해설서와 국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인이 아닌 집단토론을 통해 복수로 결정하게 되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청자가 물품설명서의 기재사항을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추가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와 직원들이 신청자(업체 또는 관세사)와 유착되어 품목분류 결정에 오류가 확인된 경우는



조사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동 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후 불성실 신청자들을 별도 관리하는 등 조치를 엄격히 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은 과거 5년전까지 수입된 물품에 적용하여 추징하거나 환급을 진행하게 되는데, 수입신고된 물품과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과 품목분류 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의 보관, 반환, 폐기 등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3 결론

FTA 시대에는 수입물품 뿐만 아니라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신청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품목분류 신청된 물품의 자료가 미흡하거나 왜곡되어 특정물품 품목분류 결정의 정합성이 결여될 경우 수입자는 추징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게 되고, 수출물품의 경우에도 상대국에서 세율 결정의 단초가 되거나 통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특정물품의 품목분류 신청자는 물품의 정보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고, 세관의 수출입물을 검사하는 직원들은 물품의 정보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정제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결정기관은 그 결과를 HS코드 체계에 접목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과제일 것이다.

또한, 품목분류 결정기관은 신청자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물품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엄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품목분류 결정에 오류나 부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행정적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이를 활용하는 당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국세심판원의 심판이나 소송과정에서 보면 품목분류 결정은 행정법상 확인적 행정행위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이는 대외무역법이나 FTA특례법 등 관세법 이외의 법 적용시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제시된 물품을 확정하고 제출된 물품설명서에 기재된 데이터의 완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특정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된다면 그 결정은 신뢰와 투명성이 담보된 정합성을 갖추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 품목분류의 신청 사례

※ 이 물품설명서는 검토자가 신청물품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물품설명서 작성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 기계류 작성 예시

## 물품설명서

### 1. 품명(모델, 규격 등 포함)

- INVOICE 품명 : USB DATA CABLE OR USB CHARGER FOR MOBILE PHONE
- 모델명 : NX-000XXA

### 2. 구조 및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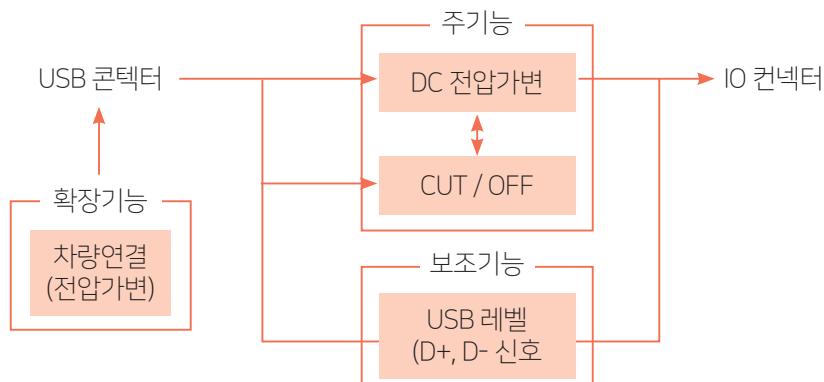
- 물품형태



- 요소 및 기능

- ① USB 콘넥터 : 컴퓨터의 USB PORT와 연결하기 위한 접속단자
  - ② 전원공급 확장케이블 : USB PORT를 통하여 들어온 전원을 핸드폰에 연결하기 위한 케이블
  - ③ PWB B/D : IO 컨넥터 내부에 장착되는 PCB BOARD(충전 IC, 저항, 콘덴서)
  - ④ IO 컨넥터 : 휴대폰과 연결하는 단자
  - ⑤ 시가잭 : 차량에서 전원을 공급받을 때 연결하는 단자
- 블럭다이어그램(흐름도)

주 : 블럭다이아그램은 제품의 내부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것으로 물품별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능, 내부구성 요소 등에 따라 세번이 달라지는 경우와 제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작성합니다.



- 재질

구 분	재질
케이블	SR-PVC, TINNED STRANDED COPPER
USB	니켈, 구리, 주석
IO 컨넥터	PC

### 3. 기능 및 용도

- 기능

- 컴퓨터의 USB PORT에 접속과 동시에 DC 5V가 공급된다.
- IO 컨넥터 내부의 반도체가 DC 5V의 전원을 DC 4.2V로 가변시켜 휴대폰에 공급한다.

- 이때 최대 충전전류는 IO 커넥터 내부에 전류를 조정하여 500mA를 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충전시에는 적색 점등 상태에서만 충전시 적색 점등이 꺼지며 녹색 점등 상태로 변화하고, 휴대폰의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CUT/OFF 회로가 내장되어 있다.

- 또한, USB PORT를 통하여 들어온 D+, D- 신호를 받아들여 데이터 교류가 가능토록 휴대폰과 컴퓨터 간의 링크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기능이 있다.

• 용도

① 핸드폰 충전

휴대폰의 배터리 방전시 사무실이나 차량에서 USB PORT를 통하여 외부전원 DC 5V의 전원을 받아 DC 4.2V로 전압 변환 후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

② 핸드폰과 컴퓨터간의 상호 DATA 교환

휴대폰과 컴퓨터 간의 데이터 교류 가능토록 연결하는 기능

#### 4. 제조공정

- CABLE 몰딩공정 : USB PORT와 CABLE간 연결 및 고정하는 공정
- PCB SMT 공정 : PCB에 SMD 반도체를 자동으로 ASS'Y하는 공정
- PCB ASS'Y CUTTING 공정 : PWB BOARD를 각각으로 잘라내는 공정
- IO 커넥터 삽입공정 : PWB BOARD에 IO 커넥터를 고정하는 공정
- IO 납땜 공정 : 고정된 IO 커넥터를 납땜하는 공정
- CABLE 납땜 공정 : PWB BOARD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공정
- CASE 조립공정 : IO 커넥터를 조립하는 공정

#### 5. 제출서류목록

1. 사진 4매(전체, USB 콘넥터, IO 커넥터, 시가지)
2. 제조자 카달로그 1부. 끝.

#### 6. 신청인의 분류의견 : 8504.40-3010

주 : 사진은 물품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며, 현품이나 카달로그에 사진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FTATRAD



# 해외통관애로

## 인도네시아 통상 및 통관환경

- 인도네시아 수입인증 제도를 중심으로 -

이민희 | PT. KGL INDONESIA 대리

E REPORT

# 인도네시아 통상 및 통관환경

-인도네시아 수입인증 제도를 중심으로-



이민희

PT. KGL INDONESIA 대리

최근에는 우리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과 맞물려 인도네시아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Sabar itu subur(참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기다림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와는 상충되어 인도네시아 진입을 단기적으로 성과만 바라보고 급하게 접근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언어와 문화 등 나라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충분한 자본금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수입이 특히 까다로운 나라이기에 사전에 모든 서류와 품목을 확인하여 통관 비용과 시간을 최대한 줄여 화물 쉽백(Ship back) 또는 폐기 리스크를 없애는 것을 추천한다.

## 1 들어가며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 자원 부국, 젊은 노동력, GDP 1.1조 달러, 연 5% 경제 성장률을 자랑하는 나라이다. 현대자동차, 한국타이어, 포스코, 롯데케미컬, 삼성전자, LG전자, 미원, 코린도 등 이미 많은 한국기업들이 먹거리를 찾아 인도네시아로 들어오고 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한-인도네시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비준되면서 대표적으로 철강, 플라스틱류, 자동차 부품류의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되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와의 시장 개방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수출 여건을 개선하고 무역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수/출입 통관 시 예상치 못한 수입규제와 높은 물류 비용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도네시아 수입통관 절차 및 대표적인 수입규제(BPOM, SNI, 할랄 인증)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해당 인증은 인도네시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매년 미국 NTE(National trade estimate) 보고서에도 해당 인증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 2 인도네시아 수입통관절차

### ● 인도네시아 수입통관 절차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수입자와 수입물품의 위험도에 따라 크게 3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심사하고 있다.

Priority Channel(=MITA ; Mitra Utama)은 관세청 평가에 의한 신용도 최상위 업체에 부여되는 등급으로 물품검사 및 서류심사가

면제되고 관세 사후납부 및 신속통관이 가능하다.

Green Channel은 수입제세 납부 후 통관 서류 및 화물검사 없이 통관된다. Red Channel은 수입제세 납부 후 통관서류 및 화물 검사 완료 후 통관된다.

## 3 인도네시아 수입인증제도

### 1. BPOM 인증(식약청 인증)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의약품, 의약외품, 전통의약품,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 식품, 화장품은 인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품목으로 수입하기 전에 BPOM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인증을 받아야 한다.

무슬림 인구가 87% 이상인 인도네시아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며 수입업자가 BPOM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식약청은 이미 유통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위반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통상 화장품, 식품의 인증이 2개월~1년 사이로 가능한 반면, 의약품 전통의약품 및 건강보조 제품의 경우 길면 2년까지도 소요된다. 제품의 식약청 등록은 <https://new-aero.pom.go.id> (의약품), <https://asrot.pom.go.id/asrot/> (전통의약품 및 건강식품), <https://e-reg.pom.go.id> (식품), <https://notifkos.pom.go.id> (화장품)을 통해 가능하다.

## 2. SNI 인증

SNI란 Standar Nasional Indonesia의 약자로 제품의 규격과 생산 과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규격 인증의 줄임말로, 인도네시아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여 내수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국가표준/규격 취득이 의무화된 SNI Mandatory(통관 강제인증) 제품의 경우, 수입 시 SNI 인증서를 첨부해야 통관할 수 있다. 인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을 폐기 처리하거나 재수출해야 한다.

SNI 준비 서류가 모두 갖춰졌다고 가정했을 때



걸리는 기간은 통상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내외가 소요될 수 있다. SNI 인증 비용에는 각 품목별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1만 달러에 많게는 3만 달러까지도 소요된다.

### 3. 할랄(HALAL) 인증

할랄(HALAL)은 아랍어로 '허가된, 합법적'이란 뜻(반대어:Haram)이며, 할랄 제품이란 이슬람율법(Syariah)에 따라 허가된 제품을 의미한다. 할랄제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 혈액, 인체장기 등이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인증에 걸리는 기간은 공식적으로 45일 정도이나 실제로는 관련 기관에 신청 즉시 심사 및 계약 승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훨씬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신할랄 인증제도가 시행되어 인도네시아 내 유통 판매되는 모든 식품, 화장품, 의약품에 할랄 인증 여부의 라벨링 표기 의무화 제도를 시행하며 미인증 사항 또는 강제표기라고 한다.

품목별 유예기간(식품 5년, 화장품 7년, 의약품 10년)을 설정하는 것으로 정부가 발표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할랄 제품은 반드시 할랄 인증 마크를, 할랄이 아는 제품은 비할랄 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2020년 4월 20일부로 LPPO(M 할랄 심사 기관)에서는 할랄 인증의 명칭이 Certification halal에서 halal Decree로 명칭 변경하여 발급하고 있다.

할랄 인증서는 할랄 보장법에 따라 유효기간이 4년이다.

#### ● 할랄 인증 로고



##### 구 할랄로고

2021년 39호 규정에 따르면  
MUI 할랄로고 기준 사용자는  
최대 2026년 2월까지 사용 가능



##### 신 할랄로고

BPJPH 규정 2022년 40호 규정에서  
신 할랄 로고 발표, 2023년 3월 1일부  
터 신 로고 사용적용

## 4

## 마무리하며

이렇게 인도네시아 수입통관절차와 수입규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최근에는 우리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과 맞물려 인도네시아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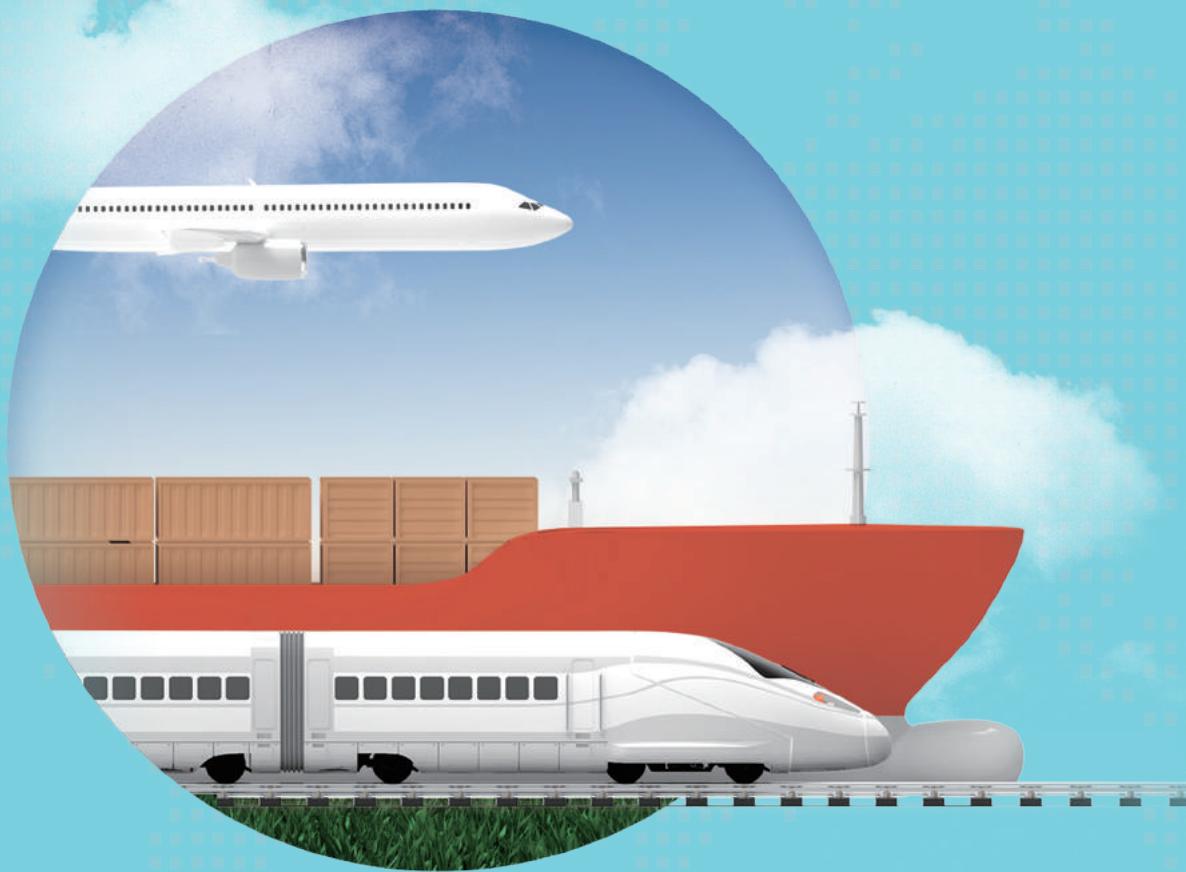
인도네시아에는 “Sabar itu subur(참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기다림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와는 상충되어 인도네시아 진입을 단기적으로 성과만 바라보고 급하게 접근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언어와 문화 등 나라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충분한 자본금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정부 규제, 결제 인프라 부족과 완전하지 않은 물류 환경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배로 들지만, 점차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 이미 많은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하여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수입이 특히 까다로운 나라이기에 사전에 모든 서류와 품목을 확인하여 통관 비용과 시간을 최대한 줄여 화물 쉽백(Ship back)\* 또는 폐기 리스크를 없애는 것을 추천한다.

\* 수출 보낸 물품이 수입항에서 통관되지 않아 다시 수출국으로 반송하는 것





ETATRAD



# FTA 100% 활용하기

국제통상환경의 급변과 중소기업의 기회요인

박정준 | 강남대학교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E REPORT

# 국제통상환경의 급변과 중소기업의 기회요인<sup>1</sup>



박정준  
강남대학교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위기에 대한 직면(Confronting the Crisis).<sup>2</sup>

보통 선진국 중심의 국제기구로 잘 알려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3년 세계 경제를 전망하며 지난 해 11월 발표한 칼럼의 제목이다. 짧지만 짙은 이 한 문장은 과거 몇 년간 패권경쟁, 팬데믹, 전쟁 등으로 누적되어 온 여러 문제요인들이 빚어낸 작금의 도전적 현실을 잘 묘사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축구 해설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른바 위기와 기회의 공존은 비단 스포츠에 국한된 성격의 것이 아니다.

국제통상환경이 급변하며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놓쳐서는 안 될 기회요인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방증이다.

1. 본 고는 박정준(2022), “최근 FTA규범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무역 참여 지원 방향성에 대한 연구”, 통상법무정책, 19-38을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 작성되었음.

2. <https://www.oecd.org/economic-outlook/november-2022/>.

##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세계경제

위에서 언급한 칼럼에서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성장의 둔화, 물가상승을 지목했다.<sup>3</sup> 국가경제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8%가 에너지에 쓰이고 물가 상승률은 7%에 가까워지는 반면 세계경제 성장은 2%대 초반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sup>4</sup>

다른 주요 국제경제기구들의 분석도 특별히 다르지 않은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 은행(World Bank) 역시 각각 2.7%, 1.7%

성장전망을 내놓았고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GFC) 당시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이 본격화된 2020년을 제외하면 최근 20년 간 가장 낮은 수치이다.<sup>5</sup>

먼저 미국과 중국 사이 패권경쟁 속에 국가들은 수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면서 세계경제는 공격적인 개방과 협력 보다는 수비적인 폐쇄와 보호의 정책노선으로 선회해 스스로 성장에 제동을 걸었다.



3 Ibid.

4 Ibid.

5 광장 국제통상연구원(2023), “2023년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전망과 대응”, Issue Brief, 2.

G2 대립이 본격화되면서 시장개방보다는 일방적 관세인상과 다양한 무역구제 및 수입 규제조치들이 확산됐고 자유무역 정신은 실종되고 말았다.

양국 간 거리두기가 심화 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중과 생산 또는 소비, 수출이나 수입, 어떤 형태로든 거래 관계를 유지해 온 많은 기업들도 큰 혼란을 겪게 됐다.

올해로 벌써 4년차를 맞이한 Covid-19은 단순 보건이슈를 뛰어넘어 세계경제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를 가속화 했다. 국경봉쇄(lockdown)가 제일 우선의

예방조치로 인식되면서 인적, 물적 구분 없이 자원의 국경 넘기가 어려워졌다.

미-중 갈등으로부터 이어져 오던 글로벌가치 사슬(GVC)에 대한 회의감은 한층 더 깊어졌고 동시에 비대면 활동의 중요성과 가능성이 같이 커지면서 디지털 경제통상의 시대가 본격화 되기 시작했다.

사태 초반에는 Covid-19 대응에 필수적인 마스크와 백신 공급에 있어 각종 무역 마찰도 경험했다. 각국 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시장에 화폐를 투입했고 경기침체를 피하기 위해 분전했다.





벌써 1년도 더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설상가상이었다. 글로벌 에너지 및 식량 공장 역할의 중책을 맡아온 두 국가 간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다시 한 번 공급망 차질이 빚어 지면서 해당 품목의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불가피했다.<sup>6</sup> 물자 생산에 기본요소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와 식량의 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물가상승이 동반된 것은 필연적이다.

미국을 필두로 각국 정부가 금리인상으로 대응하면서 세계경제의 고통은 극에 달하게 되는데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 합산으로 도출되는 '고통지수(Misery Index)'의 객관적인 지표가 이를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안타깝지만 받아들여야 할 점은 국제경제 통상환경이 처한 이 같은 현실이 가까운 시일 내 종결되거나 회복세로 전환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미-중 사이 갈등의 골은 팬데믹, 러-우 전쟁을 거치면서 더 깊어졌고 도무지 경제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 주요국 금리

6 Ibid.

인상과 이에 따른 경제적 난항 역시 올해에도 당분간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가별 정부의 정치경제적 셈법이 다소 복잡해지는 가운데 기업들의 경영전략 역시 재편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기업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은 다소 비교열위적 상황에 놓일 것인데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중소

기업과 관련되고 도움이 될 만한 통상규범들이 새롭지만 다소 무게감 있게 도입되고 있어 주목할 가치가 있다.

특히 전술한 것과 같이 GVC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중소 기업들의 적절한 판단과 결정은 국제 통상환경 급변의 상황 속에 새로운 기회요인과 만나 예상 외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 국내외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위상과 역할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은 규모가 큰 기업이 주도하고 여기에 협력하는 중소기업들이 후방을 지원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져 왔음을 완전히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이러한 경영전략이 무시할 수 없는 성과를 냈음도 사실이다. 더불어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해당하는 현상도 아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최근 몇 가지 주요 이유를 바탕으로 GVC에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기업들에게는 그 규모를 가릴 것 없이 기존의 거래선을 재편하고 신규 투자처를 고민해야

하는 수고가 따르겠지만 한 편으로는 새로운 국가, 기업들과의 거래 관계가 생성되게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수익 창출의 기회가 빠르게 형성되어 가는 분위기인 셈인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현재를 기회로 봐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중소기업이 국가의 경제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이러한 주장은 더욱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데, OECD 회원국 기준으로만 봐도 중소기업들은 국내 기업 규모 비중에서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sup>7</sup>

7 OECD (2018), “Fostering greater SME participation in a globally integrated economy”, DISCUSSION PAPER: SME Ministerial Conference, 5.

동시에 국가 전체 고용의 2/3 정도를 창출해내기도 한다.<sup>8</sup> 다시 말해 중소기업들의 경영 활성화와 수익확대는 일자리 창출 등 곧 국가 경제 전반에 그만큼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는 의미가 된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수출 활동 참여 정도가 불과 20~40%에 머물러 있다는 OECD 회원국 통계에서 나타나듯<sup>9</sup>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최근 GVC재편의 국제통상적 상황에서 새로운 무역활동 기회를 포착해내고 적극 참여하는 것은 중요하다.<sup>10</sup>

우리 중소기업으로 그 범위를 한정해도 무역 활동에 있어 대기업 중심의 상위 10대 기업에 대한 수출집중도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sup>11</sup>

참고로 유럽연합 (EU)의 경우, 전체 수출기업 중 중소 기업의 비율이 무려 87% 수준으로 매우 인상적이다.<sup>12</sup> 다양한 시각에서 중소기업의 무역참여는 절필한 상황이며 그 적기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8 Ibid., 6.

9 Ibid.

10 박정준(2022), “최근 FTA규범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무역 참여 지원 방향성에 대한 연구”, 통상법무정책, 20-21.

11 정철 외(2018), 사회통합형 통상정책 연구, 15.

12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21/february/tradoc\\_159428.pdf](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21/february/tradoc_159428.pdf).

## FTA 내 중소기업 관련 규범의 주요 내용

현 시점에 중요한 대목은 과연 FTA를 위시한 국제통상규범에서 중소기업의 무역참여를 지원할 만한 내용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2년 12월 기준 58개국과 20개 FTA를 발효한<sup>13</sup> 우리나라 이지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제외한다면 어떤 협정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챕터(chapter)를 도입하지는 않았다.<sup>14</sup>

그러나 선진 통상규범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나 우리 역시 참여 의사를 밝힌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에는 단독의 중소기업 관련 챕터들이 도입되어 있어 앞으로 중소기업의 무역참여를 지원할 국제통상규범의 청사진을 일정 부분 미리 확인해 볼 수가 있다.<sup>15</sup>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 역시 앞으로의 FTA 협상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통상규범들을 적극 추진, 도입할 필요가 있고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도 국제통상환경의 급변에 따른 새로운 기회요인에 이를 적극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RCEP을 포함하여 CPTPP와 USMCA 등 최근 주요 메가-FTA를 분석해보면 중소기업들의 무역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과 '방법'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명문화하고 있다.

FTA 내에서 중소기업과 관련해 먼저 '내용'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은 바로 정보의 공유이다.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특혜관세율, 원산지규정 및 절차, 무역이나 투자와 관련된 법규정, 사업 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이 약할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sup>16</sup>

13 <https://www.fta.go.kr/main/>.

참고로 2023년 3월말 기준 우리나라는 59개국과 21개의 FTA를 발효하였음.

14 박정준(2022), “최근 FTA규범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무역 참여 지원 방향성에 대한 연구”, 통상법무정책, 21.

15 Ibid., 22.

16 Ibid., 22-24.

이미 수많은 FTA들마다 각각 차별화된 관세율, 규정, 절차 등으로 복잡성이 높아지고 특정 국가와의 다층적 협정으로 이른바 '스파게티 보울효과(Spaghetti Bowl Effect)'가 심해진 것을 고려하면 FTA 참여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자국 중소기업들의 협정활용률과 무역참여률을 동시에 높이기 위하여 정보 공유를 규범화 한 것은 매우 타당한 것이다.<sup>17</sup> 예를 들어 RCEP의 경우 제14.2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 제14.2조 정보 공유

1. 각 당사자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플랫폼의 설립 및 유지를 통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된 이 협정 관련 정보의 공유 그리고 당사자들 간 지식, 경험 및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 교환을 증진한다.
2. 제1항에 따라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될 정보는 다음을 포함할 것이다.
  - 가. 이 협정의 전문
  - 나. 그 당사자가 중소기업과 관련된다고 여기는 무역 및 투자 관련 법과 규정에 관한 정보, 그리고
  - 다. 이 협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기회로부터 혜택을 얻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그 당사자가 유용하다고 여기는 추가적인 사업 관련 정보
  - 라. 각 당사자는 제2항에 언급된 정보가 정확하고 최신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sup>18</sup>

17 Ibid., 22.

18 RCEP 협정문.

나아가 CPTPP에서는 중소기업에게 적극 공유되어야 할 그 외 정보로서 세관,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 및 절차나, 기술규정과 표준, 위생검역조치, 외국인투자, 사업자등록절차, 고용, 과세정보까지도 포함하고 있고, 이에 더불어 USMCA에서는 무역촉진 및 중소기업금융 프로그램, 정부조달 등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게 공개적이고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sup>19</sup>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 내용들의 공유 의무가 FTA를 통해 도입되고 있음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대목이다.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이 국제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FTA를 통해 주요 정보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현상은 매우 적절한 것으로 중소기업에게 분명 큰 힘이 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무역참여에 일조할 수 있는 '방법' 역시도 FTA에서 규범을 통해 도입되고 제시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내용은 RCEP 보다는 CPTPP와 USMCA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뤄지고 있다.

해당 협정에서는 중소기업들을 위하여 경험과 관행을 공유하고, 수출자 지원 및 보조 관련 트레이닝, 무역 교육, 무역 금융, 타국 거래처 발굴, 세미나, 워크샵, 수출 상담, 지원, 교육 등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나열되어 있다(제24.2조).<sup>20</sup>



19 박정준(2022), “최근 FTA규범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무역 참여 지원 방향성에 대한 연구”, 통상법무정책, 25.

20 Ibid., 29. 해당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 (b) exchange and discuss each Party’s experience and best practices in supporting and assisting SME exporters with respect to, among other things, training programmes, trade education, trade finance, identifying commercial partners in other Parties and establishing good business credentials; (c) develop and promote seminars, workshops or other activities from SMEs of the benefits available to them under this Agreement; (d) explore opportunities for capacity building to assist the Parties in developing and enhancing SME export counselling, assistance and training programmes; [...].”

USMCA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무역사절단, 무역원활화, 디지털무역, 웨비나 등에 대해서도 언급해 중소기업들이 무역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당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과 분야에 대해 명문화했다(제25.4조).<sup>21</sup> 비록 우리가 이미 참여 중인 RCEP에서는 비교적

조항의 정교함이 부족하지만 올해를 포함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FTA협상을 추진할 우리 통상정책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지원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규범들에 대한 논의 역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사점

그동안 국제통상규범 차원에서 찾아보기조차 힘들었던 중소기업 관련 지원 조항들이 최근 몇 년간 등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자유무역의 가치 아래 이에 대한 대응과 활용 역량이 충분한 대기업들 위주로 FTA 규범들이 논의되어 온 측면이 아주 없지 않을 것인데 엄두조차 쉽게 낼 수 없었던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책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명문화되는 것은 반갑기까지 하다.

물론 FTA에서 이런 논의가 가시적으로 발현되기 이전에도 각종 기관 및 협회 등에서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고 노력해 왔으나 이제 앞으로의 FTA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보다 상호의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권내로 들어오는 셈이다.

특히 최근 다양한 국제 협약들로 국제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으로 GVC에 큰 변화가 야기되며 투자환경과 파트너가 시시각각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의 입장

21 Ibid., 29-30. 해당 조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 (c) exchange and discuss each Party's experiences and best practices in supporting and assisting SME exporters with respect to, among other things, training programs, trade education, trade finance, trade missions, trade facilitation, digital trade, identifying commercial partners in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and establishing good business credentials; (d) develop and promote seminars, workshops, webinars, or other activities to inform SMEs of the benefits available to them under this Agreement.”

에게는 큰 도전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FTA를 통해 중소기업 규범들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아직 우리가 발효한 FTA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 많지만, 정부는 올해에도 새로운 국가들과 공격적인 FTA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협상은 최소 2개국 이상이 합심하여 진행해야 하기에 무조건적이거나 일방적인 요구는 어렵겠으나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중소기업 관련 규범은 충분히 테이블 위에 의제로서 올려

둘 필요와 가치가 있다. 정책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도전을 모색해 볼 기회와 지원이 확보될 때 비로소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세계무대에 시험해보고 성장도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성공적 통상정책은 한 번 더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의 규모를 가리지 않는 EU의 포용적 통상정책과 그 간의 성과에서부터 우리는 어느 정도의 확신과 용기를 동시에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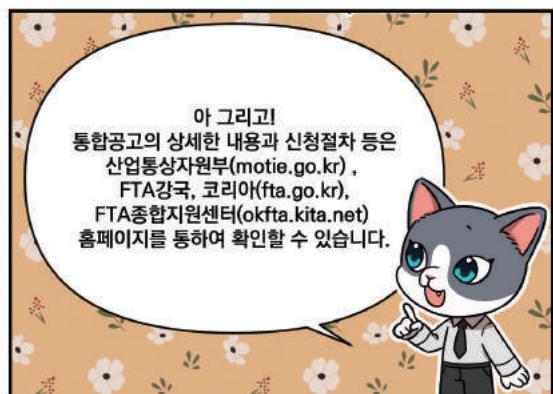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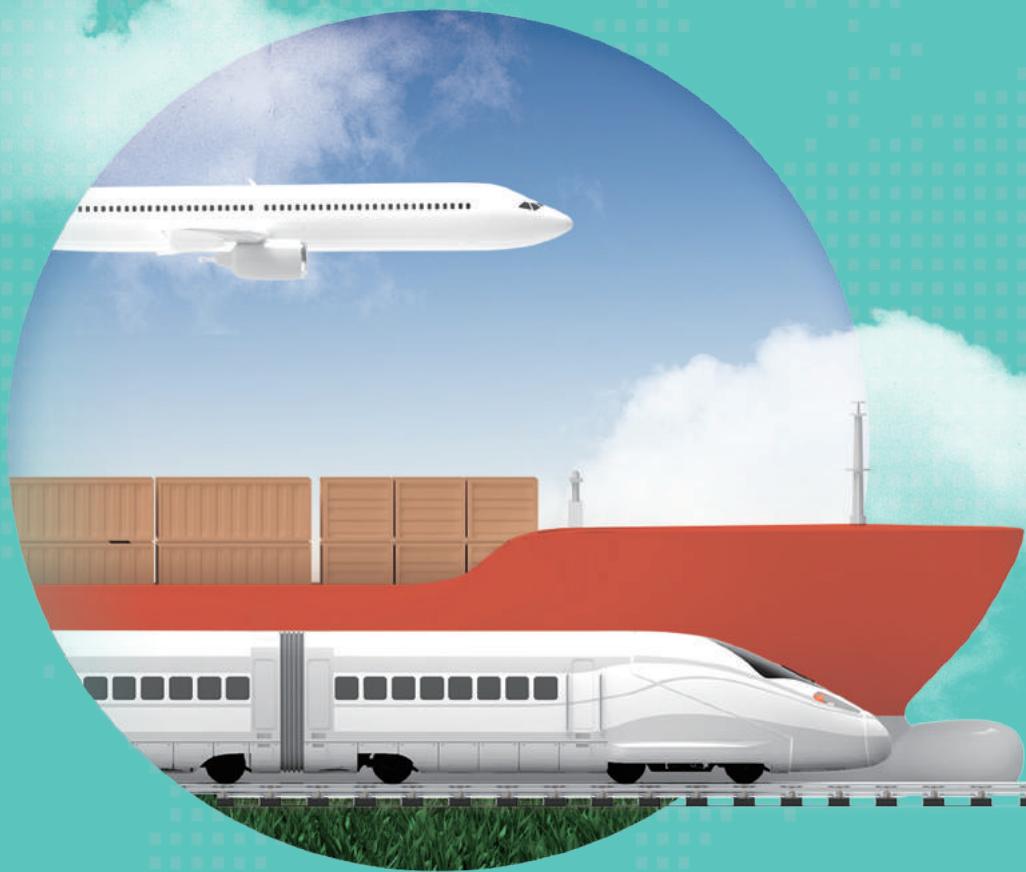
## 정보를 한눈에, '2023년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사업'



### FTA 지원사업 부서

- ① FTA 활용촉진(11개, 131억원) : 수출기업이 FTA특혜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관련 컨설팅, 기반구축(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
- ② FTA 해외시장진출(22개, 4,694억원) : 우리 기업이 FTA체결 상대국의 시장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 바우처, 해외인증 획득,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 및 무역보험 제공 등을 지원
- ③ 산업경쟁력 강화(11개, 1,574억원) : FTA에 따른 수입증가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자금 융자 및 생산시설 자동화 등을 지원하여 일시적 경영안정과 함께 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도모
- ④ 한·중 FTA특화사업(3개, 359억원) : 대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차이나데스크 현장방문 컨설팅, 검역애로 해소 및 수출전략 상담 등 특화사업을 추진





FTATRAD



#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영상보안(CCTV)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및  
FTA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정영욱 | 한국관세사회 소속 관세사

E REPORT

# 영상보안(CCTV)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및 FTA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정영욱  
한국관세사회 소속 관세사



## 1 영상보안(CCTV) 산업의 변화와 발전

CCTV란 Closed Circuit Television 즉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CCTV는 사무실, 건물, 창고, 은행 등과 같은 한정된 공간 내에 설치된 아날로그 방식의 텔레비전 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영상을 동축케이블(coaxial cable)을 통해 아날로그 방식의 영상녹화기에 전송하여 녹화하거나 실시간 영상을 모니터링하는 폐쇄적인 시스템이다.

그런데 2000년을 전후로 디지털 및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디지털 방식의 텔레비전 카메라 및 영상녹화기가 대거 출현 하였고, 이러한 디지털 방식의 기기들은 동축 케이블 뿐 아니라 UTP와 같은 인터넷케이블 또는 무선인터넷을 이용하여 디지털 영상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이처럼 디지털화 및 인터넷화로 인하여 CCTV



관련 제품들은 「폐쇄된 공간(closed space)에 대한 영상감시기기」로서의 역할을 뛰어넘어 보다 확장된 「열린 공간(open space)에 대한 영상감시기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이제는 동축케이블이 설치되지 않은 야외 주차장, 도로, 공원 등에도 인터넷케이블 또는 WIFI와 같은 무선인터넷에 접속 가능하다면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를 설치하여 디지털 영상을 원격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도 있고 원격지에 설치된 네트워크 영상녹화기에 녹화 재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즈음 CCTV업계가 CCTV라는 용어 대신에 영상보안(video security) 또는 영상감시(video surveillance)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영상보안감시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기기(apparatus)인 영상녹화기와 텔레비전카메라의 품목분류(HS classification)와 주요 FTA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서 해설하고자 한다.

## 2 영상녹화기(video recorder)

### 1. 변천사 및 상업적 분류

#### (1) Analog Video Recorder에서 Digital Video Recorder로의 변화

지금은 이미 사라진 골동품처럼 느껴지지만, 불과 20여년전까지만 해도 아래 그림1과 같은 카세트테이프(cassette tape)에 아날로그 영상을 녹화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비디오 레코더(일명 VCR)가 영상보안시장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그림1 (VCR: Video Cassette Recorder)]



아날로그 방식의 VCR은 카세트 한 개당 보통 2~3시간 분량의 동영상밖에 녹화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법적으로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은행 안팎 및 ATM 부스에 설치된

여러 대의 카메라들이 촬영한 동영상들을 녹화 저장하도록 강제하고 있어서, 각 은행 지점별로 보관해야 하는 카세트테이프가 산더미만큼 많아서 별도의 보관창고를 두어야 했으며 또한 이를 전문적으로 보관, 관리, 재사용 및 폐기하는 보안요원을 두어야 했다.

1990년대 하반기 즈음에 이러한 아날로그 비디오 레코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이 비디오 코덱(video codec)이 내장된 디지털 방식의 비디오 레코더, 즉 Digital Video Recorder(DVR)를 개발하였다.

DVR은 아날로그 카메라로부터 오는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 영상으로 압축 변환하여 이를 아래 그림2와 같이 DVR 내에 설치된 HDD (Hard Disk Drive)에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림2 (DVR: Digital Video Recorder)]



## (2) Digital Video Recorder에서 Network Video Recorder로의 변화

Digital Video Recorder(DVR)는 Analog Video Recorder를 시장에서 밀어내면서 2000년대를 풍미했지만, 여전히 아날로그 카메라를 이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 그리고 비용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당시 아날로그 텔레비전 카메라는 화질의 해상도가 30만~50만 화소를 가지고 있었다. 현재 휴대폰 카메라의 해상도가 1억 화소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30~50만 화소의 화질이 얼마나 낮았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낮은 화질수준의 아날로그 영상을 DVR에 저장하기 위하여 디지털로 압축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재생 화질이 더 나빠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둘째, 당시 저장매체인 HDD의 가격이 저장용량 대비 너무 비쌌다. 2000년대 초에 50GB(Giga Byte) HDD의 가격이 대략 5만원이었는데, 현재 그 20배 용량의 1TB(Tera Byte) HDD의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셋째, 아날로그 텔레비전 카메라는 BNC 타입의 동축케이블과 연결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큰 건물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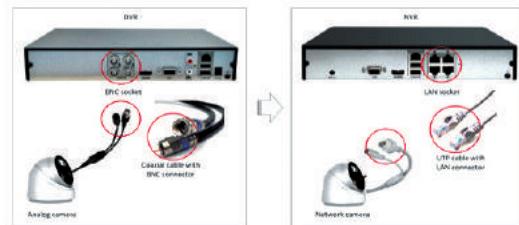


적어도 수십에서 수백 개의 아날로그 카메라가 설치되는데, 그 카메라들의 구매비용보다 동축케이블을 지하와 지상 각층으로부터 영상 보안실까지 설치하는 비용이 몇 배 더 들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2000년대 후반부터 동축케이블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텔레비전 카메라 대신에 인터넷 케이블 또는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디지털 텔레비전 카메라가 시장에 등장하였는데, 시장에서는 이를 IP camera 또는 Network camera 라고 명칭하고 있다.

Network camera의 등장으로 인해 인터넷 케이블로부터 오는 디지털 영상을 수신하기 위하여 영상녹화기의 수신부도 하기 그림3과 같이 BNC 소켓 대신에 UTP 케이블용 소켓(즉 LAN선용 소켓)을 사용하는 Network 방식의 Digital Video Recorder 즉 Network Video Recorder(NVR)로 변하게 되었다.

[그림3 (DVR & NVR 차이점)]



## 3

## 관세율표에서의 HS분류 및 분류기준 해설

관세율표의 해설에 따르면, HS 제8521호에는 비디오 튜너를 결합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상 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Video recording or reproducing apparatus, whether or not incorporating a video tuner)가 분류된다.

영상 기록용 기기는 텔레비전 카메라나 텔레비전 수상기에 접속하였을 때 텔레비전 카메라에 의해 포착되거나 텔레비전 수상기에 의해 수신되는 영상과 음성에 대응하는 전기적 펄스(아날로그 신호)나 디지털 코드로 변환된 아날로그 신호(또는 이들의 혼합체)를 매체에 기록하는 기기이다.

영상 재생용 기기는 영상 기록용 기기에 저장된 기록들을 영상과 음성 신호로 변환하여 직접 텔레비전 수신기에서 재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영상 기록용 기기와 재생용 기기는 별도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결합되어 만들어 지기도 한다.

영상 기록용 재생용 기기(이하 '영상녹화기')는 영상과 음성을 기록하는 매체(media)의 유형에 따라 HS 6단위로 소분류 되는데, 즉 마그네틱 테이프(magnetic tape)를 기록 매체로

사용하는 기기는 HS 제8521.10호에 분류되고, 마그네틱 테이프 외의 기록매체(disk 포함)를 사용하는 기기는 HS 제8521.90호에 분류된다.

영상녹화기에 대한 이러한 HS분류와 앞서 상술한 상업적 분류를 결합하여 해설하자면, 기록매체로서 cassette tape를 사용하는 Analog Video Recorder은 HS 제8521.10호에 분류되는 반면, 기록매체로서 HDD(Hard Drive Disk)를 사용하는 Digital Video Recorder 또는 Network Video Recorder는 HS 제8521.90호에 분류된다.



## 4 주요 FTA별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디지털 방식의 영상녹화기가 분류되는 HS 제8521.90호에 대한 주요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아래표와 같다.

① 한-미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CTSH를 해설하면, 영상녹화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재료들 중 비원산지(역외산) 재료의 HS code 6단위(즉, 소호(tariff subheading))와 영상녹화기의 HS code 6단위가 서로 다르면 해당 영상녹화기의 원산지를 역내산(즉, 한국산 또는 미국산)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역외산 재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재료가 제품으로 생산되는 과정에서 6단위 세번

변경(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이 일어나면, 그 제품은 역내산으로서의 원산지 지위를 갖게 된다는 의미이다.

② 한-EU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MC45%를 해설하면, 영상녹화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들의 가치가 제품인 영상녹화기의 공장도가격(EXW: Ex-Works Price) 대비 45% 이하이면 해당 영상녹화기의 원산지를 역내산(즉, 한국산 또는 유럽산)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③ 한-중 FTA 및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CTH or RVC 40%를 해설하면, 「영상

FTA	원산지 결정기준	
한-미 FTA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한-EU FTA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MC 45%
한-중 FTA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CTH or RVC40%
한-아세안 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한-인도 CEP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CTH + RVC40%

녹화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HS code 4단위(즉, 호(tariff heading))와 영상녹화기의 HS code 4단위가 서로 다르면」 또는 「영상녹화기의 FOB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비원산지 재료 제외한 요소들의 가치들 즉 역내에서 발생한 가치(RVC: Regional Value Contents)가 제품의 FOB가격 대비 40% 이상이면」 해당 영상 녹화

기의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 한-인도 CEPA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CTH + RVC 40%를 해설하면, 상기 ③에서 설명한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과 RVC 40%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해당 영상녹화기의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 5

## 텔레비전 카메라(television camera)

### 1. 변천사

(1) Analog Television Camera에서 Digital & Network Television Camera로의 변화

2000년대까지만 해도 아날로그 방식의 텔레비전 카메라가 영상보안시장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아날로그 텔레비전 카메라는 30만~50만 화소로 그 화질이 매우 좋지 않았고, BNC 커넥터가 달린 동축케이블을 사용해야 해서 그 설치비용이 높았고, 각 카메라마다 어댑터 (adaptor)를 사용하여 전원을 연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2010년 전후로 텔레비전 카메라의 디지털화와 인터넷화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먼저, 카메라에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을 전기적인 영상 신호로 바꿔주는 이미지센서가

있는데, 아날로그 카메라에는 아날로그 영상 신호를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의 CCD(Charge Coupled Device) 이미지센서가 사용되었고, 디지털 카메라에는 아날로그 영상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여 전달하는 방식의 CMOS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이미지센서가 주로 사용되었다.

특히 CMOS 이미지센서는 소비전력이 낮고, 고해상도의 화질 구현이 가능하며, 반도체 공정 기술이 적용되어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디지털 네트워크 텔레비전 카메라 (일명 IP camera 또는 Network camera)는 동축케이블 대신에 인터넷 케이블 또는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엄청난 길이의 무거운 동축케이블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어 CCTV 시스템의 설치비용이 대폭 낮아졌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카메라는 이더넷(ether-net) 케이블을 통해 영상신호 뿐 아니라 전원도 공급되는 PoE(Power of Ethernet)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카메라마다 별도의 전원 장치를 연결할 필요가 없어져서 설치의 편의성과 비용절감이 이루어졌다.

## (2) 다양한 상업적 분류

텔레비전 카메라는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으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다양한 상업적 기술적 기준에 의해 분류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특정 공간만 촬영하도록 카메라를



고정하는지 여러 공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움직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Fixed camera와 PTZ(Pan-Tilt Zoom) camera로 분류하기도 하고, 카메라의 형태가 사각형인지 돔(Dome)형인지 여부에 따라 Box type camera와 Dome type camera로 분류하기도 하고, 카메라렌즈의 초점이 고정되어 있는지

변화가능한지에 따라 Fixed Focal camera와 Variable Focal camera로 분류하기도 하고, 이외에도 IR LED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파노라마 카메라, 피쉬아이(Fish-eye) 카메라, 핀홀(pin hole) 카메라, 방수(water-proof) 카메라, 방폭(explosion-proof) 카메라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하기도 한다.

## 2. 관세율표에서의 HS분류 및 분류기준 해설

관세율표의 해설에 따르면, HS 제8525.8호에는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Television cameras, digital cameras and video camera recorders)가 분류된다. 이 호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카메라는 HS 제9006호의 사진기나 HS 제9007호의 영화용 촬영기와 물리적으로 비슷하지만, HS 제90류의 사진기나 영화용 촬영기는 HS 제37류의 사진필름에 영상을 노출하나,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영상을 아날로그나 디지털 자료형태로 변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HS 제8525.8호는 아래와 같이 상세 분류할 수 있다.

① HS 제8525.81호에는 고속(high-speed)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와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로서 기록속도가 마이크로 초당

0.5밀리미터를 초과하거나 또는 시간 분해도가 50나노초 이하이거나 또는 초당 225,000 프레임을 초과하는 것이 분류된다.

② HS 제8525.82호에는 방사선 경화나 내(耐) 방사선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 레코더로서 고방사선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거나 보강된 것이 분류되며, 이들 카메라는 작동상의 품질저하 없이 최소한 방사선량  $50 \times 103$  Gy(실리콘) ( $5 \times 106$  RAD(실리콘))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다.

③ HS 제8525.83호에는 야간투시용(night vision)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 레코더로서 광전음극(photo-cathode)을 사용하여 해당하는 빛을 전자로 변환하고 이를 증폭하여 가시적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을 분류된다.



참고로, 야간 촬영을 위한 LED 조명을 갖춘 LED 카메라와 적외선 이미지센서를 통해 대상물의 온도 차이에 따른 열화상을 촬영하는 열화상카메라(thermal imaging camera)는 HS 제8525.89호에 분류되며, HS 제8525.83호의 야간투시용 텔레비전 카메라와는 구분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④ HS 제8525.89-1000호에는 초소형 특수 카메라(필기구, 버튼, 안경, 시계, USB 메모리 등 일상소품이나 다른 전기기기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 제작된 것)가 분류된다.

⑤ HS 제8525.89-2000호에는 상기 ①~④

에서 분류되지 않은 기타의 텔레비전 카메라가 분류된다. 참고로, 상기 ①~④에서 분류되는 특수카메라들은 일상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형태와 기능의 대부분의 텔레비전 카메라들은 당해 소호에 분류된다.

⑥ HS 제8525.89-3000호에는 디지털 카메라가 분류되며, HS 제8525.89-9000호에는 비디오카메라 레코더를 포함하는 기타의 물품이 분류됩니다. 참고로, 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 레코더는 영상을 내부저장장치나 기록매체에 녹화한다는 점에서 텔레비전 카메라와 구분된다.

### 3. 주요 FTA별 원산지결정기준 해설

텔레비전 카메라가 분류되는 HS 제8525.8호에 대한 주요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이에 대한 해설은 영상녹화기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해설과 매우 유사 하므로, 해당 해설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FTA	원산지 결정기준	
한-미 FTA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TSH
한-EU FTA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MC 50%
한-중 FTA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CTH or RVC40%
한-아세안 F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한-인도 CEP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CTH + RVC35%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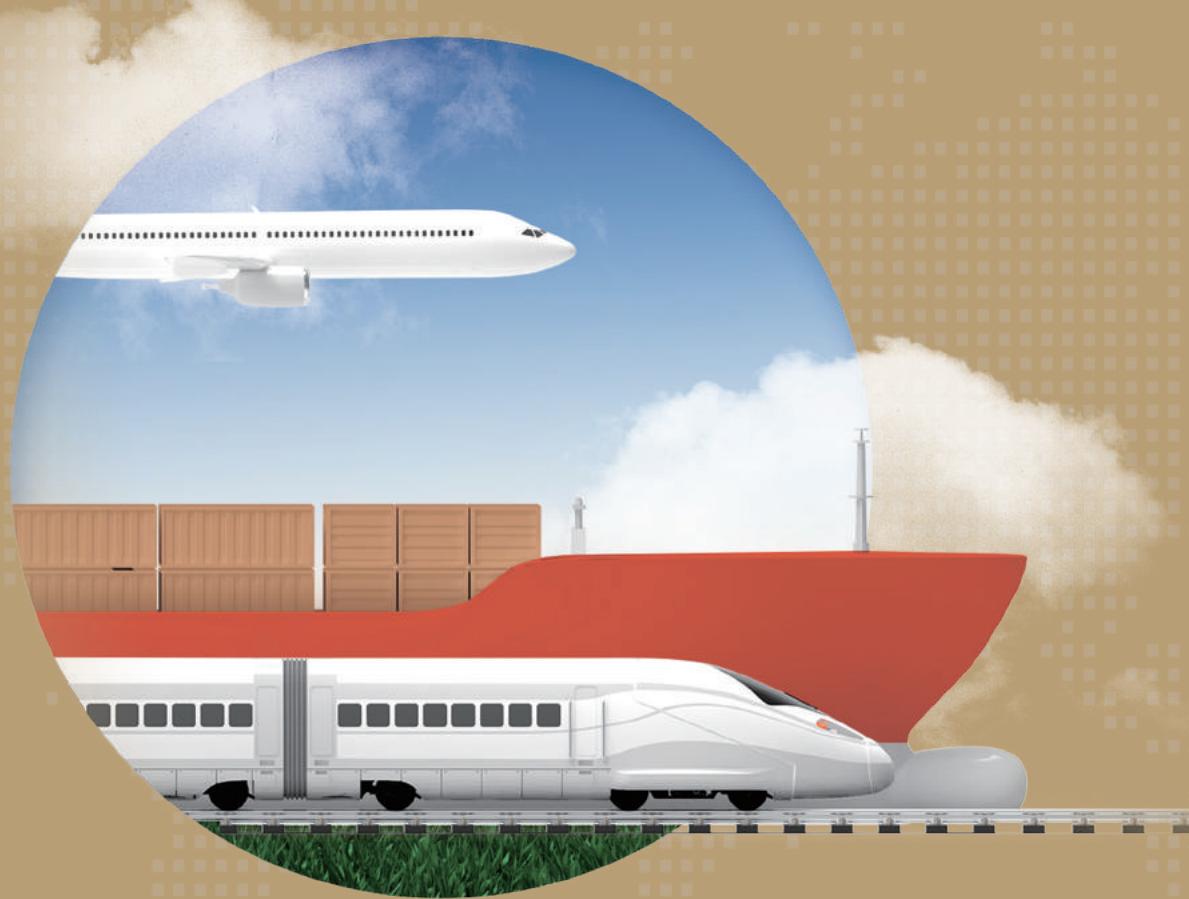
## 마무리하며: 영상보안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관련 유의사항 및 향후 과제

텔레비전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drone)의 경우, HS 2017버전 하의 국내외 관세청의 유권해석에서는 HS 제8525.8호의 텔레비전 카메라로 분류하였으나, HS 2022버전에서는 신설된 HS 제8806호의 무인기(unmanned aircraft)로 분류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HS 제88류 주(note)에 의하면, 무인기는 화물을 수송하도록 설계되거나 비행 중에 실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카메라나 그 밖의 장치를 영구적으로 갖추고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과거에는 HS 제90류에 분류되는 각종 측정센서들과 텔레비전 카메라가 각각 별도의 기기로서 상호 연계되었는데, 최근에는 비약적 기술발전에 의해서 텔레비전 카메라 내에 각종 센서들(예를 들어 속도측정계)이 장착되거나 또는 하나의 하우징 내에 텔레비전 카메라와 각종 센서들이 결합된 통합기기로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러한 통합기를 어떻게 품목분류할 것인지가 향후 과제로 남는다.



FITATRAD



# 활용하기 쉬운 FTA-PASS

## FTA-PASS 신규 기능 소개

- 원산지확인서 발급 편 -

구본현 | 국제원산지정보원 과장/원산지관리사

김소연 |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사

E REPORT

# FTA-PASS 신규 기능 소개

## - 원산지확인서 발급 편 -



구본현  
국제원산지정보원 과장  
원산지관리사



김소연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사

FTA-PASS는 2010년 관세청 주관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한 원산지관리시스템으로, 수출/제조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업무 지원을 위해 무료로 보급하고 있다.

사용자는 FTA-PASS에서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서류 발급과 유통, 원산지 입증자료 보관, 사후검증대비 등이 가능하다.

FTA-PASS는 사용자가 원산지정보만 입력하면 7번의 클릭만으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매출처별로 원산지를 판정하여 간편하게 원산지확인서와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 FTA P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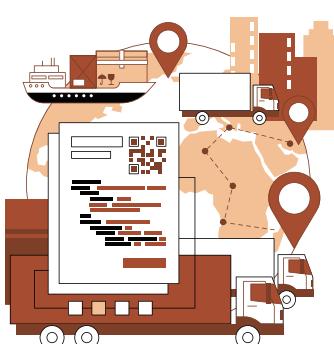
## 1. 원산지(포괄)확인서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또는 최종물품)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자가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이다.

원산지(포괄)확인서 제도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수출물품 또는 수출용 원자료에 대한 원산지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수출자의 원산지 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원산지증명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원산지입증에 필요한 증빙서류인 소요 부품명세서, 원자료 원가명세서, 제조공정설명서 등은 기업비밀을 포함하고 있어 공급자가 외부노출을 기피할 수 있다. 그렇지만 수출자가 원자료에 대한 원산지입증서류를 갖추지 못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며, 수출 이후에 수입국 세관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인정을 받지 못하여 특혜관세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원산지확인서는 기업의 민감정보인 원자료의 가격, 소요량 등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자 비밀유지를 지킬 수 있고, 수출자는 원산지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있다. 또한 동일 기업에게 지속적으로 납품하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통해 물품 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 품목은 위와 같이 따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대체할 수 있는 원산지증빙서류가 있다. 기존에 이미 원산지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농산물이력추적 관리등록증이나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등은 해당 서류 자체만으로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급자는 수출물품 또는 수출용 원재료가 관세 청장이 지정한 품목인지 확인하여 간편하게 원산지증빙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

## 2. 원산지정보 등록

금번 호에서는 FTA-PASS 활용유형 중 기본형, 재고관리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에 대해 소개하겠다. 기본형(재고관리기능 미사용)을 활용하는 회원사는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기에 앞서 기준정보와 거래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기준정보는 정보의 입력자료 수정 빈도가 낮은 원산지 기초 정보 관리 메뉴다. 기준정보는 6가지 소메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 〈물품정보 메뉴 중 상품여부 항목에 체크 화면〉

● 물품번호	SP-087-40
● 물품명(한글)	CCTV 카메라 4채널
· 물품명(영문)	CCTV Camera 4 Channel
· 규격(한글)	4 채널
· 규격(영문)	4 Channel
· 비고	
· 단위	EA (개수) ▼
● 가공단계	완제품 ▼
· 속성	선택 ▼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2px;">도움말</span>
· 상품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span style="color: blue;">※ 구매 원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체크</span>
· 사용여부	사용 ▼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2px;">이력보기</span>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2px;">취소</span>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2px;">저장</span>	

중 거래처, 물품정보, 자재명세서, HS코드 메뉴는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메뉴이며, 생산공정, 거래처물품정보 메뉴는 사용자 활용 의도에 따라 이용하면 되는 부가서비스 성격을 지닌 메뉴이다. 다만, 물품을 구매해서 가공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자재명세서 메뉴는 사용하지 않고 물품정보 메뉴 항목 중 상품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거래정보는 정보의 입력자료 수정 빈도가 높은 원산지 기초 정보 관리 메뉴다. 거래정보는 3가지 소메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매단가, 판매단가 메뉴는 부가가치기준으로 원산지판정 수행 시 사용한다. 반면 근거서류 메뉴는 사용자의 활용 의도에 따라 부가적으로 이용한다. 다만, 기준정보 중 물품정보 메뉴 항목 중 상품여부에 체크한 물품은 구매단가 및 근거서류 등록이 필수다.



### 3. 원산지판정

원산지판정 중 매출처별 판정에 대해 설명하겠다. 매출처별 판정은 판매하는 물품의 공급처 단위로 일괄 판정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사용한다. 공급처 단위로 판정하기 위해 ①매출처별 판정탭으로 이동한다. 그 후 매출일을 설정하여 판정할 정보를 조회한다. 판정대상 매출처가 조회되면 ②매출처를 선택한 다음 ③판정시작 버튼을 클릭해 원산지 판정을 수행한다. ④선택발급 버튼이 생성되었으면 클릭하여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한다.

〈 일괄판정 메뉴 중 매출처별 판정 화면 〉

번호	매출처	국가	매출일	물품수	판정성공건수	판정실패건수	판정일자/상세	서류	발급
1	<input type="checkbox"/> 스위스전자	CH	2023-01-17	1	1	0	2023-02-10 14:30:51	원산지증명서(자율)	선택 발급
2	<input type="checkbox"/> 칠레전자	CL	2023-01-17	1	1	0	2023-02-10 14:31:01	원산지증명서(자율)	선택 발급
3	<input type="checkbox"/> 도이치전자	DE	2023-01-17	3	3	0	2023-02-10 14:31:00	원산지증명서(자율)	선택 발급
4	<input type="checkbox"/> 뉴델리전자	IN	2023-01-17	1	1	0	2023-02-10 14:30:53	원산지증명서(기관)	선택 발급
5	<input type="checkbox"/> 베트남전자	KR	2023-01-17	3	3	0	2023-02-10 14:31:01	원산지확인서	선택 발급
6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② 한라전자	KR	2023-01-17	3	3	0	2023-02-10 14:31:01	원산지확인서	④ 선택 발급
7	<input type="checkbox"/> 폐부전자	PE	2023-01-17	1	1	0	2023-02-10 14:30:55	원산지증명서(자율)	선택 발급
8	<input type="checkbox"/> 싱가폴전자	SG	2023-01-17	1	1	0	2023-02-10 14:30:56	원산지증명서(기관)	선택 발급
9	<input type="checkbox"/> 터키전자	TR	2023-01-17	1	1	0	2023-02-10 14:30:57	원산지증명서(자율)	선택 발급
10	<input type="checkbox"/> 어메리카전자	US	2023-01-17	3	3	0	2023-02-10 14:31:00	원산지증명서(자율)	선택 발급
11	<input type="checkbox"/> 하노이전자	VN	2023-01-17	1	1	0	2023-02-10 14:30:58	원산지증명서(기관)	선택 발급

보기 1 - 11 / 11      페이지 1 / 1      100      즐바꿈설정

도움말      ※선택발급 가능한 최대 물품수는 40개입니다.

③ 판정시작      ④ 선택발급

#### 4. 원산지확인서 작성

매출처별로 판정한 후 선택발급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원산지확인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한다. 공급하는 자와 공급 받는자 정보를 확인한 후 공급물품 명세 항목의 원산지 포괄확인 기간을 선택한다. ❸올해를 클릭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한다. 그런 다음 ❹저장을 클릭하고 서명권자 정보를 확인한다. 최종적으로 ❺발급을 클릭하고 원산지 확인서를 출력한다.

###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화면〉

① 원산지확인서

② 품 · 서류관리 · 원산지확인서

원산지확인서

세관당사자전학인신청

양수자동보

③ 공급 하는자

공급 하는자	④ 상호	custom01	국제원산지정보원		사업자번호	211-82-16919
	⑤ 대표자성명	임상옥			E-mail	fta-pass@origin.or.kr
	⑥ 전화번호	1544-0645			팩스번호	1544-0645
	⑦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답로205번길 8, 국제원산지정보원(아답동)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input type="text"/>

⑧ 공급 받는자

공급 받는자	⑨ 상호	SP-085-00-K	한라전자		사업자번호	019-00-00000
	⑩ 대표자성명	고한라			E-mail	hanrago@halla.com
	⑪ 전화번호	+82-2-5355-6264			팩스번호	+82-2-6264-5355
	⑫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5			원산지요청서 번호	<input type="text"/>

⑬ 공급 물품 명세

1	□ 고객사 물품번호	자사 물품번호*	물품명*	규격	수량	단위	세번*	원산지*	종족여부*	적용법*	원산	포괄기간시작일*	포괄기간종료일*	※시작일설정		⑭ /월/해/년	⑮ 포괄확인기간 일괄입력
														적용법	원산		
1	□ HL-SR-40	SP-087-40	CCTV 카메라 4x4 채널				EA	852580B	17%	Y	APTA	KR	2023-01-01	2023-12-31	N	E (▼)	E (▼)
2	□ HL-SR-40	SP-087-40	CCTV 카메라 4x4 채널				EA	852581CTH		Y	RCEP	KR	2023-01-01	2023-12-31	N	Y (▼)	Y (▼)

보기 1 ~ 66 / 66

페이지

1

/ 1

1000

1000 즐바꿈설정

선택삭제

※ 고객사 물품번호(출력을 표기용)를 기재방법: 1.[기준정보] → 거래처 물품정보] 등록, 2.[시스템관리 > 환경설정 > 서류템]에서 원산지확인서 유

목록으로

세 원산지확인

⑥

저장

⑭ 서명자

발급번호	CON-custom01-3 ※ 우리회사의 관리번호 기재(자동생성) (발급번호 체계 설정방법: 시스템관리 > 환경설정 > 서류템)	발급/작성일자	2023-01-01  [포함기간 시작일로 맞추기]
고객사 발급번호(선택사항)	※ 현대차 FTAHUB, 삼성전자 G-SRM 등 고객사 원산지관리시스템 관리번호 기재 (예. 20170700COMPANY000001)	서명사용여부	⑯ 예 ○ 아니오
작성자 / 직위	임상옥   대표	서명	
상호	국제원산지정보원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답로205번길 8, 국제원산지정보원(아답동)		

목록으로

미리보기

⑦

발급

## 5. 마무리하며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는 매달 FTA 및 시스템 기능 이해를 위한 내용을 소식지로 제작하여 회원사에 메일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FTA-PASS 회원으로 가입하면 등록한 메일을 통해 소식지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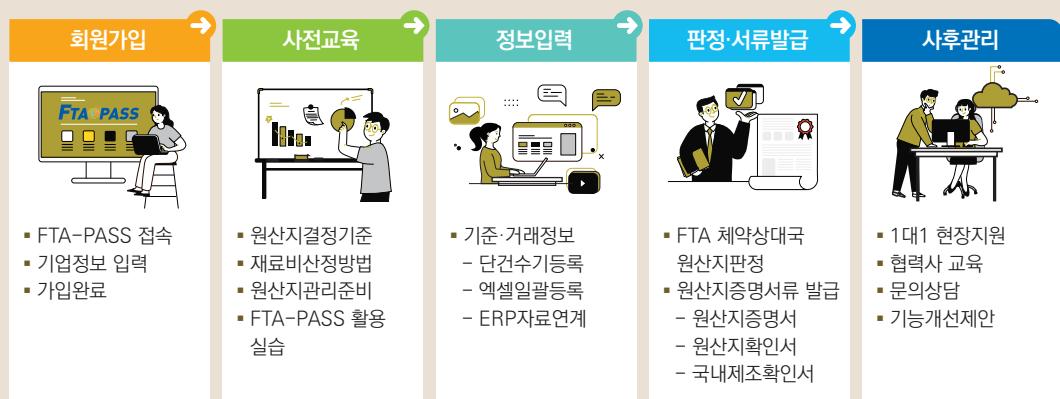
덧붙여 FTA-PASS 활용기업을 위해 품목분류(HS)자문, 현장방문, 원격지원, 전화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에서 FTA-PASS를 사용하다가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언제든지 하단의 FTA-PAS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FTA-PASS란?**

FTA-PASS는 중견 ·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주관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이다.

FTA-PASS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회원가입 후 사전 교육을 받아 FTA-PASS에 대한 이론 및 실습을 배운 후 활용 하는게 이상적이다.

**FTA-PASS 주요기능**

FTA-PASS로 원산지판정 및 서류를 발급하면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대비 등을 수월하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 관리시스템인 FTA-PASS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FTA-PASS를 활용하고 있지 않는 업체는 지금이라도 FTA-PASS를 통해 원산지를 관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 체계적인 FTA 원산지관리, FTA-PASS를 무료로 활용하세요!



▶ 시스템 바로가기 : <https://www.ftapass.or.kr>

## 1. FTA-PASS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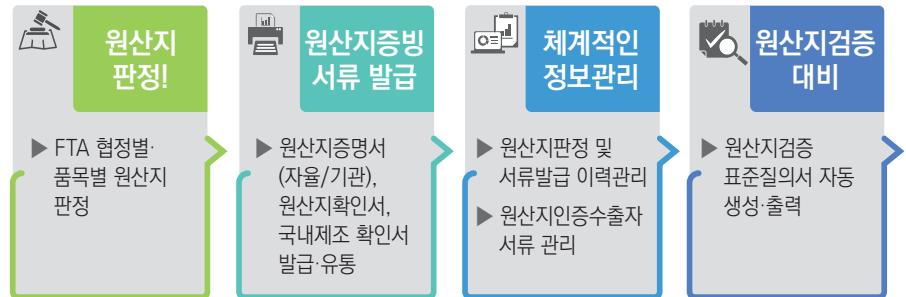
### ■ 시스템 개요

중견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주관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원산지관리시스템

### ■ 활용상 이점

정확한 원산지판정과 원산지증빙서류 발급 관리로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대비 등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실현

## 2. FTA-PASS 주요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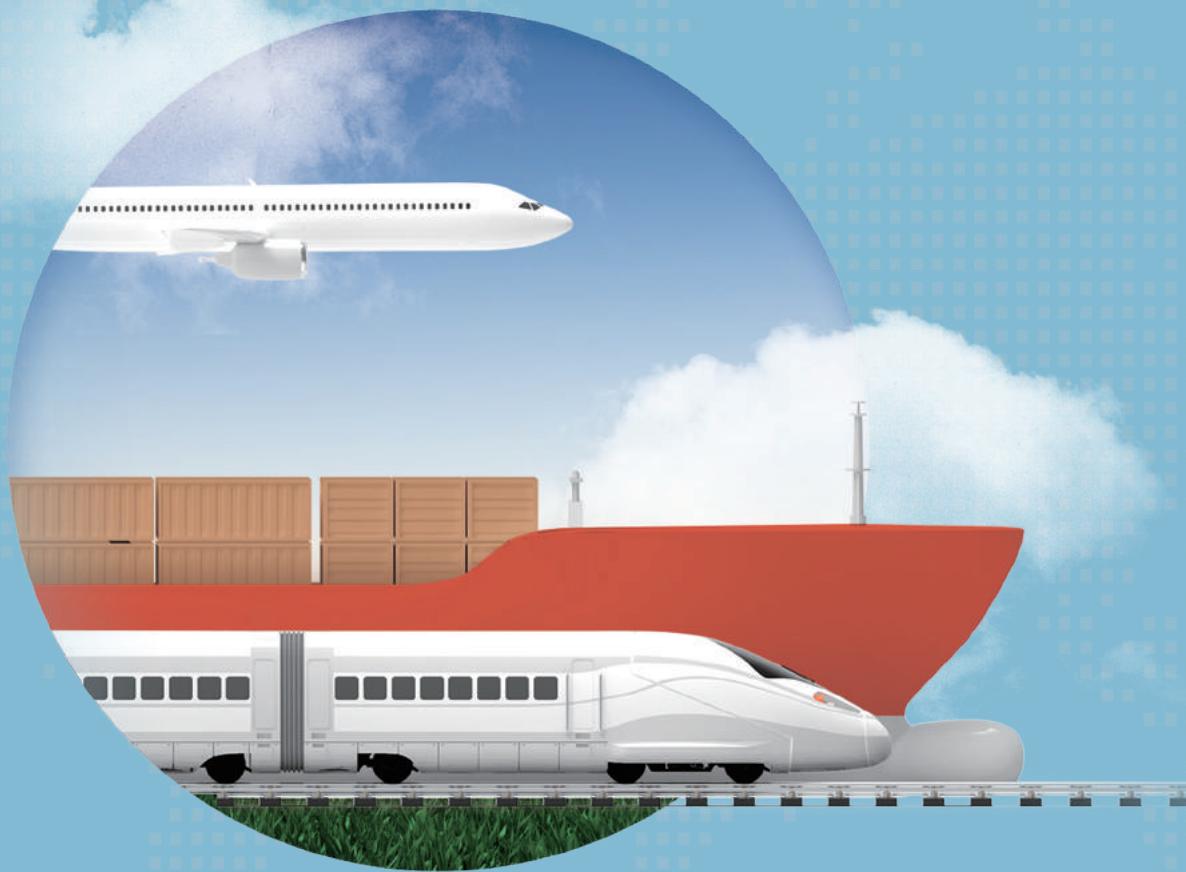
## 3. FTA-PASS 활용 유형

<b>기본형</b>	<b>수출</b> (재고관리기능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재고관리기법(월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을 이용하여 재료비를 산출</li><li>정보관리 : 원산지정보, 구매원장, 매출원장, 수불부, FTA별 정보관리 (엑셀13종)</li><li>출력서식 : FTA원산지증명서(기관/자율),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생산공정도, 작성대장, 서명카드</li></ul>
	<b>수출/국내공급</b> (재고관리기능 미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사용자가 정의한 재료비를 사용하여 원산지관리</li><li>정보관리 : 원산지정보, 구매단가, 판매단가 (엑셀 9종)</li><li>출력서식 : FTA원산지증명서(기관/자율),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생산공정도, 작성대장, 서명카드</li></ul>
<b>간편형</b>	<b>국내공급</b> (영세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최소한의 정보와 노력으로 원산지관리</li><li>정보관리 : 거래처, 자재명세서 (엑셀 2종)</li><li>출력서식 : FTA원산지증명서(기관/자율),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작성대장, 서명카드</li></ul>
<b>체험형</b>	<b>원산지판정</b> (시뮬레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로그인 없이 최소한의 정보 입력으로 모의판정 가능</li><li>수출(공급)물품의 자재명세서(BOM) 입력 후 원산지판정 수행</li></ul>



상담전화 : 1544-0645 (문의시간 : 평일 09:00~18:00)  
문의메일 : [fta-pass@origin.or.kr](mailto:fta-pass@origin.or.kr)





FTATRAD



# 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에 따른 유의사항

고우리 | 서원코리아 관세법인 관세사

E REPORT

#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에 따른 유의사항



고우리

서원코리아 관세법인 관세사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시작으로 EU, 미국, 중국 등의 폭넓은 FTA 확대를 추진하여 최근에는 메가(Mega<sup>1</sup>)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 RCEP) 발효되어 거의 모든 교역국가와는 FTA를 체결한 상황이다.

그러나 다양한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 방식은 협정별로 상이하여 중소기업 등 기업실무자는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FTA를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발효된 RCEP 및 이스라엘, 캄보디아 협정에서는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을 선택하여 원산지증명 방식을 활용가능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업실무자 입장에서 협정별 원산지증명 방식의 다양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의사항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1 자유무역협정의 한 형태. 기존의 양자 FTA가 아닌 대규모 경제권을 가진 국가 여럿이 모여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무역자유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개방화의 정도에 따라 공동시장에 분류되기도 한다.

## 1 서론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시(수입통관시) 그 물품이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임을 확인하여 이를 서류로써 증명하면 그 서류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세당국에 증명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서류라고 볼 수 있다.

미주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율발급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아세안·인도·중국 등은 기관발급을 선호하고 있고 EU의 경우 제한적 자율발급(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또는 기관 발급을 채택하고 있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 2

## FTA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크게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관발급방식은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것<sup>2</sup>을

말하며, 자율발급은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하여 발급하는 것<sup>3</sup>을 말한다.

## [협정별 원산지 발급방식]

구분	기관발급	자율발급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신력이 높아 우회수입방지 기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급절차 신속·편리</li> <li>• 발급비용 절감</li> <li>• 통관절차 간소화</li> <li>• 계약당사간 자율책임 가능</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신고와 증명서 발급 절차 중복</li> <li>• 절차 복잡, 시간·비용 증가</li> <li>• 요식행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위증명 가능성</li> </ul>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EFTA : 스위스산 치즈는 기관발급</li> <li>• 한-호주 FTA: 호주만 기관발급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EU, 한-영 : 건당 수출금액이 6,000유로 초과시에는 원산지인증 수출자만 자율발급 가능</li> <li>• RCEP :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자율발급</li> <li>• 이스라엘 : 상품의 가치가 미화 1천 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인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 가능</li> <li>• 캄보디아 : 인증수출자 자율발급</li> </ul>

\* FTA포털 참고하여 저자작성

2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제1호

3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 3 각 협정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현재 발효된 21개 협정에 따른 협정별 발급방식 및 발급서식은 아래와 같다.



[협정별 원산지 증명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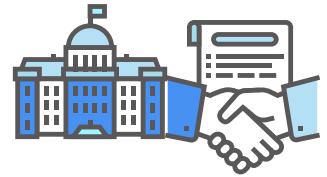
협정	기관발급	자율발급	발급서식
칠레		○	통일서식
싱가포르	○		별도서식
EFTA		○	송품장
아세안	○		통일서식(AK)
인도	○		통일서식
EU		○	송품장
페루		○	통일서식
튀르키예		○	송품장
미국		○	자율서식/권고서식
호주	○(호주만 가능)	○	자율서식/권고서식
캐나다		○	통일서식
중국	○		통일서식
베트남	○		통일서식
뉴질랜드		○	송품장/권고서식
콜롬비아		○	통일서식
중미		○	통일서식
영국		○	송품장
RCEP	○	○	통일서식
이스라엘	○	○	통일서식/송품장
캄보디아	○	○	통일서식
인도네시아	○		통일서식

## 4

##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의 유의사항

## ■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 1) 발급기관 확인 및 의무사항



우리나라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sup>4</sup>이며 증명서 발급 기관은 발급신청자가 원산지증명서의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반려한 때는 지체없이 동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받은 관세청장은 지체없이 이 사실을 다른 증명서발급기관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은 협정에서 정하는 자 및 발급신청의 권한을 위임<sup>5</sup>받을 수 있는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5 관세사 등 위임을 받아 신청인으로 인정은 가능하지만, 관세사명의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위임장 제출해야 함)

## 2) 원산지증명서 발급품목의 HS CODE 확인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상에 HS CODE는 필수 기재사항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수출국에서 하나, 수입국에서 관세혜택을 적용받기 때문에 수입국의 HS CODE도 반드시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만약, 동일물품에 대하여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CODE가 다를 경우 수출신고시 수출시 사용하는 HS CODE로 수출신고를 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는 수입국의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수입시 HS CODE로 원산지증명서는 발급가능하다.

- ① 수입신고필증
- ② 품목번호 확인서
- ③ 사전심사결정서
- ④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 ⑤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해당 서류는 최초 발급신청시에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동일 물품에 한하여 최초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생략 가능함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CODE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것이 원칙이나, 수입국의 HS CODE의 원산지결정기준만 충족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하되, 수출자는 수입국세관에서 수출국의 HS CODE로 변경하여 원산지검증 요청시에는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에 따른 특혜관세가 배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sup>6</sup>

6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관세청지침(2020.08.04.) 참고

### 3)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발급기관에 제출  
해야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구비서류】

발급종류	제출서류
신규발급	① 수출신고필증 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②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③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시 제출할 수 있음) ④ 원산지소명서(자재명세서 및 제조공정도 등도 제출)
재발급	① 재발급신청사유서
정정발급	① 원산지증명서 원본(정정발급 신청일부터 30일이내 원본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사본제출) ② 정정발급 신청사유서 ③ 정정사유 입증서류

### 4)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기 확인

원산지증명서는 선적되는 특정 화물에 대한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화물이 선적되는 시기에 맞춰서 일정기간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수출물품의 선적 전, 선적시, 선적 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나, 수출자의 과실·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기관은 협정별로 규정되어 있는 발급시기 이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상에 선적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여야 한다.



##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 및 소급발급 문구]

협정	발급시기	스탬프
아세안	선적전 <sup>7</sup> ,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이내(선적일 포함)	ISSUED RETROACTIVELY
인도	선적전,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이내(선적일 포함)	ISSUED RETROSPECTIVELY
베트남	선적전,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이내(선적일 포함)	ISSUED RETROACTIVELY
중국	선적전,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이내(선적일 불포함)	ISSUED RETROACTIVELY
RCEP	선적이 완료되기 전(선적일포함)	ISSUED RETROACTIVELY
이스라엘	선적전,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이내(선적일 불포함)	ISSUED RETROSPECTIVELY
캄보디아	선적전,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이내(선적일 포함)	ISSUED RETROACTIVELY
인도네시아	선적전,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이내(선적일 포함)	ISSUED RETROACTIVELY

##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 1) 서명권자 지정 및 서명카드 비치

자율발급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서명카드에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사류를 기재하여 관리해야한다. 서명권자는 대표자일수도 있고 원산지관리전담자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서명권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해제를 해야하는 경우 관리하고 있는 서명카드에

해제일자 및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서명카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 제출해야 할 필요성은 없지만, 추후 원산지 검증시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시 증빙서류로서 요구하는 서류이므로 사전에 준비해 놓아야하는 서류이다.

7 인도네시아의 경우 선적 전 발행된 원산지를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불인정하고 있으므로 선적후에 신청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자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12. 1.)

## 2) 원산지증명서 대장 기재 및 보관의무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는 대신 아래와 같은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에 기재 및 보관할 의무가 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작성 번호	2. 작성 (서명) 일	3. 수출·입 신고번호 및 수리일	4. 품명	5. 품목번호 (HS No.)	6. 수량/금액	7. 원산지	8. 거래 상대방	9. 자유무역 협정	10. 원산지 결정 기준	11. 비고
협정평정										
작성방법										
작성내용										

항 목	작성내용
1. 작성번호	○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작성번호를 기재합니다.
2. 작성(서명)일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서명)일을 기재합니다.
3. 수출입신고번호 및 수리일	○ 세관에 신고한 수출신고번호와 수출신고 수리일을 기재합니다. ○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입신고번호와 수입신고 수리일을 기재합니다. ○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출신고번호와 수출신고 수리일을 기재합니다. ○ 생산자의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4. 품명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상 물품의 품명을 기재합니다.
5. 품목번호(HS No.)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상 물품의 품목번호(HS No.)를 6단위로 기재합니다.
6. 수량/금액	○ 해당물품의 총 수량, 금액을 기재합니다.
7. 원산지	○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기재합니다.
8. 거래상대방	○ 작성·관리하는 자와 따라 다르게 기재합니다. - 수출자: 생산자 또는 공급자(생산자 또는 공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및 수입자·수입국명 - 생산자: 수출자 또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 - 수입자: 수출자·수출국명
9. 자유무역 협정명칭	○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자유무역 협정 명칭을 기재합니다. - 제3국과의 협정인 경우: 한-칠레 FTA
10. 원산지결정기준	○ 해당 수출물품이 충족하는 원산지결정기준(원천생산, 세번변경, 부가가치, 결합기준, 특정공정, 역외가공, 기타)을 기재합니다.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결합기준을 기재합니다.
11. 비고	○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특이사항을 기재합니다. - 송출장이 비당사국에서 작성되는 경우: 제3국 송출장

210mm×297mm [백지지 80g/m<sup>2</sup>(재활용품)]

자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12. 1.)

**인증수출자제도 유의사항(한-EU 및 한-영국 FTA의 경우)**

우리나라는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업체별인증수출자와 품목별인증수출자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HS CODE 6단위 기준으로 인증되는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검증이 증가하고 협정적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CODE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세관에서 우리의 HS CODE로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나 상대국 세관이 우리 상품에 대한 협정적용시 다른 HS CODE로 적용한다면 인증받지 않은 품목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체별로 전환하여 협정적용 리스크를 감소시키는게 좋을 것 같다.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발급가능하지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입증책임이 수입자에게 있으므로 수입자가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입자 원산지증명서는 세관의 검증이 집중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 5 결론

우리나라는 현재 21개협정, 59개국과의 FTA가 발효된 상황으로 각 협정별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에 따라 발급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실무자분들은 해당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 발급방식에 맞춰 활용하여야 하는데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앞서 몇 가지 준비사항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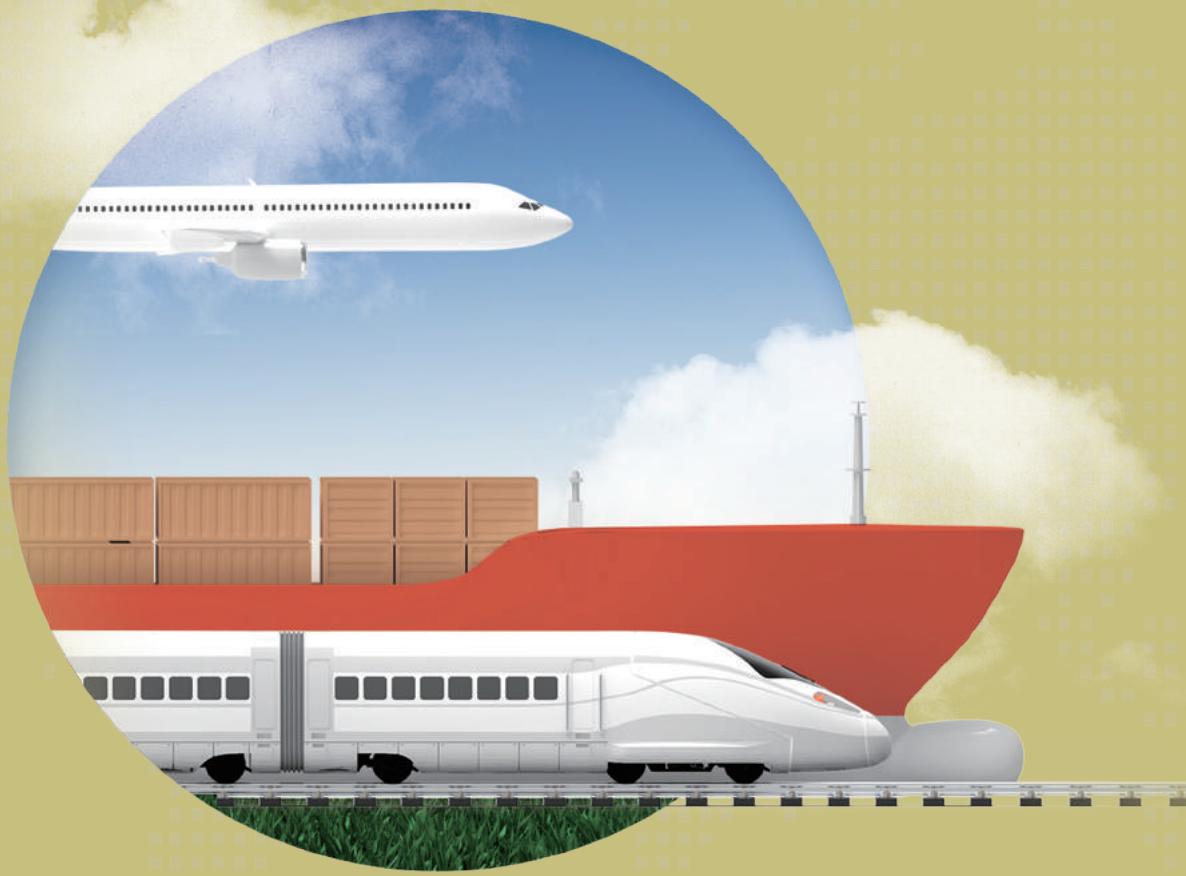
첫째, 수출상대국이 현재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인지 확인하고 둘째, 해당이 되는 국가라면 수출물품의 HS CODE를 미리 확인하여 수입국의 FTA관세혜택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때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CODE가 상이한지 여부를 같이 확인한다.

셋째, 관세실익이 있는 경우 HS CODE에 따른 원산기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증빙서류(원산시소명서, 자재명세서, 제조 공정도) 등을 구비해 놓아야 한다. 넷째, 수출 물품의

발급시기에 맞춰 발급하여야 한다. 기관발급의 경우 선적일과 발급일자에 따라 소급발급문구 등 필수기재사항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맞춰 발급하여야 한다. 현재, 베트남과는 한-아세안 FTA, 한-베트남 FTA, RCEPOI 체결된 상황으로 수입국에서 해당 협정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 해당 협정에 맞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자율발급의 경우 통일서식이 아닌 필수기재항목만 있으면 인정되는 자율서식이 많기 때문에 필수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검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원산지증명서 및 관련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5년 내에 FTA 원산지검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협정을 제외하고는 5년간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 FTA 사후검증에 잘 대비하여야 한다.



FIAT TR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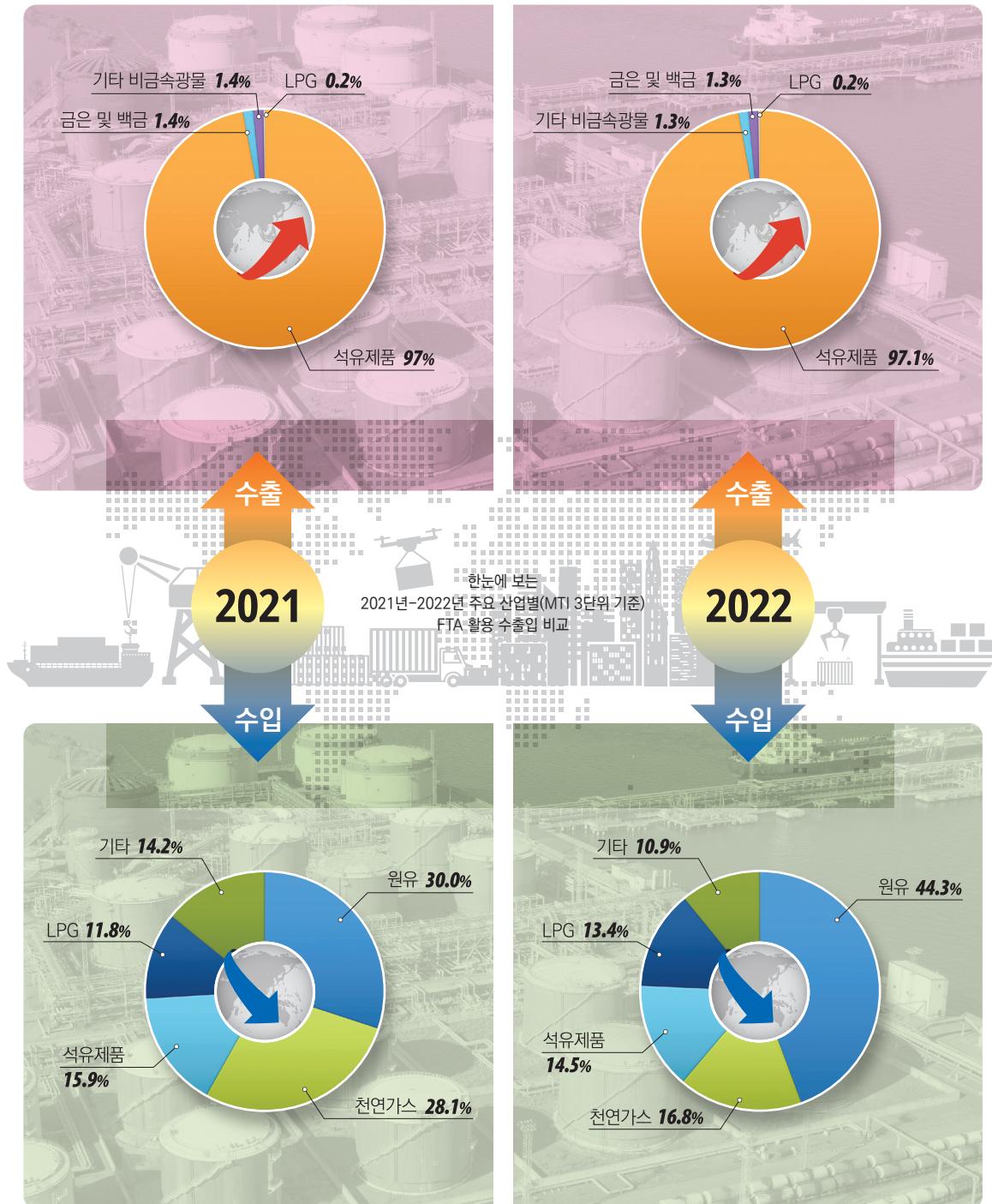
# FTA 지도

한눈에 보는 2021년-2022년 주요 산업별(MTI 3단위 기준)  
FTA 활용 수출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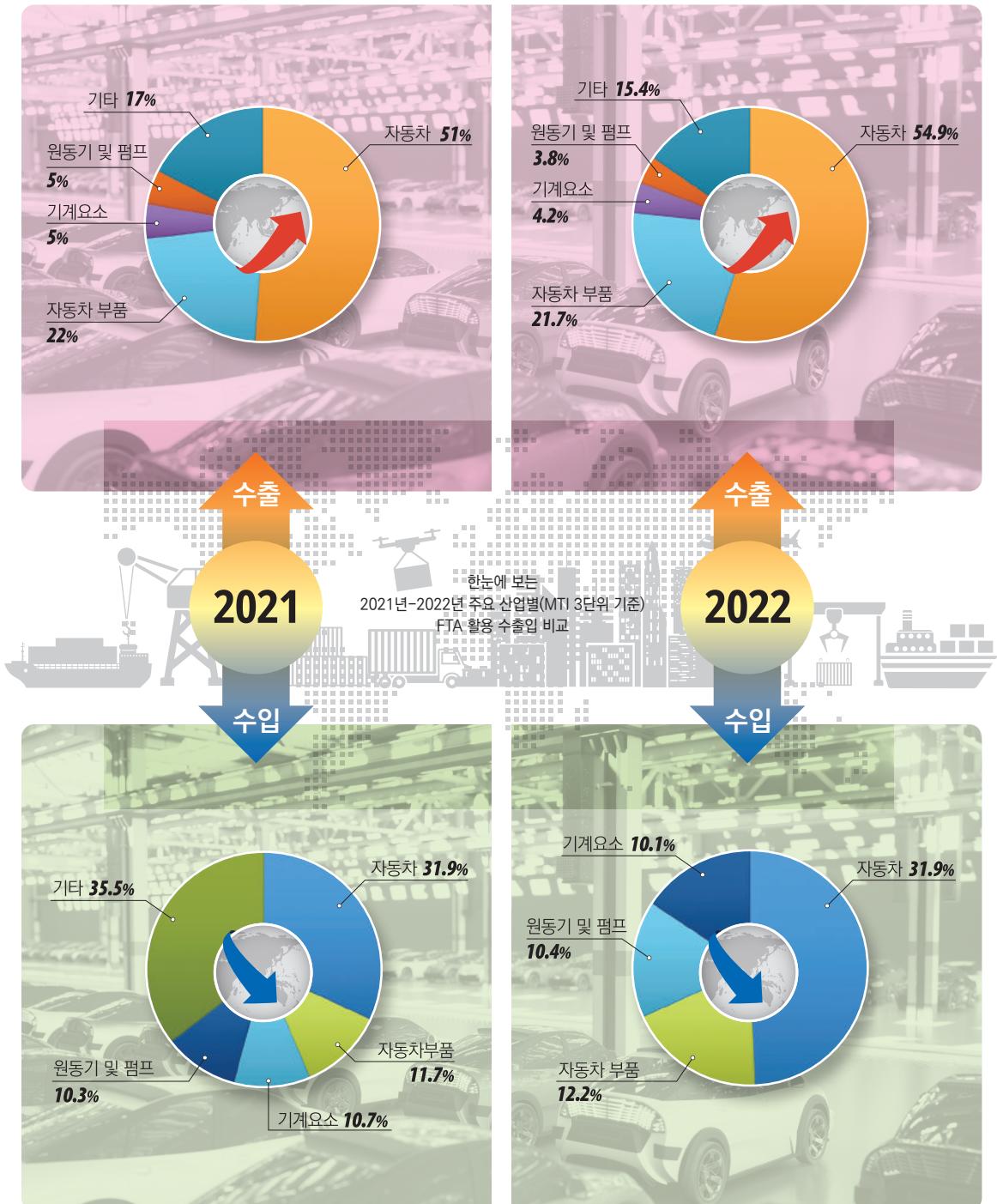
REPORT

## 한눈에 보는 2021년-2022년 주요 산업별(MTI 3단위 기준) FTA 활용 수출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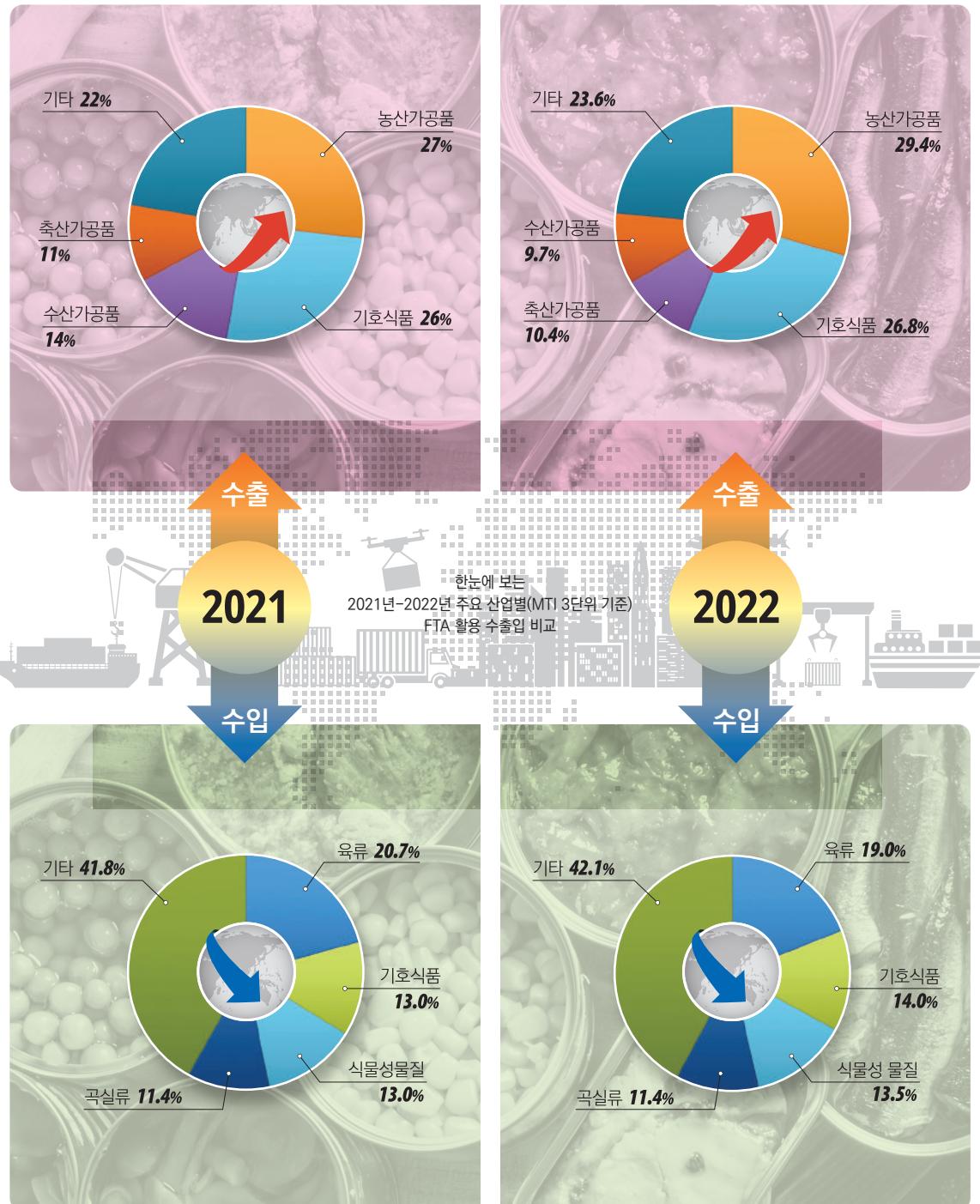
## 광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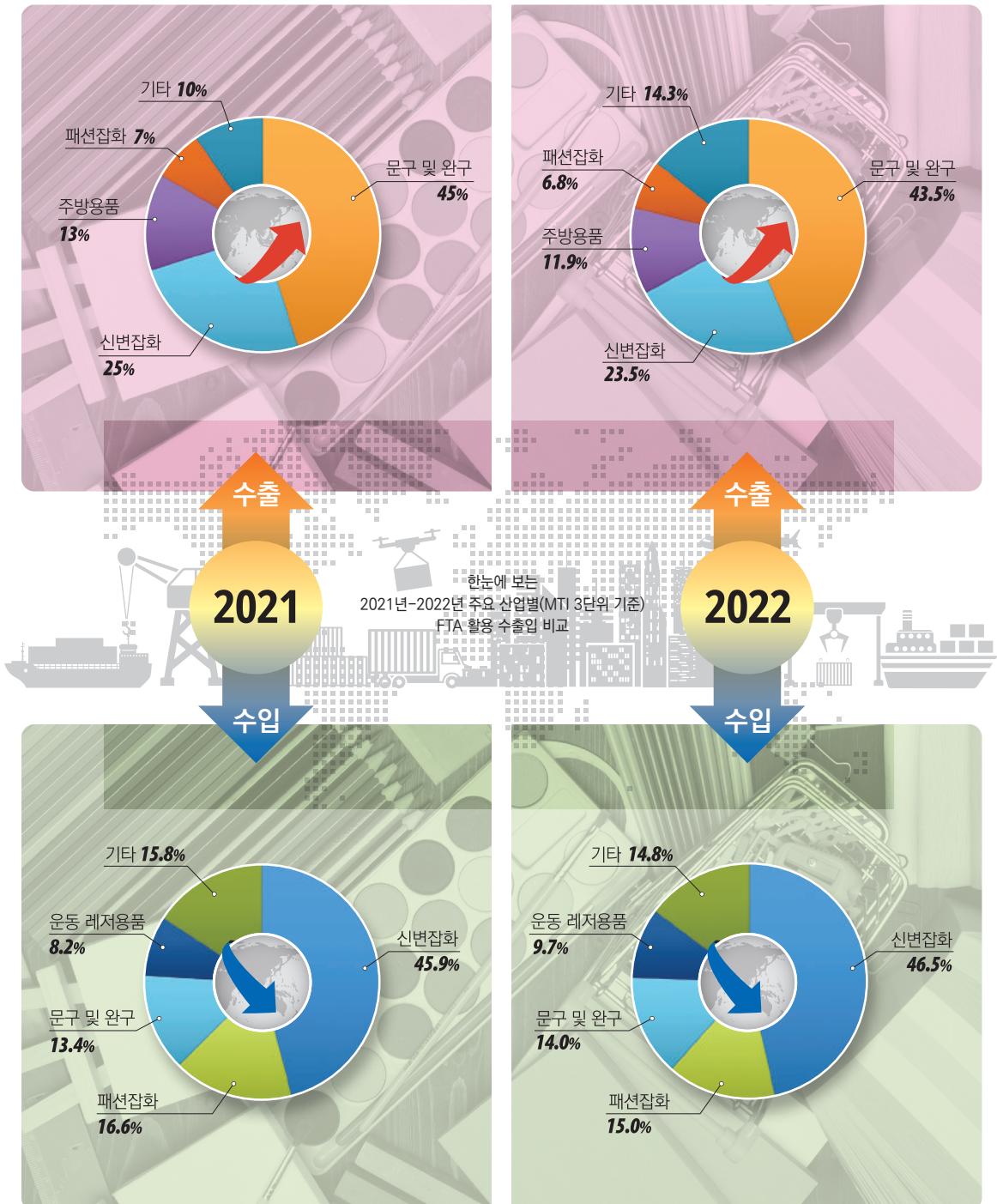
## 기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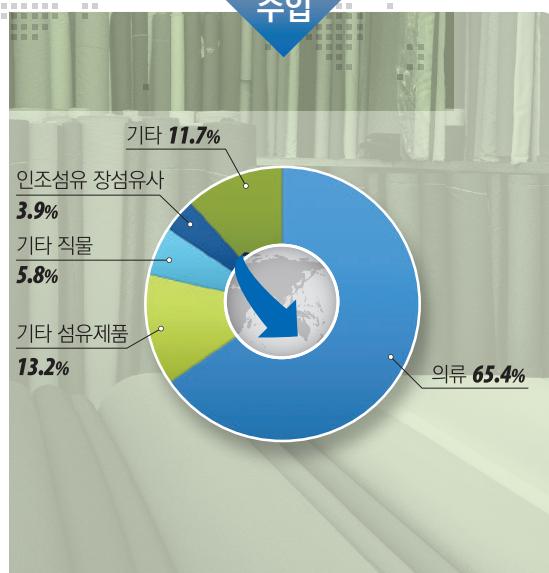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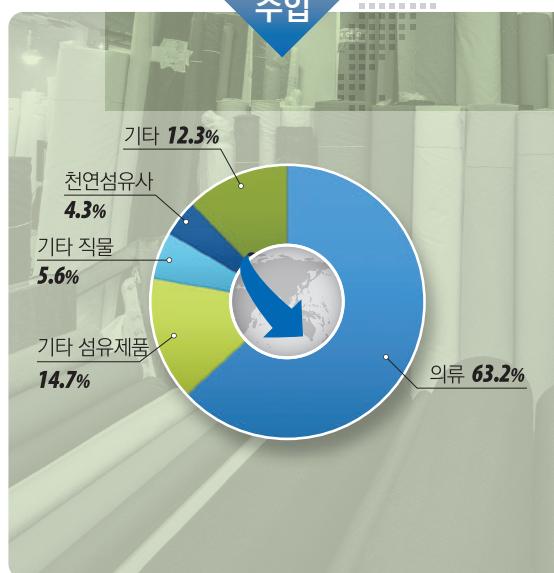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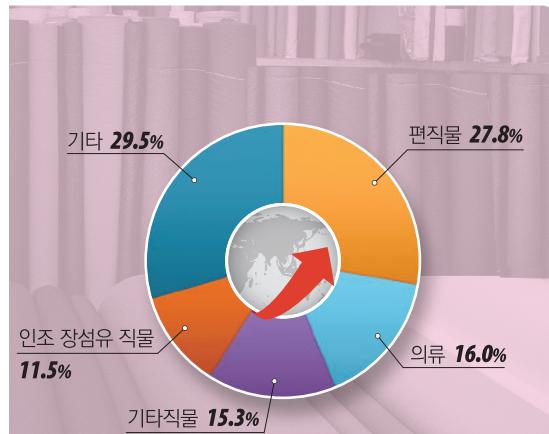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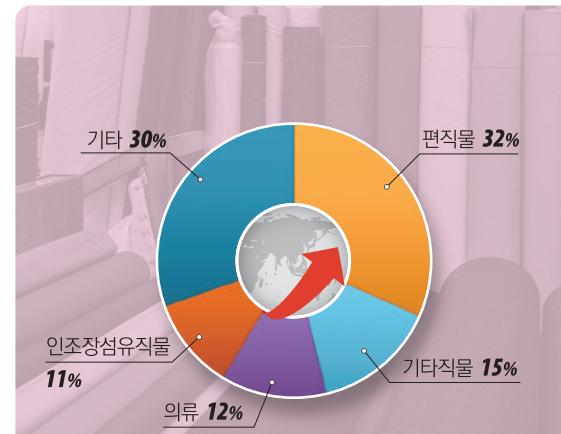
## 농림수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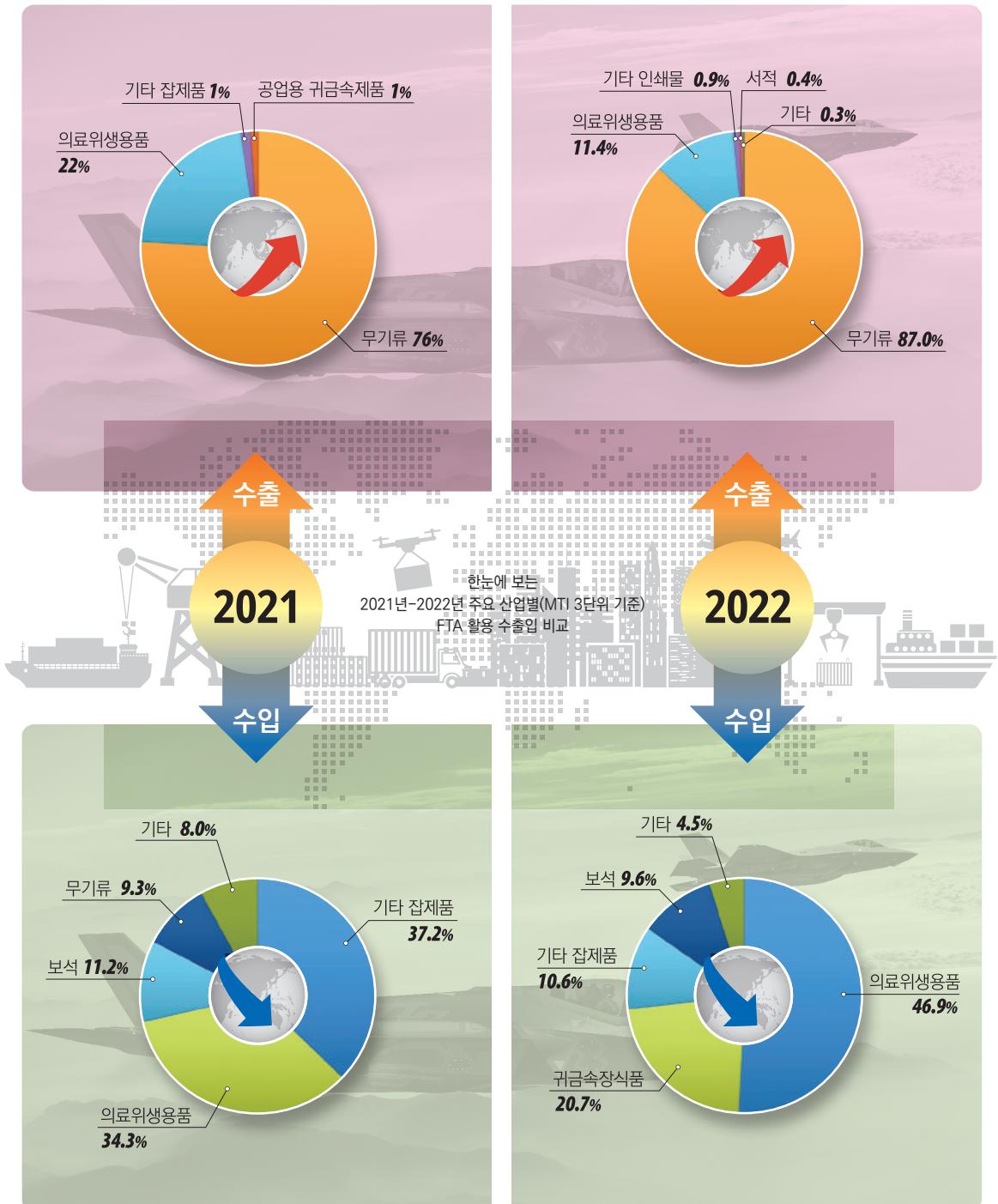
## 생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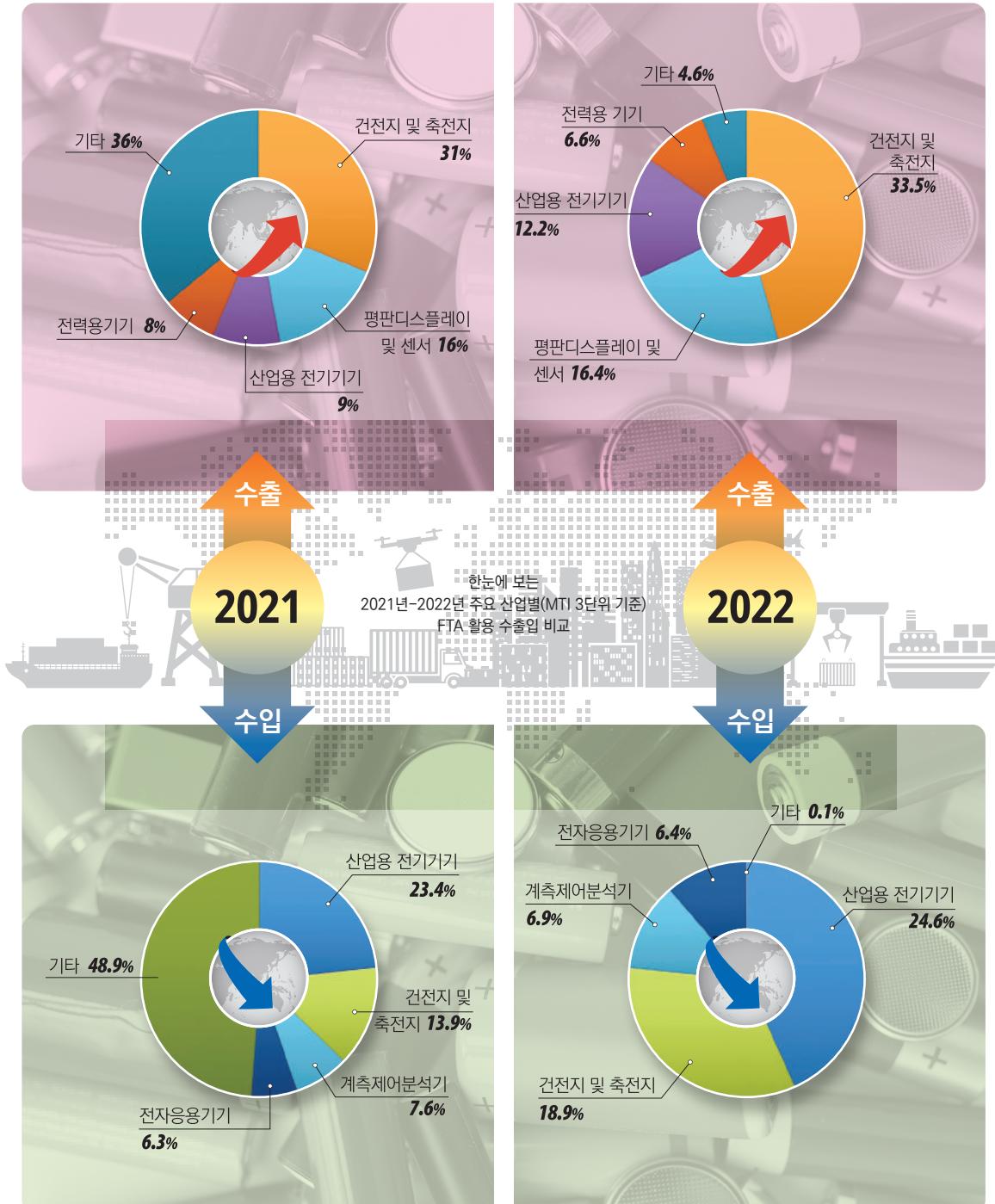
## 섬유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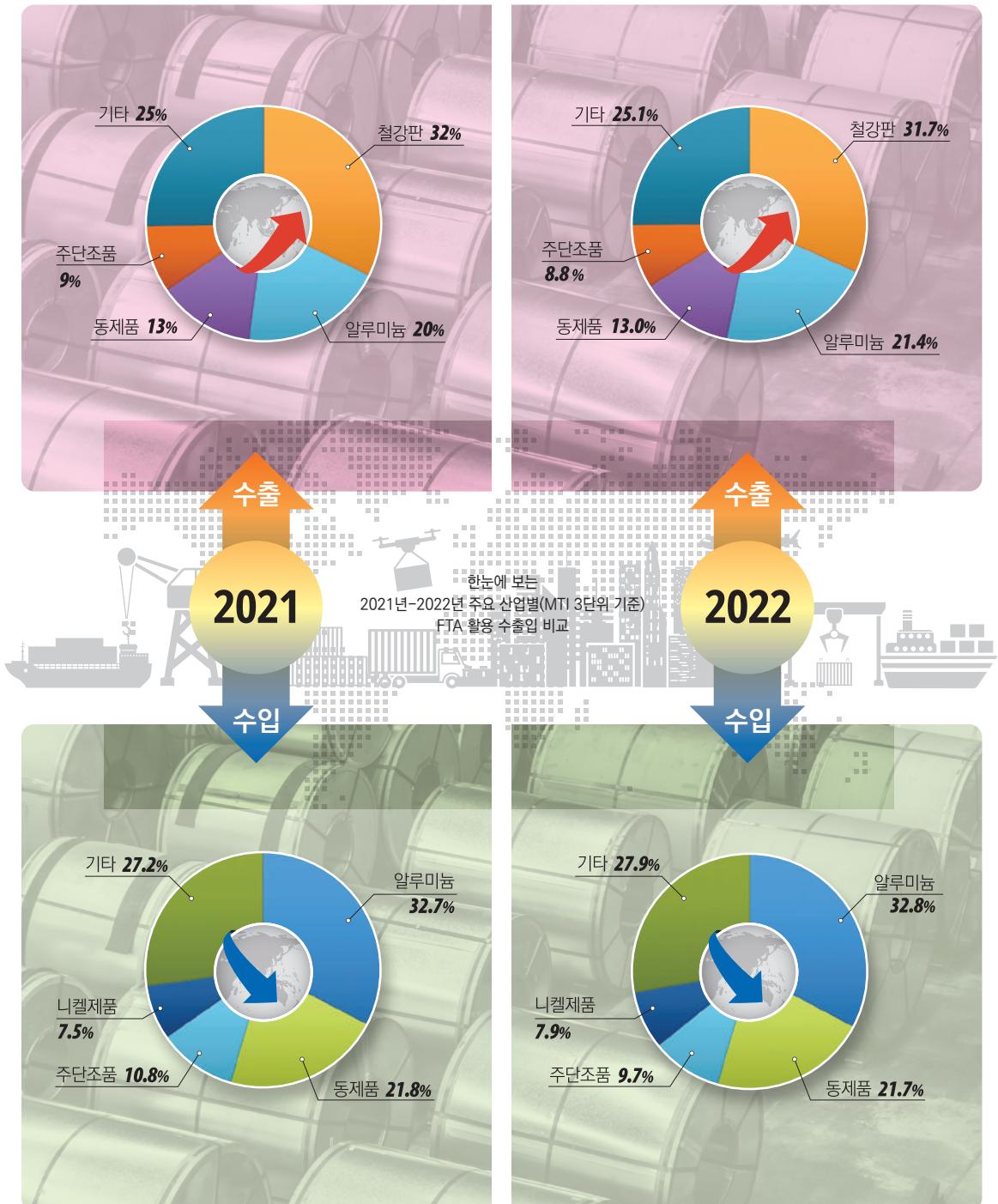
## 잡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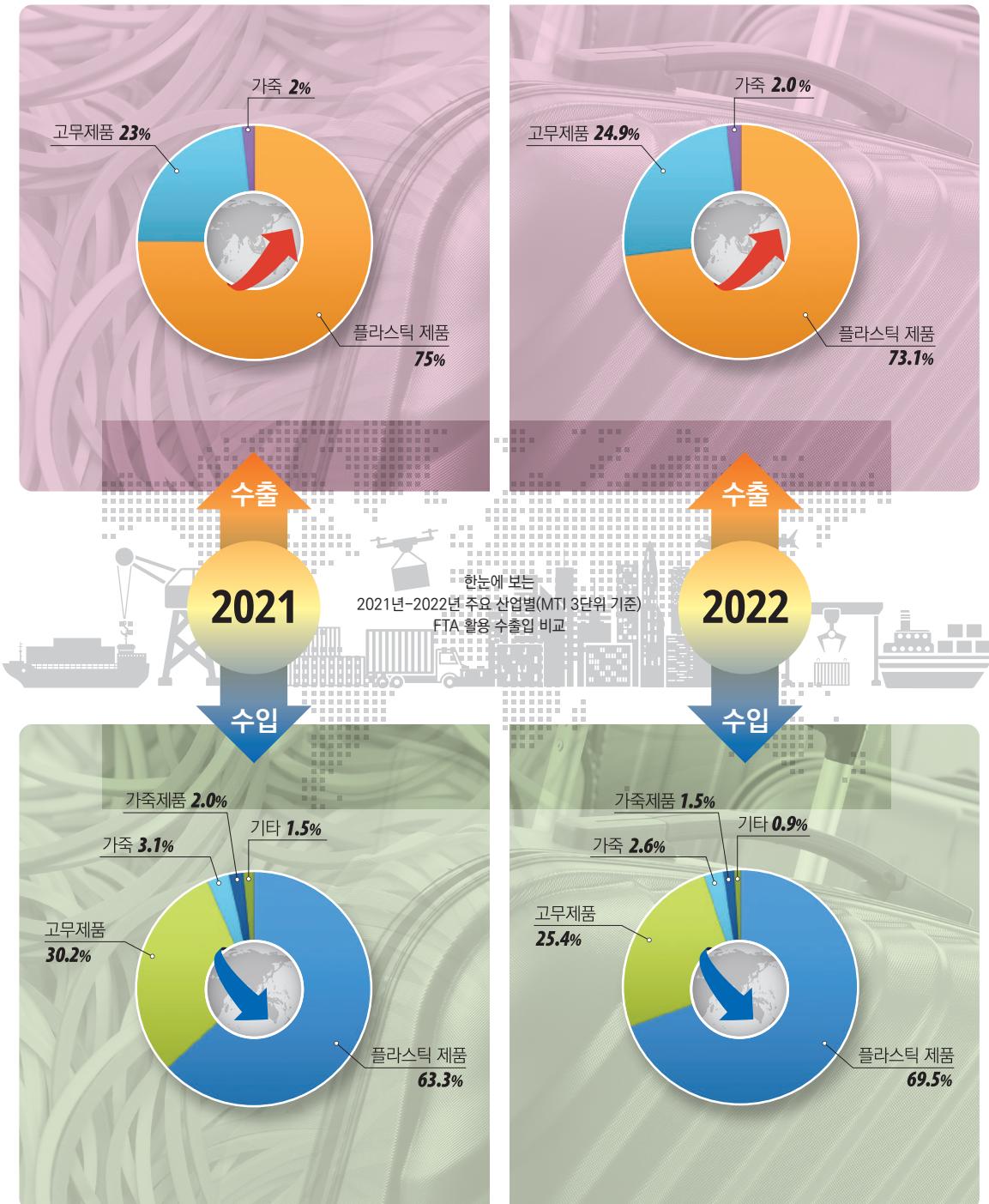
## 전자전기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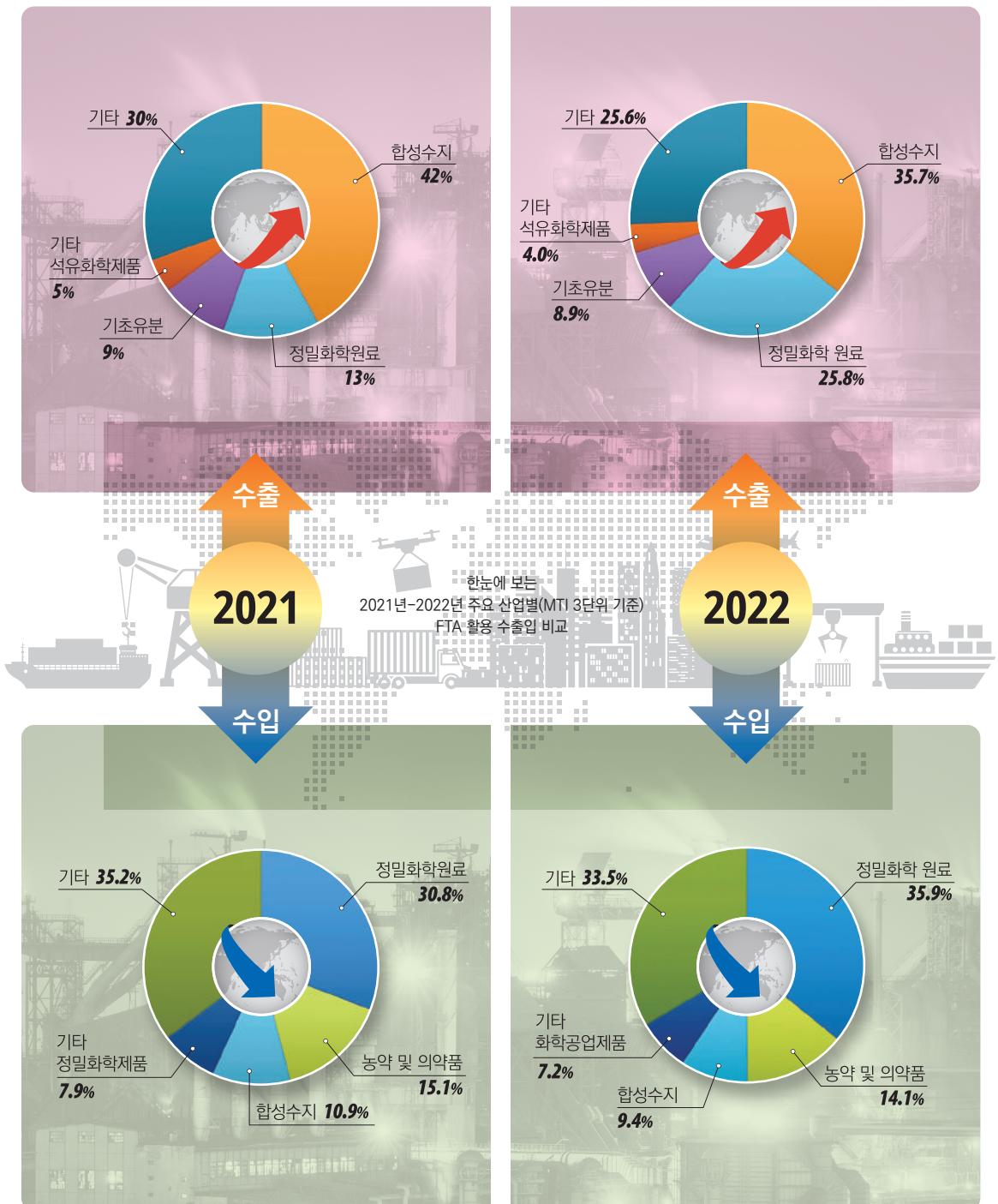
## 철강금속제품



##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 화학공업제품



# FTA 활용 UP!!

## 국내유일의 원산지 전문기관, 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은 FTA시대의 핵심과제인 “국내외 원산지 정보관리”를 위해 설립된

국내유일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입니다.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FTA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국제원산지정보원

대표전화 ☎ 031.600.0701~3  
[www.orgin.or.kr](http://www.orgin.or.kr)

2023년도

# 원산지관리사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 시험안내

### 국가공인 민간자격 **원산지관리사**

공인번호  
관세청 제2021-1호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학점은행제 9학점 인정 및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가능

### 등록민간자격 **원산지실무사**

등록번호  
제2015-004250호

FTA·원산지관리 실무 능력을  
갖춘 준전문가

\*원산지관리전담자 자격점수 2점인정

## 2023년 시험일정

구 분	시험일	시험공고	원서접수기간
제32회 원산지관리사 제17회 원산지실무사	5.13.(토)	4.12.(수)	4.14.(금) ~ 4.26.(수)
제33회 원산지관리사 제18회 원산지실무사	11.11.(토)	10.11.(수)	10.13.(금) ~ 10.25.(수)

※ 원산지실무사(09:00~10:00), 원산지관리사(11:00~13:00) 시험일은 동일합니다. (동시 응시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FTA원산지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응시료 및 환불규정



• **응시료** 원산지관리사 50,000원, 원산지실무사 30,000원  
(상장형 자격증 발급 무료, 카드형 자격증 발급비 5,000원)

• **환불** 원서접수기간 : 100% 환불  
접수마감 후 : 부분환불  
시험 5일전부터 : 환불불가

### 접수 문의



• **접 수** 온라인접수  
(FTA원산지아카데미 [www.ftaedu.or.kr](http://www.ftaedu.or.kr) ▶ 자격시험별 시험접수)

• **문 의**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6, [ftaedu@origin.or.kr](mailto:ftaedu@origin.or.kr)  
1350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205번길 8

\*관세법 개정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기관명이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 변경됩니다.



국제원산지정보원

# FTA 무역리포트 TRADE REPORT

March 2023 Vol. 01 (통권 41호)

(비매품)

발행일 2023년 03월

발행처 관세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국제원산지정보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TEL : 031)6000-701~3 / FAX : 031)6000-704  
<http://www.origin.or.kr>

편집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국제원산지정보원

디자인·인쇄 화신문화(주)

발간등록번호 11-1220000-000342-08

---

「FTA 무역리포트」에 게재된 글은 저자의 견해로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FTA 무역리포트 TRADE REPORT

보내는 사람

주소

이름

연락처

E-mail

우표

받는 사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성남세관  
5층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무역리포트 담당자 앞

1  3  5  0  3

## 독자의 소리

〈FTA 무역리포트〉 독자의 소리를 2023년 6월 20일까지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되신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FTA 무역리포트〉를 보신 소감을 적어 주세요.



〈FTA 무역리포트〉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FTA 무역리포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을 알려주세요.

FTA 무역리포트  
TRADE REPORT







[customs.go.kr/ftaportalkor/](http://customs.go.kr/ftaportalkor/)  
[ftapass.or.kr](http://ftapass.or.kr)



관세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제원산지정보원

1350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야탑동 성남세관 5층)